

#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

#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 정무위원회 】

2017. 10.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 간 사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 사람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본예산보다 28.4조원(7.1%) 증가한 총지출 429.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 재원조달 방법과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재정건전성,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재정총량에 대하여 분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현금급여 재정사업과 같은 유형별 분석을 확대함으로써 거시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예산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소관부처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부처의 정책·사업들을 단위·세부사업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전계획 수립과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집행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살펴봄으로써 예산안 분석의 틀을 유기적·통합적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재정사업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정하게 편성·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분석시리즈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 차 례

# CONTENTS

## 정무위원회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I. 예산안 개요 / 3

- 1. 현 황 ..... 3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 5
- 3. 예산안 주요 특징 ..... 7

#### II. 주요 현안 분석 / 8

-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사업비와 관련성 낮은 사업 추진 지양 등 ..... 8
  - 1-1. 연구사업비의 교육, 행사비 집행 지양 필요 ..... 8
  - 1-2. 기본연구사업에서 연구관련사업, 일반사업 등으로 변경 필요 ..... 13
  - 1-3.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분담금을 국제부담금으로 편성 필요 ..... 16
-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람회 추진 부적정 등 ..... 18
  - 2-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채용박람회 추진 부적정 ..... 19
  - 2-2. 영문자료집 제작 사업의 사업계획 철저 ..... 22
- 3.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사업비 적정 사용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 24
  - 3-1. G20 관련 연구비 집행관리 철저 ..... 25
  - 3-2. 민간투자지원사업 연구비 적정 사용 필요 ..... 28
- 4.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비 적정 사용 및 성과 제고 필요 ..... 30
  - 4-1.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사업비 사용 필요 ..... 30
  - 4-2.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의 홈페이지 활용도 제고 필요 ..... 33



-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사업비 적정 사용 및 집행관리 철저 ..... 36
  - 5-1. 연구사업비와 관련성이 낮은 통근버스 임차 예산의 조정 필요 ..... 37
  - 5-2.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조속 추진 필요 ..... 39
- 6. 산업연구원의 일반사업비 집행 부진 등 ..... 42
  - 6-1. 중국종합연구 사업비 집행관리 철저 ..... 42
  - 6-2. 연구사업비의 경상경비적 지출 지양 ..... 44
-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사실 운영 예산의 조정 필요 등 ..... 46
  - 7-1. 연구사업비에 편성된 감사실 운영 예산의 조정 필요 ..... 46
  - 7-2. 연구사업비를 통한 직원 해외연수비 지원 지양 필요 ..... 49
  - 7-3. 직원 이주지원비 예산 조정 필요 ..... 51
- 8. 국토연구원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기본사업비 분석 ..... 53
  - 8-1. 국토연구원의 국토지식 공유사업 예산 조정 필요 ..... 53
  - 8-2. 건축자산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의 사전 절차 준수 등 ..... 58
- 9. 한국노동연구원의 총동문회 관련 서울사무소 임차료 예산 조정 등 ..... 62
  - 9-1. 총동문회 관련 서울사무소 임차료 등 예산 조정 필요 ..... 62
  - 9-2. 통일이후 인력 및 노동시장정책 사업의 조사방법 개선 필요 ..... 66

### III. 개별 사업 분석 / 69

- 1. 부패예방감시단의 존치 필요성 재검토 및 기능 중복 주의 필요 ..... 69
- 2. 대테러센터 국외업무여비의 사전계획 마련 필요 등 ..... 73
- 3. 규제개혁 사업 홍보 수행방식의 효율성 검토 필요 등 ..... 76
-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상운영비 적정 사용 필요 ..... 79
-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중국사무소 운영비 적정 편성·집행 필요 ..... 83
- 6. 통일연구원의 연구사업비 적정 용도 집행 필요 ..... 87
-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통일연구원의 북한, 통일 관련 경제 연구사업 조정 필요 ..... 91
- 8.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ODA 사업시행 시 타 기관과의 협력 필요 ..... 95



# CONTENTS

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사업비 적정 집행 필요 .....	98
10.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사업비로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 지양 필요 .....	101
11.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세계은행 공동사업 사업체계 개선 필요 .....	105
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기반 및 성과관리 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	108

## [국민권익위원회]

### I. 예산안 개요 / 113

1. 현 황 .....	113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	114
3. 예산안 주요 특징 .....	115

### II. 개별 사업 분석 / 116

1. 청탁금지법 관련 보상·보호조치 안내 강화 필요 .....	116
2. 모의행정심판경연대회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 등 .....	119
3. 공익신고 구조금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122

## [국가보훈처]

### I. 예산안 개요 / 127

1. 현 황 .....	127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	131
3. 예산안 주요 특징 .....	133



## II. 주요 현안 분석 / 134

- 1.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 지급대상 중복 문제 해결 필요 등 ..... 134
- 2. 복지 및 의료 기반시설 건립의 집행 관리 필요 ..... 138

## III. 개별 사업 분석 / 143

- 1.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안내 강화 필요 ..... 143
- 2.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수행 방식 검토 ..... 145
- 3. 보훈병원진료 사업의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150
- 4. 보철구지급사업의 국가비부담 수익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152
- 5.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의 사업수행방식 검토 필요 등 ..... 155
- 6. 광복회관 재건축의 집행 관리 및 임차보증금 수납 필요 ..... 158
- 7.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연구용역과의 연계 필요 등 ..... 161
- 8.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사업의 적극적 사업 집행 필요 ..... 163
- 9. 국립묘지 관리인력 피복비 지원 기준 마련 필요 ..... 166

## [공정거래위원회]

### I. 예산안 개요 / 171

- 1. 현 황 ..... 171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 172
- 3. 예산안 주요 특징 ..... 173

### II. 주요 현안 분석 / 174

- 1. 과징금 환급액 및 행정소송 관련 격려금 관리 필요 ..... 174
  - 1-1. 과징금 환급액 축소를 위한 과징금 결정 기준의 명확한 적용 필요 ..... 174
  - 1-2. 직접소송 수행격려금의 예산 내 지급 필요 ..... 177



# CONTENTS

- 2. 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체계 및 피해 구제 지원 강화 필요 ..... 179
  - 2-1. 대리점분야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 제고를 위한 사전준비 및 집행관리 필요 ..... 180
  - 2-2.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183

### III. 개별 사업 분석 / 185

- 1. 사익편취 행태개선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및 집행 관리 필요 ..... 185
- 2.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성화 사업의 운영 내실화 필요 ..... 188
- 3. 개인용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의 적정성 검토 필요 ..... 191

## [금융위원회]

### I. 예산안 개요 / 197

- 1. 현 황 ..... 197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 201
- 3. 예산안 주요 특징 ..... 203

### II. 주요 현안 분석 / 204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 예산안 적정 규모 검토 필요 ..... 204
- 2.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자원 조달 노력 강화 필요 ..... 210

### III. 개별 사업 분석 / 214

- 1. 금융위원회 세입 추계의 적정성 및 징수실적 제고 필요 ..... 214
  - 1-1. 과징금 예산안의 합리적 산정방식 강구 및 징수실적 제고 필요 ..... 215
  - 1-2.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연례적 과다계상 ..... 218



2.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	221
3. 금융정책알리기 사업의 성과지표 측정방식 재검토 필요 등 .....	224
4. 국제중재수행 사업의 성과 도출 및 ISD 대응능력 강화 필요 .....	226
5.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보안대책 마련 및 성과목표 상향 필요 .....	229
6. 기본경비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제고 필요 .....	233
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필요 .....	239
8.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 매각 수입 과다계상 .....	242
9. 신용보증기금 RG 재보증을 위한 시중은행 특별출연금 확보방안 마련 필요 .....	245
1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248
1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서울보증보험 매각수입의 실현가능성 검토 필요 .....	251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1

## 현황

##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18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계상되지 않았다. 2018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지출은 5,651억원으로 전년 대비 341억원(6.4%)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492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9억원이다.

[2018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509,273	516,545	516,545	549,216	32,671	6.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471	14,444	14,444	15,918	1,474	10.2
환경개선특별회계	1,137	0	0	0	0	0.0
합 계	523,881	530,989	530,989	565,134	34,145	6.4

주: 총지출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나. 세입·세출

2018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며, 5,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342억원(6.4%)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5,167억원에서 2018년 5,494억원으로 6.3% 증가하였으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144억원에서 159억원으로 10.2% 증가하였다.

[2018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09,364	516,662	516,662	549,416	32,754	6.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471	14,444	14,444	15,918	1,474	10.2
환경개선특별회계	1,137	0	0	0	0	0.0
합 계	523,972	531,106	531,106	565,334	34,228	6.4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 60억 4,200만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지원 사업은 국제분담금으로 수행 하던 출연연구기관 KDI 소관 사업을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이관한 것이며, 부패예방감시 단 사업은 부패예방감시단의 운영기한 연장에 따라 신규로 편성되었다.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 리체계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분리되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2개)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지원	3,569
	부패예방감시단	617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1개)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1,856
합 계		6,042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규제개혁 정보화 ② 조세심판 정보화 ③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규제개혁 정보화 사업은 규제정보화시스템 고도화 개발 비용이 반영되었고, 조세심판 정보화 사업과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사업은 G-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비용이 반영되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개)	국제환경평가 교류협력사업 (ODA)	250	250	350	100	40.4
	규제개혁 정보화	521	521	980	459	88.1
	조세심판 정보화	259	259	448	189	73.0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289	289	448	159	55.0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117	117	200	83	70.9
합 계		1,030	1,030	1,778	748	72.6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18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23개 출연연구기관에 출연금(4,805억 9,800만원)이 전년 대비 5.6% 증액 편성되었고, ② 규제개혁 사업 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9억 9,000만원) 및 규제개혁 정보화 사업(9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사업(6억 1,700만원)이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다. ④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사업(35억 6,900만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국무조정실 세부사업으로 이관되어 신규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출연연구기관 중 연구사업비로 경상경비 성격의 지출을 편성하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편성한 경우가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은 연구사업비를 경상경비 성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은 연구사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연구사업비를 편성 및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사업은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조직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타 정부 부처 및 조직과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테러센터 운영 사업은 대테러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외업무여비의 사전 계획 및 지속적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적시에 홍보 사업을 진행하여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규제개혁 사업은 규제 신설·강화 시 검토 및 기존 규제의 정비·개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홍보 수행 방식의 효율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규제법령과의 지방조례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II

## 주요 현안 분석

### 1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사업비와 관련성 낮은 사업 추진 지양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R&D)<sup>1)</sup> 사업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출연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 대비 8억 9,700만원이 증액된 21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561	20,657	20,657	21,554	897	4.3
기본사업비	18,191	18,777	18,777	19,275	498	2.7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1-1. 연구사업비의 교육, 행사비 집행 지양 필요

##### 가. 현 황

동 사업 2018년도 예산안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건비, 경상경비, 기관고유사업비가 편성된 기본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017년 대비 처우개선 반영 2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49-301

억 8,200만원 등이 증액된 118억 2,700만원이, 경상운영비는 2017년 대비 세종시 임차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인상액이 증액된 33억 5,100만원이, 기관고유사업비는 2017년 대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가 채용 소요액 7,900만원이 증액된 40억 9,700만원이 편성되어, 총 192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예산 (A)	2018 예산안 (B)	(B-A)	증감 사유
□ 기본사업비	18,777	19,275	498	-
■ 인건비	11,477	11,827	350	○ 정규직 - 처우개선분(2.6%) : 2억 8,200만원 - 인력증원(2명) : 5,200만원 ○ 무기계약직 - 처우개선분(2.6%) : 1,600만원
■ 경상운영비	3,282	3,351	69	○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인상: 6,900만원
■ 기관고유사업비	4,018	4,097	79	○ 기관평가 인센티브 : 900만원 ○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 : 7,000만원 - 기본연구사업 : 4,500만원 - 연구지원사업 : 2,500만원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 분석의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동 사업의 일부 기관고유 연구사업비를 직원 내부 해외교육훈련, 개원기념 행사비 등 경상경비 성격의 용도로 연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향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로부터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운영비 및 기관고유사업비 등을 정부 출연금으로 교부받고 있으며, 해당 예산의 목적에 맞추어 집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상운영비와 기관고유사업비의 지침상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경상운영비(360-02)는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준용될 수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sup>2)</sup>에서 경상경비를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고유사업비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sup>3)</sup>에 따르면 기관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기관고유사업비가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4~2016년 동안 기관고유사업비(연구사업비)를 활용하여, 기관운영과 관련된 행사비 성격인 개원 기념 관련 리셉션, 출장취폐 용역대금이나 기념품비인 기념볼펜, 증정품의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고 있어, 기관고유사업비를 경상경비 성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기관고유사업비를 활용한 개원 관련 행사·기념품비 지출(예시)]

(단위: 천원)

연도	지출내용	구분	일자	집행금액
2014	개원 17주년 기념 리셉션	기관고유사업비	10. 29	12,802
	개원 17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기념 증정품 구입	기관고유사업비	11. 5	5,045
2015	개원 기념 리셉션 기념식순카드 인쇄	기관고유사업비	10. 22	605
	개원 18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기념볼펜 구매	기관고유사업비	10. 23	4,610
	개원 18주년 기념 만찬식 출장취폐 용역대금	기관고유사업비	10. 15	12,500
2016	개원 기념 행사 관련 출장취폐 및 무대설치 대금	기관고유사업비	10. 24	13,700
	개원 19주년 기념품 구매	기관고유사업비	10. 18	13,338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12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 3)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9  
 <그 외 출연연구기관>
  - 기관운영비
    - 인건비, 경상경비는 본 지침의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 지침을 준용
  - 기관고유사업비
    - 기관고유사업비는 전년수준 범위내에서 편성하되, 출연연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 가능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경상경비 성격이 강한 내부 직원의 해외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연례적으로 기관고유사업비 내 연구 관련 사업비를 활용하여 집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4~2016년 동안 소속 직원이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의 직업교육 관련 대학 등에서 단기(약 1개월) 해외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등록비 등을 기관고유사업비 내 연구 관련 사업비를 통하여 연례적으로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 독일,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의 직업교육 관련 전문기관에서 내부 직원 6명(예정)을 대상으로 직원 단기 해외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관고유사업비를 활용한 내부 직원 대상 단기 해외교육훈련비 지출(예시)]  
(단위: 명, 천원)

연도	지출내용	구분	인원	예산 (예산안)	집행금액
2014	직원 단기 해외교육훈련 (스페인, 프랑스 등)	기관고유사업비	6	44,143	44,143
2015	직원 단기 해외교육훈련 (미국, 덴마크 등)	기관고유사업비	5	44,143	33,229
2016	직원 단기 해외교육훈련 (아일랜드 등)	기관고유사업비	5	44,615	34,052
2017 (8월)	직원 단기 해외교육훈련 (스위스, 홍콩 등)	기관고유사업비	6	41,682	20,683
2018 (예산안)	직원 단기 해외교육훈련 (독일, 미국 등)	기관고유사업비	6	41,684	-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개원기념식은 기관고유사업비 내 연구관련사업을 활용하여 매년 개원기념일에 개최하는 세미나 행사로 세미나 참석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리셉션과 기념품을 기관고유사업비(연구개발활동비등)로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기념기원식은 기관 운영과 관련되어 추진되는 행사에 해당하고 매년 연례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경상경비의 성격이 강한 기념품비, 행사 관련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연구개발활동비인 기관고유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내부 직원 대상 해외교육훈련비 집행도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준용이 가능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sup>4)</sup>에 따라 교육훈련비는 경상경비의 성격

4)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12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이 강하여 연구개발활동비인 기관고유사업비보다 경상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향후 기관고유사업비의 연구 관련 사업비를 활용하여 개원 행사 관련 기념품비, 업무추진비, 직원 대상 해외교육훈련 비용 등을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 1-2. 기본연구사업에서 연구관련사업, 일반사업 등으로 변경 필요

### 가. 현황

글로벌 인재포럼 사업은 각국 관계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정부, 공공, 민간, 기업 등 각 분야의 교육과 관련된 창의적 인재개발의 경험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국제포럼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과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글로벌 인재포럼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글로벌 인재포럼	199	200	200	200	0	0.0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글로벌 인재포럼을 교육부,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주최하고 있으며, 매년 해당 포럼 개최에 필요한 분담금을 한국경제신문에 지급하고, 포럼운영 설계 및 포럼 준비를 위한 관련 전문가 협의회, 행사 만족도 조사, 포럼결과 분석 및 성과 도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나. 분석의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글로벌 인재포럼 행사 사업을 기본연구사업에서 연구관련사업, 일반사업 등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은 연구사업을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수탁용역사업, 정부대행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기관고유사업을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정의하고 기관의 설립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인 ①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 연구가 아닌 연구부대 사업인 ② 연구관련사업, 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을 ③ 연구지원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사업 정의]

구 분	내 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비
2) 연구관련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 연구가 아닌 연구부대 사업 * 연구업무와 관련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번역사업 등
3) 연구지원사업	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성 사업,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 목적(정부대행 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 * 협동연구사업 :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 (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 2017.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글로벌 인재포럼 사업을 기관고유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 예정인 해당 행사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글로벌 협업을 통한 인재 개발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의 해결 등을 개최목적으로, 각국 관계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 및 국제기구 관계자와 글로벌 기업 CEO 및 HR총괄 부서장, 연수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행사에 해당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정관 제2조5)에서 설립목적으로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관」

에 관한 연구와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재개발 관련 국제 행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설립목적인 연구와 직업 교육훈련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관련성이 떨어진다.

[2017년 기준 글로벌 인재포럼 행사 세부내용]

구분	내용
행사명	글로벌 인재포럼 2017 (Global HR Forum 2017)
개최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협업을 통한 인재 개발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의 해결</li> <li>○ 정부, 공공, 민간, 기업 등 각 분야의 교육과 관련된 창의적 인재 개발의 경험과 우수사례 공유</li> <li>○ 세계적 관점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인재개발의 공통 핵심 요소들을 규명하고 논의</li> </ul>
주제	우리가 만드는 미래 (Future in Your Hands)
기간	2017년 10월 31일(화)~11월 2일(목), 3일간
주최	교육부, 한국경제신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참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국 관계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 및 국제기구 관계자</li> <li>○ 글로벌 기업 CEO 및 HR총괄 부서장, 연수원장</li> <li>○ 세계 우수 대학 출장 및 학계 전문가</li> <li>○ 산업계·연구소·경제 단체 대표/기타 인적자원개발 관련 단체 대표 등</li> </ul>

자료: 글로벌인재포럼 홈페이지(<http://www.ghrforum.org>)

따라서, 글로벌 인재포럼 행사 사업을 기본연구사업에서 제외하여 일반사업, 연구관련사업 등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제2조(목적) 직능원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3.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분담금을 국제부담금으로 편성 필요

#### 가. 현황

국제기구 인재개발 협력 사업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직원을 유네스코 방콕사무소(UNESCO Bangkok Office)에 파견하여(2014~2018년), 아시아 직업교육훈련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국제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과 동일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국제기구 인재개발 협력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제기구 인재개발 협력	179	170	170	170	0	0.0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나. 분석의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동 내역사업의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방콕사무소(UNESCO Bangkok Office) 파견 부담금을 국제부담금(340-02)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유네스코 방콕사무소(UNESCO Bangkok Office)와 MOU를 체결하고 소속 직원 1명을 파견하여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 양성 등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해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매년 국제기구 파견 부담금을 유네스코에 지급하고 있으며, 2014~2017년 동안 유네스코에 지급한 국제기구 파견 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억 8,600만원, 2015년 1억 7,700만원, 2016년 1억 7,700만원,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1억 7,500만원을 지급하여 총 4년 동안 7억 1,500만원의 국제기구 부담금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에도 국제기구 부담금 1억 6,8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지급 부담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8월	합계
부담금	186	177	177	175	715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해당 비용을 정부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성격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sup>6)</sup>에 따른 국제부담금에 해당한다.

국제부담금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외국정부, 외국기관 등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부담금, 분담금, 회비 및 부대경비로서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부담금이나 국제기구 파견에 따른 파견경비 등 기타 국제부담금을 그 예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부담금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간의 MOU 체결에 따라, 소속 직원을 파견하고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부담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 지침에 따른 국제부담금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국제부담금은 부·처·청이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을 편성한 후 예산편성 내역을 외교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분담금 납부 현황을 전면 재검토하여 연례적·답습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담금 편성은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와 재정수반 협정, MOU 등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재정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등 예산 편성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동 부담금을 국제부담금으로 편성하고 예산 편성지침에 따른 연장이나 타당성, 규모 등에 대한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6)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16

20. 국제부담금(340-02목)

-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외국정부, 외국기관 등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부담금, 분담금, 회비 및 부대경비
  - UN 산하기구 등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부담금
  - 조약, 협정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사업 및 운영비
  - 국제기구 파견에 따른 파견경비 등 기타 국제부담금

한국조세재정연구원<sup>1)</sup> 사업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출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 예산 대비 35억 5,300만원 증액된 31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8,680	27,652	27,652	31,205	3,553	12.8
기본사업비	19,031	18,372	18,372	20,819	2,447	13.3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인건비, 경상경비, 기관고유사업비가 편성된 기본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인건비 처우개선분(2.6%), 신규인력 고용 비용 등으로 2017년 대비 19억 9,800만원이 증액된 136억 3,800만원이, 경상운영비는 2017년 대비 4억 3,800만원이 증액된 21억 2,300만원이, 기관고유사업비는 2017년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50억 5,800만원이 편성되어, 세부사업 기준으로 총 208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48-301

[2018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본사업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예산 (A)	2018 예산안 (B)	(B-A)	증감 사유
□ 기본사업비	18,372	20,819	2,447	-
▪ 인건비	11,640	13,638	1,998	○ 인건비 처우개선분(2.6%) 3억 3,600만원 ○ 2017신규인력 1억 5,600만원 ○ 2018신규인력 3억 6,400만원 ○ 자체수입대체분 11억 4,200만원
▪ 경상운영비	1,685	2,123	438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납입 증가분 ○ 연면적 증가에 따른 자산관리유지비 및 건 물관리업체 처우개선분 등
▪ 기관고유사업비	5,047	5,058	11	○ 2016년 기관평가(우수) 반영 1,100만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채용박람회 추진 부적정

### 가. 현황

공공기관 연구센터 사업은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해외사업, 민영화, 지정 및 분류 등 지배구조 개편 등 공공기관 정책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연구센터의 사업인건비, 공공요금, 여비 등의 운영비를 편성한 사업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동 사업의 예산을 2017년 예산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한 2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공공기관 연구센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기관 연구센터	2,444	2,539	2,539	2,519	△20	△0.8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나. 분석의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사업비(일반사업비)를 활용하여 기관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2016년 동안 연례적으로 기관의 사업목적인 조세 및 재정분야의 연구와 관련성이 부족한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동 사업의 연구사업비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 구인을 원하는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공공기관 취업준비생, 일반 구직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 모의면접, 직무수행능력 공개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실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도	장소	기간	참여공공기관	예산	집행금액
2014	서울 COEX	10. 31 ~ 11. 1	113	296	250
2015	서울 SETEC	11. 19 ~ 11. 20	120	269	235
2016	서울 COEX	11. 28 ~ 11. 29	123	213	203
2017 (계획)	서울 COEX	12. 20 ~ 12. 21	120	150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2017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서울 COEX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13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채용정보 박람회를 동 사업 연구사업비(일반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실시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박람회는 조세 및 재정연구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취업·고용 촉진 관련 행사사업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며, 해당 박람회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하는 사업이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관 기관으로 부처 사업에 해당하므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사업비를 통하여 집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특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1)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정부가 출연하고 조세재정에 관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2)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관에는 사업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관」 제2조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동 사업의 연구사업비를 통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조세 및 재정분야의 제도·행정·정책에 관한 연구에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동 사업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2. 영문자료집 제작 사업의 사업계획 철저

### 가. 현황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개발도상국 실무 공무원이 즉각적으로 공공기관 관련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외부에 소개하는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외국공무원 교육훈련 영문자료집 제작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8년도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외국공무원 교육훈련 영문자료집 제작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외국공무원 교육훈련 영문자료집 제작 사업	0	0	0	252	252	순증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나. 분석의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동 내역사업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할 시기를 대비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동 내역사업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외국공무원 교육훈련 영문자료집 구성, 제1부~제5부 공공기관관리시스템 내용을 3,000페이지 분량의 국영문으로 제작하고, 전체내용을 10편, 10시간 강의용 PPT로 요약작성, 1편, 1시간 분량의 종합편 PPT 작성 1,000부 인쇄/활용하는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공기관 관련 외국공무원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동 내역사업의 사업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재무부처 공공기관 설립 담당 과장급이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실무 수준의 매뉴얼을 제작·활용·전파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외국공무원 교육훈련 영문자료집 제작사업의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8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외국공무원 교육훈련 영문자료집 구성</li> <li>○ 제1부~제5부 공공기관관리시스템을 3,000페이지 분량 국영문으로 제작</li> <li>○ 현재의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하여 개도국 실무 공무원이 즉각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li> <li>○ 전체내용을 10편, 10시간 강의용 PPT로 요약작성, 1편, 1시간 분량의 종합편 PPT작성 1,000부 인쇄/활용</li> <li>○ 자료제작 품질관리를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용의 충실성 확보</li> </ul>	252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동 내역사업을 통하여 해당 자료가 계획대로 완성되는 경우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 제도가 개발도상국에 정확히 소개되고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외국 공무원이 동 내역사업을 통하여 완성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외국공무원 교육훈련 영문자료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UN 등 국제기구 등과의 협정을 통하여 향후 해당 자료의 활용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자료 활용에 대한 국제기구 등과의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sup>3)</sup>가 있다.

특히, 어떠한 국제기구에서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지,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이 어떤 국가인지에 따라 교육자료의 내용 구성이 달라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제기구와의 협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향후 자료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아프리카 및 중남미(자메이카) 공무원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sup>1)</sup> 사업은 재정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관련사업 및 연구,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관고유사업비를 정부 출연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 대비 2억 1,400만원이 감액된 53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한국개발연구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개발연구원	53,327	53,816	53,816	53,602	△214	△0.4
기본사업비	27,018	29,627	29,627	31,586	1,959	6.6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중 한국개발연구원의 인건비, 경상경비, 기관고유사업비가 편성된 기본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017년 대비 자연증가분 및 처우개선 반영 18억 5,300만원이 증액된 216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운영비는 2017년 대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제대상 전환에 따른 부담세액이 증액된 21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관고유사업비는 2017년과 동일한 78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기본사업비는 총 315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39-301

[2018년도 한국개발연구원 기본사업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예산 (A)	2018 예산안 (B)	(B-A)	증감 사유
□ 기본사업비	29,627	31,586	1,959	-
▪ 인건비	19,798	21,651	1,853	○ 자연증가분 및 처우개선분 반영
▪ 경상운영비	2,026	2,132	106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전환에 따른 부담세액 반영
▪ 기관고유사업비	7,803	7,803	0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 3-1. G20 관련 연구비 집행관리 철저

#### 가. 현황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G20 관련 연구 사업은 국가 간 조율과 협력이 요구되는 거시, 금융, 개발, 무역, 에너지·환경 부문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고 G20 의제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3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G20 관련 연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G20 관련 연구	1,350	1,200	1,200	1,300	100	8.3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인건비 1억 2,600만원, 공공요금 1,100만원, 국내부담금 2억 5,000만원 등 총 13억원의 연구사업비가 편성되었다.

[2018년도 G20 관련 연구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구분	2018년 예산안
□ G20 관련 연구	13억원
▪ 사업인건비	○ 임시직 연구원 인건비(3인 × 12개월): 1억 2,600만원
▪ 공공요금	○ 우편요금 및 자료발송료 등: 1,100만원
▪ 수용비	○ 인쇄비 및 사무용품비 등: 1억 8,000만원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회의장 및 전산장비임차료: 4,800만원
▪ 여비	○ 해외여비(국내출장, 시내출장비, 해외출장비): 1억 2,000만원
▪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정보활동비 편성: 200만원
▪ 전문가활용비	○ 원고료 및 번역료: 1,900만원 ○ 자문 및 전문가연구비 등: 3억 2,500만원
▪ 회의비	○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비: 4,900만원
▪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연구 및 행사용역비: 1억 3,000만원 ○ 국내부담금: 2억 5,000만원 ○ 국제부담금: 4,000만원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동 내역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내에 실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내역사업의 2015~2017년(8월)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은 14억원의 예산현액 중 13억 2,300만원이 집행되었고 7,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16년은 14억 2,7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1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고 2억 4,2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예산현액 14억 4,200만원 중 6억 4,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44.9%로 이월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G20 관련 연구사업 연도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1,400	1,400	0	1,400	1,323	94.5	94.5	77	0
2016	1,350	1,350	77	1,427	1,185	87.8	83.0	242	0
2017. 8월	1,200	1,200	242	1,442	648	54.0	44.9	-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은 동 사업의 프로젝트 진행 기간과 회계연도의 불일치와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의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 내역사업의 2018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1억원 증액된 1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최근 3개년도의 이월액이 발생한 측면과 2018년에도 프로젝트 진행 기간과 회계연도의 불일치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8년 예산의 경우에도 일부 이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은 G20 관련 연구 사업의 연구사업비가 연내 실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3-2. 민간투자지원사업 연구비 적정 사용 필요

#### 가. 현황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민간투자지원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원업무의 종합적인 수행·관리 및 세부 쟁점에 대한 연구 수행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3억 8,000만원이 감액된 26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민간투자지원사업	3,060	3,050	3,050	2,670	△380	△12.5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인건비 6억 4,400만원, 공공요금 2억 800만원, 기타용역비 1억 6,700만원 등 총 26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구 분	2018년 예산안
□ 민간투자지원사업	26억 7,000만원
■ 사업인건비	○ 비정규직 인건비(임시직 16인 × 12개월): 6억 4,400만원
■ 공공요금	○ 우편요금 및 전화요금 등: 2억 800만원
■ 수용비	○ 인쇄비 및 사무용품비 등: 1억 800만원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연구기자재 관리비 및 노트북 리스비 등: 7,100만원
■ 여비	○ 해외여비(국내출장, 시내출장비, 해외출장비): 8,400만원
■ 연구정보활동비	○ 문헌자료 구입비 등: 2,700만원
■ 전문가활용비	○ 원고료 및 번역료: 1,400만원 ○ 회의수당 및 평가수당 등: 1억 7,100만원
■ 회의비	○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비: 7,600만원
■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연구용역비: 11억원 ○ 기타용역비: 1억 6,700만원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동 내역사업에서 민간투자지원 관련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청소 및 경비 용역비, 전기료 등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당 부분 예산의 경상운영비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2014~2017년 6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이 동 내역사업에서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청소 및 경비용역비 등을 집행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 청소 및 경비용역비로 9,800만원, 전기료로 1억 6,1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15년에 청소 및 경비 용역비로 1억 4,700만원, 전기료 1억 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7년에도 이러한 용도 사용이 반복되고 있다.

### [민간투자지원사업을 활용한 청소 및 경비 용역비 등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지출내역	2014	2015	2016	2017. 6월
청소 및 경비 용역비	98	147	275	126
전기료(KDI, 대학원, 홍릉청사, 숙소동 등)	161	106	129	69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 출연금 예산은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업은 연구사업비로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청소 및 경비 용역비, 전기료, 워크숍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한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에 준용될 수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sup>2)</sup>에 따르면 매년 기관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청소 및 경비 등의 수선유지비를 경상경비로 집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상운영비가 아닌 연구사업비를 활용하여 해당 비용을 집행한 것은 적절치 않다.

동 사업의 사업비 예산을 경상경비 용도로 활용하는 예산의 부적정 집행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사업비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청소 및 경비 용역, 전기료 등으로 사용된 금액 부분은 경상운영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12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한국법제연구원<sup>1)</sup> 사업은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수립의 지원 및 법령정보의 보급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를 출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 대비 1억 1,400만원 증액된 11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한국법제연구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법제연구원	11,814	11,422	11,422	11,536	114	1.0
· 기본사업비	7,832	8,184	8,184	8,860	676	8.3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4-1.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사업비 사용 필요

##### 가. 현 황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중 한국법제연구원의 인건비, 경상경비, 기관고유사업비가 편성된 기본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017년 대비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분이 증액된 49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운영비는 2017년 대비 재산세 추가분이 일부 반영된 5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관고유사업비는 2017년 대비 기관 평가결과가 반영된 34억 2,700만원이 편성되어, 총 88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45-301

[2018년도 한국법제연구원 기본사업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예산 (A)	2018 예산안 (B)	(B-A)	증감 사유
□ 기본사업비	8,184	8,860	676	-
■ 인건비	4,266	4,925	659	○ 정규직 임금인상분 2.6% 반영 ○ 무기직 임금인상분 2.6% 및 일반사업비의 인건비 전환
■ 경상운영비	498	508	10	○ 재산세 추가분 일부 반영
■ 기관고유사업비	3,420	3,427	7	○ 기관평가결과 반영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나. 분석의견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비인 연구기획평가 사업에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운영에 관한 고객만족도 조사, 직원 대상 해외연수비를 편성·집행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필요가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연구사업비를 법제에 관련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일부 예산을 기관 운영 관련 용역비나 경상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4~2016년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사업비 중 기관운영 관련 용역비나 경상경비로 집행된 경우를 살펴보면, 2014~2016년 동안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홍보비 성격인 한국법제연구원 홍보브로슈어 제작비와,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관운영 관련 용역인 한국법제연구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구사업비를 활용하여 집행하였다.

또한, 우수직원 해외연수 등 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사업도 연구사업비를 통하여 집행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에 교부되는 동 사업 예산은 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로 구분되어 예산이 교부된다는 점에서, 기관고유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고 기관운영에 관련되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만족도 조사와 같은 용역비나 홍보물품 구입비와 경상경비 성격으로 교육훈련비에 속하는 우수직원 해외연수비 등을 연구사업비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사업비 중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 지출(예시)]

(단위: 천원)

연도	지출내용	금액
2016	2016년 연구원 홍보브로슈어 제작	13,812
	2015년도 한국법제연구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잔금50%)	8,520
	2016년도 한국법제연구원 고객만족도 조사(선금)	8,520
	2016년 연구원 홍보브로슈어 제작(하반기)	5,9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우수직원 연수(일본)	3,300
2015	홍보브로슈어 인쇄비	20,000
	위탁 2014년도 고객만족도조사 잔금(50%)	8,500
	2015년도 한국법제연구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선금50%)	8,5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우수직원 연수(중국)	2,500
2014	법연원우 간담회의비	2,720
	2014년도 한국법제연구원 홍보브로슈어(국.영문) 제작 용역비	24,200
	2013년도 한국법제연구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잔금(50%)	10,395
	위탁 2014년도 고객만족도조사 선금(50%)	8,5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우수직원 연수(중국)	2,368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법제연구원은 경상경비가 실소요에 부족한 관계로 고객만족도조사, 해외연수 등의 경비를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고객만족도조사, 해외연수 등의 경비를 연구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한국법제연구원은 동 사업의 연구사업비 예산을 기관 평가 관련 고객만족도 조사나 직원 해외연수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 4-2.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의 홈페이지 활용도 제고 필요

### 가. 현황

법제교류지원 사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아시아법령정보 네트워크(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 및 법제교류협력포럼의 지속적 운영 및 그 밖의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국법제연구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18년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2017년 예산 대비 7,000만원이 감액된 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법제교류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법제교류지원	502	459	459	389	△70	△15.3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통하여 추진할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운영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ALIN 전문가 포럼 개최 등을 통한 ALIN 회원기관을 확대하고, 해외입법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아시아 법제정보 등을 해당 사이트에 등록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8년도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운영 사업 세부내역]

구분	세부내역
ALIN (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LIN General Meeting, ALIN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ALIN 전문가 포럼 개최 등을 통한 ALIN 회원기관 확대</li> <li>○ 법제 발전 경험 공유 연구를 통한 입법컨설팅</li> <li>○ 상하반기에 걸친 방문을 통한 해외입법수요조사</li> <li>○ 국제공동연구보고서(ALIN Joint Research), 아시아 법제정보, Current Legal Issues in Asian Countries</li> </ul>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 나. 분석의견

한국법제연구원이 운영 중인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사이트의 업데이트, 유관기관 활용 등이 저조한 문제가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동 내역사업을 통하여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사이트(<https://www.e-alin.org/>)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는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관련된 포럼 사진, 아시아 법제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있는 아시아 법제 현황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법령 내용, 체계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자료의 업데이트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9월 기준으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총 262건의 자료가 공개되고 있으나, 2011년 5월부터 2017년 2월초까지 전혀 자료의 업데이트가 없었으며 2017년에도 2월 2건의 자료 업데이트만이 존재하여 자료 업데이트 현황이 부실한 문제가 있다.

또한, 2017년 9월 기준으로 국내 교류협력 기관이 22개이며, 국외 교류협력기관이 29개가 있음에도, 2010년 11월 8일 이후 중국정법대학(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CUPL)이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Energy Conservation’ 자료를 올린 이후로 타 파트너 기관 등의 자료 업데이트는 없이 한국법제연구원만이 아시아 법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사이트 법령 관련 정보 업데이트 현황(최근 6건)]

일자	내용	제공기관
2017. 2. 9	Materials on Legal systems of Asia	한국법제연구원
2017. 2. 9	Proceedings of 2016 ALIN Conference and Forum	한국법제연구원
2011. 5.12	2010 ALIN International Conference General Meeting	한국법제연구원
2011. 5.12	Digital Real-estate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for Supporting Legal Exchange	한국법제연구원
2011. 5.12	Guide for Korea'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its practices	한국법제연구원
2011. 5.12	Invited paper:A COMPARATIVE STUDY ON LEGISLATION OF HYPOTHECATION IN KOREA AND MONGOLIA	한국법제연구원

자료: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사이트(<https://www.e-alin.org/>)

또한, 해당 사이트의 아시아 법제 관련 정보는 단순히 나열식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며 나라별, 법체계별 등으로 분류화되어 있지 않아 유관기관에서 정보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사이트가 부실하게 운영됨에 따라 유관기관인 법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이 해당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한국법제연구원은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사이트의 아시아 법제 자료를 충실하게 마련하고 분류화하여 사이트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sup>1)</sup> 사업은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를 정부 출연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 대비 30억 5,000만원이 증액된 30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3,985	27,470	27,470	30,520	3,050	11.1
기본사업비	7,640	7,908	7,908	8,213	305	3.9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동 사업 2018년도 예산안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건비, 경상경비, 기관고유사업비가 편성된 기본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017년 대비 처우개선액, 신규인력 고용비 등이 반영된 40억 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운영비는 2017년 대비 임차관리비 상승분, 교육훈련비 증액분이 증액된 9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관고유사업비는 2017년과 동일한 32억 4,300만원이 편성되어 총 82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31-301

[2018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예산 (A)	2018 예산안 (B)	(B-A)	증감 사유
□ 기본사업비	7,908	8,213	305	-
▪ 인건비	3,778	4,008	230	○ 2018년도 처우개선분(2.6%) 9,900만원 ○ 2017년도 신규인력(1인) 증가분 3,800만원 ○ 2018년도 신규인력(1인) 증가분 3,800만원 ○ 자체수입 부족분 출연금 증액 5,500만원
▪ 경상운영비	887	962	75	○ 임차관리비 상승분 2,800만원 ○ 교육훈련비 증액분 1,900만원 ○ 자체수입 부족분 출연금 증액 2,800만원
▪ 기관고유사업비	3,243	3,243	0	-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5-1. 연구사업비와 관련성이 낮은 통근버스 임차 예산의 조정 필요

#### 가. 현황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과거 수도권에 위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후 서울 등 수도권이나 세종권에 거주하는 직원 등이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출퇴근하는데 필요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근버스 임차 현황(2017년 기준)]

(단위: 대, 천원)

운영 구간	운영기간	총 운행대수	단가	추정 소요액	실제 계약액
수도권	1.1~10.31 (주말, 공휴일 제외)	3,317	440	1,459,480	1,268,115
	11.1~12.31 (예정)	550	440	242,000	-
세종권	1.1~12.31 (주말, 공휴일 제외)	1,225	180	220,500	189,093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나. 분석의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사업과 관련이 떨어지는 지방이전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으로 제공하는 수도권, 세종권 통근버스 임차비를 연구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어, 해당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17년 수도권 및 세종권 통근버스 운행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은 운행기간은 연중이며 운행대수는 월(휴일익일) 19대, 화·수·목 12대, 금(휴일전일) 18대를, 세종권은 운행기간은 연중이며 운행대수는 5대/1일로 운영하고 있다.

2014~2017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근버스 임차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예산 3억 8,000만원 대비 3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은 예산 23억원 대비 22억 9,600만원을, 2017년 8월 기준으로 9억 8,700만원을 연구사업비(360-05)를 활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예산안 기준으로 17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근버스 임차 관련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8월)	2018 (예산안)
예산	380	2,300	1,704	1,726	1,700
집행액	363	2,296	1,678	987	-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러나, 지방 이전기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통근버스 임차비는 연구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고, 기타공공기관에 준용될 수 있는 규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sup>2)</sup>에 따른 경상경비의 개념에 포함되는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근버스 임차비를 연례적으로 연구사업비로 편성·집행한 것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연구사업비 예산을 편성·집행한 측면이 있으므로, 연구사업비 예산에서 통근버스 임차비 예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12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 5-2.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조속 추진 필요

### 가. 현황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예산 낭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예산·회계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재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은 2017년과 동일한 24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600	2,400	2,400	2,400	0	0.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재정정보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예산관리, 회계관리, 인사관리 등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신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 현황]

사업내용	추진기간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BPR/ISP 사업	2013. 7. ~ 2014. 5.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1차 구축 사업	2014. 9. ~ 2014. 12.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2차 구축 사업	2015. 11. ~ 2016. 3.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3차 구축 사업	2016. 8. ~ 2016. 12.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4차 구축 사업	2017(추진중)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실시하고 있는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차 구축사업이 2014년 12월에, 2차 구축사업이 2016년 3월에 완료되었으며, 2017년 9월 기준으로 4차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2018년도 예산안을 통하여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5차 구축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4차 구축사업의 계약 지연을 감안할 때, 향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4차 구축사업 추진 계획]

연구내용	일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4개 연구기관 인프라 도입(H/W 및 S/W)													
- 검사 및 인수													
○프레임워크/웹 표준화 및 디자인표준수립													
○요구사항 분석													
- 검사 및 인수													
○요구사항 설계													
- 검사 및 인수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연계 포함)													
○데이터마이그레이션 수행 (분석,설계,수행,검증)													
- 검사 및 인수													
○배포 및 운영지원													
○감리(PMO)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4차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2017. 4.

2017년 추진 중인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4차 구축사업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4개 연구기관 인프라 도입(H/W 및 S/W), 프레임워크/웹 표준화 및 디자인표준수립 등을 수행하는데 약 1년(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7년 4월 24일과 5월 22일에 해당 시스템 구축 공고와 재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어, 2017년 6월 29일 조달청을 통하여 수의계약으로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4차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4차 구축사업 계약 현황]

구분	공고일시	개찰일시	입찰방법	입찰결과
1차	2017. 4. 24	2017. 5. 22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
2차	2017. 5. 22	2017. 6. 2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
3차	2017. 6. 28	2017. 6. 29	수의	낙찰

자료: 나라장터(<http://www.g2b.go.kr>)

이러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4차 구축사업의 계약서에 따른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2017년 7월 3일부터 2018년 7월 3일까지로 20억 5,700만원의 계약금액으로 추진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7년에 선금을 제외한 잔금은 2018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4차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4차 구축 사업	2017. 7. 3~2018. 7. 3	2,05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4차 구축 사업 일반용역계약서(조달청)', 2017. 7. 3

이처럼 2017년 4차 구축 사업이 지연되어 2018년 7월에 완료되는 경우, 2018년에 추진할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5차 구축사업도 4차 구축이 종료되는 7월 이후에 추진이 가능하여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7년도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4차 구축사업의 지연을 감안하여, 2018년도 5차 구축사업은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sup>1)</sup> 사업은 국내외의 산업·기술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하고 연구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연구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운영비 및 기관고유사업비를 정부 출연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 대비 8억 8,900만원이 증액된 20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산업연구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산업연구원	17,504	19,870	19,870	20,759	889	4.5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6-1. 중국종합연구 사업비 집행관리 철저

### 가. 현황

중국종합연구 사업은 정부와 기업의 대중국 진출 전략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국을 지역별·산업별로 심층 연구 분석하는 연구사업으로 산업연구원은 동 사업의 일반사업비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과 동일한 10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35-301

[2018년도 중국종합연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국종합연구	741	1,034	1,034	1,034	0	0

자료: 산업연구원

나. 분석의견

동 내역사업은 연례적으로 사업 예산의 일부가 이월되고 있는바, 연내 실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내역사업의 2015~2017년 8월까지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예산액 7억 6,000만원 중 5억 3,700만원이 집행되었고 2억 2,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016년은 예산현액 9억 8,300만원 중 7억 4,1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로 2억 4,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예산현액 12억 7,700만원 중 4억 9,7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38.9%로 저조한 상태이다.

[중국종합연구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760	760	0	760	537	70.7	70.7	223	0
2016	760	760	223	983	741	97.5	75.4	243	0
2017 (8월)	1,034	1,034	243	1,277	497	48.1	38.9	-	-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은 동 내역사업이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발생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중국 대학, 연구소 등과의 외부용역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유로 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산업연구원은 중국 종합연구 사업 출연금의 연내 실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6-2. 연구사업비의 경상경비적 지출 지양

### 가. 현황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중 산업연구원의 인건비, 경상경비, 기관고유사업비가 편성된 기본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017년 대비 처우개선 반영 2억 3,200만원이 증액된 91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운영비는 2017년 대비 세종시 임차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인상액이 증액된 30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관고유사업비는 2017년 대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가 채용 소요액 5,500만원이 증액된 53억 1,100만원이 편성되어, 총 174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산업연구원 기본사업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예산 (A)	2018 예산안 (B)	(B-A)	증감 사유
□ 기본사업비	17,101	17,449	348	-
▪ 인건비	8,905	9,137	232	○ 처우개선 반영 2억 3,200만원
▪ 경상운영비	2,940	3,001	61	○ 세종시 임차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인상액 반영 6,100만원
▪ 기관고유사업비	5,256	5,311	55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가 채용 소요 추계 반영 5,500만원

자료: 산업연구원

### 나. 분석의견

산업연구원은 기관고유 연구사업비에서 경상경비 성격의 기념품 구입비, 직원 대상 해외연수비, 명함 구입 등 소모성 물품비 등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사업비를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기타공공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준용될 수 있는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경상경비<sup>2)</sup>의 정의에 따르면 경상경비는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

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직원 대상 해외연수와 같은 교육훈련비나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비는 경상경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경상경비 성격으로 연구사업비를 사용한 경우(예시)]

(단위: 백만원)

연도	항목	내용	집행액
2014	연구사업비	LED 스탠드, USB 등 기념품 구입	28
		신문대금 지급	27
		명함제작비	7
		해외(단기) 연수 비용 지급	13
2015	연구사업비	해외특별연수(안식년) 비용 지급	55
		전통부채, USB 등 기념품 구입	10
		신문대금 지급	18
		명함제작비	12
2016	연구사업비	해외 연수(단기, 안식년) 비용 지급	40
		40주년 기념 세미나 기념품 등 구입	39
		신문대금 지급	5
		명함제작비	12
2017 (8월 기준)	연구사업비	해외 연수(단기, 안식년) 비용 지급	18
		해외 연수(단기, 안식년) 비용 지급	73
		신문대금 지급	7
		명함제작비	8

자료: 산업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4~2017년(6월) 동안 산업연구원은 연구사업비를 활용하여 2014년 LED 스탠드, USB 등 기념품 구입에 2,900만원, 신문대금에 2,50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에도 연구사업비를 기념품 구입, 신문대금, 명함제작비 등에 집행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40주년 기념 세미나 기념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3,900만원을 연구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연례적으로 연구사업비를 경상경비 성격으로 집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향후, 산업연구원은 연구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구사업비를 경상경비 성격인 기념품 구입, 신문대금, 해외연수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2)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12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sup>1)</sup> 사업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를 정부 출연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 대비 8억 7,800만원이 증액된 321억 3,400만원을 정부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다.

[2018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1,040	31,256	31,256	32,134	878	2.8
기본사업비	19,757	21,534	21,534	24,427	2,893	13.4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7-1. 연구사업비에 편성된 감사실 운영 예산의 조정 필요

### 가. 현황

동 사업의 2018년도 기본사업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017년 대비 임금인상율,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이주수당 등이 반영된 175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운영비는 2017년 대비 지방이전에 따른 소요예산 등이 증액된 3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관고유사업비는 2017년 대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반영된 36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총 244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41-301

[2018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예산 (A)	2018 예산안 (B)	(B-A)	증감 사유
□ 기본사업비	21,534	24,427	2,893	-
▪ 인건비	16,505	17,546	1,041	○ 임금인상율 2.6%(429백만원) ○ 2018년 2월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이주수당 6억 1,200만원
▪ 경상운영비	1,370	3,216	1,846	○ 지방이전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 15억 1,700만원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700만원 등
▪ 기관고유사업비	3,659	3,665	6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600만원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나. 분석의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구사업비로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감사실 운영비를 연례적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는데, 2018년도 연구사업비 예산안에서 해당 비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기관 내에 일상감사, 외부감사 관련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감사실을 두고 있으며, 2017년 9월 기준으로 감사실은 실장 1명, 담당 직원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사업비로 집행한 감사실 운영비 현황]

(단위: 천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6월)
공공요금	0	20	102	0
사업인건비	28,543	36,193	39,971	20,936
수용비	4,230	3,081	2,816	311
여비	429	534	482	4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4,448	2,188	1,806	109
연구정보활동비	270	149	18	0
전문가활용비	830	1,260	680	3,050
회의비	7,117	3,385	3,166	1,570
합 계	45,866	46,810	49,040	26,376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구사업비를 활용하여 감사실 비정규직 보수, 특정업무수행경비, 초과근무수당, 업무에 필요한 노트북 등 임차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구입비, 여비 등으로 2014년은 4,586만원, 2015년은 4,681만원, 2016년은 4,904만원, 2017년은 6월말 기준으로 2,637만원을 집행하여, 연구사업비를 감사실 운영비로 연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감사실의 주요업무는 감사·법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며 소속된 직원도 연구직이 아닌 일반 행정원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사업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감사실 운영비를 연구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의 부적정 사용에 해당한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 감사분야 워크숍 참석, 감사실 행사 경비 등을 연구사업비가 아닌 경상운영비로 집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사실 운영경비를 연구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 관련 비용 집행(예시)]

(단위: 천원)

기관명	비목	일자	지출내역	금액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상운영비	2014. 3. 19	2014년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분야 워크숍 참석	152
한국개발연구원	경상운영비	2016. 11. 3	2016년 4/4분기 경영지원실·감사실 행사 경비	396
산업연구원	경상운영비	2016. 4. 26	2016년 감사역량 강화 워크숍 참가비	20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감사실 운영비 예산을 연구사업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7-2. 연구사업비를 통한 직원 해외연수비 지원 지양 필요

### 가. 현 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기관고유사업비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국제기구, 단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글로벌교육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국외 학술대회 발표 지원, 국제회의 참석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동 내역사업의 2018년 예산안을 2017년과 동일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글로벌교육협력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글로벌교육협력	77	150	150	150	0	0.0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나. 분석의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구사업비인 글로벌교육협력(2018년의 경우 기획운영 사업 예정) 사업을 사용하여 내부 직원 대상 장기 해외연수 과정의 교육훈련비를 편성·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구사업비를 활용하여 국제 교육기구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글로벌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글로벌교육협력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 해외연수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교육협력 사업을 통한 장기 해외연수 과정 등 비용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항목	내용	금액	
			예산	집행
2014	글로벌교육협력 (연구사업비)	장기 해외 연수지원금(신○○)	15	14
		장기 해외 연수지원금(김○○)	15	14
		장기 해외 연수지원금(이○○)	15	14
2015	글로벌교육협력 (연구사업비)	장기 해외 연수지원금(이○○) (연구업무 일정으로 미실시)	30	0
2016	글로벌교육협력 (연구사업비)	장기 해외 연수지원금(최○○)	15	12
		장기 해외 연수지원금(윤○○)	15	14
2017 (8월)	기획운영 (연구사업비)	장기 해외 연수지원금(김○○)	15	8
		장기 해외 연수지원금(정○○)	15	13
2018 (계획)	기획운영 (연구사업비)	장기 해외 연수지원금(2명)	30	-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연구사업비인 글로벌교육협력 사업을 활용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속 직원이 해외 교육기관에서 장기간 연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2014년도 4,200만원, 2016년도 2,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원 대상 해외연수 사업은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해당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기타공공기관에 준용될 수 있는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경상경비<sup>2)</sup>의 정의에 따르면 경상경비는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직원 대상 장기 해외연수와 같은 교육훈련비 등은 경상경비로 집행되어야 하며, 연구사업비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구사업비 예산을 직원 대상 해외연수비 등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2)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12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 7-3. 직원 이주지원비 예산 조정 필요

#### 가. 현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충북혁신도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이며, 진천 신청사는 총 사업비 625억 5,400만원<sup>3)</sup> 규모로 지하1층, 지상5층(대지면적: 25,000㎡, 건축면적: 22,234㎡) 수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2017년 9월 기준 신청사의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 12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2016년 6월 조달청과 청사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9월 기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장공사 중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계획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직원 이주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충북혁신도시 청사 신축 현황]

(단위: 백만원)

이전지역	이전인원	신축청사 규모	총사업비	청사 완공	이전시기
충북혁신도시 (진천)	40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1층, 지상5층</li> <li>○ 대지면적: 25,000㎡</li> <li>○ 건축면적: 22,234㎡</li> </ul>	62,554	2017.12	2018. 2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나. 분석의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신청사 실제 이전시기를 감안하여 2018년 직원 이주지원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년 2월 신청사 이전에 따라 이전대상 직원 255명을 대상으로 1개월 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직원이주수당 12개월분인 6억 1,200만원을 2018년 예산안에 편성하였다.

3) 당초 승인된 총사업비는 582억 4,800만원이나, 물가상승에 따른 신축공사비 계약액 변경 차액, 종전부동산 법인세, 취득세 등 지방세, 현 청사 원상복구비 등 지방이전 소요비용을 반영하여 2017년 9월 기준 625억 5,400만원 규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이주수당 편성 현황]

(단위: 명, 개월, 백만원)

직원수	개월	이주수당 단가	금액
255	12	0.2	612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7년 9월 기준 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르면, 2018년 2월에 직원의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최소 1~2월의 경우 직원 이주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비 부족<sup>4)</sup>으로 인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충북혁신도시 이전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2018년에 이전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주수당 집행액이 현재 계획보다 더욱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충북혁신도시에 건립 추진 중인 신청사의 실제 건립시기에 맞추어, 2018년 직원 대상 이주수당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현재 확보한 사업비로는 2017년 11월 이후로는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사업<sup>1)</sup>은 토지·주택·건설산업 등 국토경제 분야 시장분석 및 정책연구와 국토·지역·도시·SOC·환경 등 국토분야 계획수립 및 전략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관고유 사업비 등을 정부 출연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을 2017년 예산 대비 17억 600만원이 증액된 27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국토연구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토연구원	28,867	26,234	26,234	27,940	1,706	6.5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8-1. 국토연구원의 국토지식 공유사업 예산 조정 필요

### 가. 현 황

국토지식 공유사업은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국토사랑글짓기대회와 관련 세미나 등을 실시하는 국토연구원 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다.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 예산과 동일한 7,7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33-301

[2018년도 국토연구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토지식 공유	128	77	77	77	0	0.0

자료: 국토연구원

동 내역사업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토와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하여 국토사랑 관련 정해진 주제에 대한 글짓기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상 등을 하는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인건비로 비정규직 인건비(일용직 1인 × 72일) 360만원, 공공요금으로 국토사랑글짓기 대회 상장 배송 등 비용으로 44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로 국토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운영비, 제21회 국토사랑글짓기대회 개최 및 시상식 운영 등으로 2,470만원,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으로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공동주최 업무대행비 2,700만원 등을 합한 7,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토지식 공유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2018 예산안
사업인건비	○ 비정규직 인건비(일용직 1인 × 72일)	3.6
공공요금	○ 국토사랑글짓기 대회 상장 배송 등	4.4
수용비 및 수수료	○ 국토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운영비(1) ○ 초등학생 국토탐방 프로그램 자료집(5.6) ○ 제21회 국토사랑글짓기대회 개최 및 시상식 운영 (14.5) 등	24.7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공동주최 업무대행(27.0)	27.0
기타	○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심사비 ○ 국토탐방 사전답사를 위한 차량임차비 등	17.3
합 계		77.0

자료: 국토연구원

## 나. 분석의견

국토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토지식 공유사업은 연구사업비를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행사 사업이며, 국토교통부의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 사업과 유사하므로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동 내역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토사랑글짓기 대회는 2017년 기준으로 국토연구원·소년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교육부·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내가 꿈꾸는 미래 국토(마을)’, ‘함께하는 우리 국토(마을)’라는 주제에 대하여 전국 초등학생이 제출한 글짓기 산문을 평가하여 시상하는 사업이다.

또한, 동 내역사업을 통하여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 철도·도로 시설 등을 탐방하는 국토탐방대회를 소년조선일보와 함께 주관하고 있다.

동 내역사업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비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국토사랑글짓기 대회나 국토탐방대회 사업은 행사 사업의 성격이 강하여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국토사랑글짓기 대회 세부내역]

행사명	제22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주최	국토연구원·소년조선일보
대상	전국 초등학생
글짓기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꿈꾸는 미래 국토(마을) (예) 신기술로 달라질 국토(친환경 도시, 스마트 도시,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차 등)</li> <li>(예)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 국토(안전, 주거안정, 통일 등)</li> <li>○ 함께하는 우리 국토(마을) (예) 여행, 체험학습 등을 다녀와서 느낀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li> <li>(예) 평소에 다니는 곳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li> <li>(예) 가족 또는 이웃과 함께하고 싶은 우리 국토</li> </ul>
시상	개인부문(339명), 단체부문(7개교), 지도교사부문(2명)을 대상으로 상장, 상패 및 문화상품권 증정

자료: 국토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국토교통부는 동 내역사업과 유사한 목적으로 일반회계를 통한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민간보조 사업으로 국토교육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국토사랑글짓기대회 후원 및 국토교육 동아리 지원, 국토탐방지원, 국토교육관계자 교육 및 국토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동 내역사업과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국토교육 교사연수프로그램 운영, 초등학생 국토탐방 프로그램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에 있어서도 우리 국토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동 내역사업의 국토탐방대회, 국토교육 교사연수 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국토교통부의 청소년 국토교육지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up>2)</sup>.

[국토지식 공유 사업과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 사업의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국토지식 공유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
사업시행주체 (공공기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목적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	우리 국토에 대한 올바른 국토관 함양을 위해 정책연구학교 운영, 교육교재 개발 등
사업시행방식	출연	민간보조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사랑 글짓기대회</li> <li>○ 국토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운영</li> <li>○ 초등학생 국토탐방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육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li> <li>○ 국토사랑글짓기대회 후원 및 국 토교육 동아리 지원</li> <li>○ 국토탐방지원</li> <li>○ 국토교육관계자 교육 및 국토교 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등</li> </ul>
2018년 예산안	70	309

자료: 국토연구원 및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 사업에서 2016년 기준 국토탐방대회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국토교육 교사연수 사업에서 2,5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해당 사업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20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국토지식 관련 홍보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유사한 사업명으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사업에서도 일부 부분을 위탁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해당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이 행사 사업으로의 성격이 강하여 연구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처럼 유사한 사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실시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제 예산 편성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국토연구원이 해당 사업 내용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간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국토연구원은 동 내역사업이 연구개발 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행사 사업 지원의 성격이 강하며 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을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 8-2. 건축자산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의 사전 절차 준수 등

### 가. 현황

건축자산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건축자산 기반 예비창업자, 창업공간이나 창업자금(정부, 민간)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토연구원 사업의 2018년도 신규 내역사업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6억 6,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2018년도 건축자산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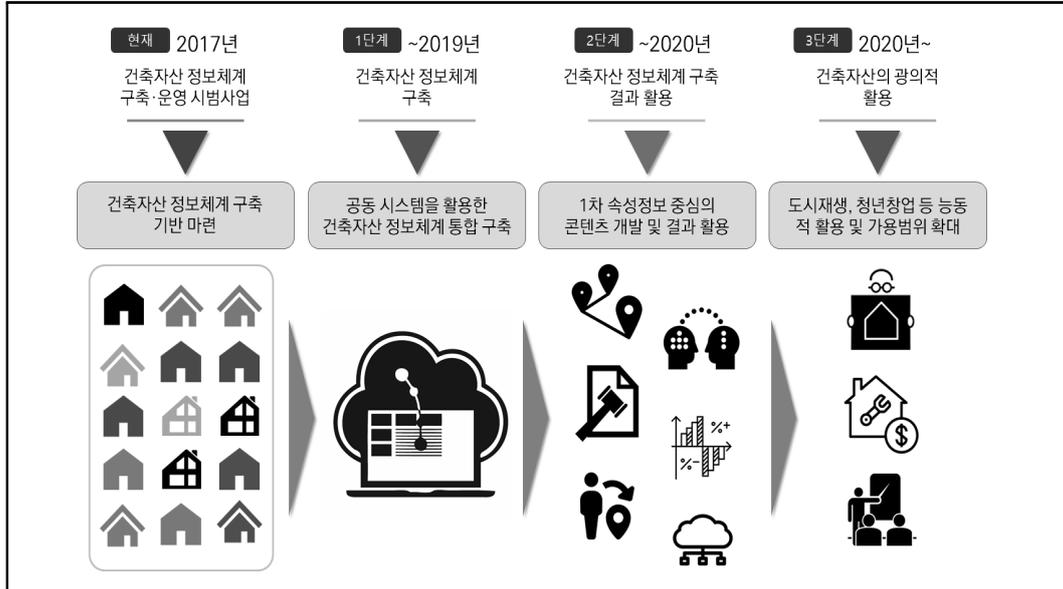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건축자산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	0	0	0	661	661	순증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동 내역사업은 건축자산 기반 예비창업자, 창업공간이 필요한 창업자, 창업자금(정부, 민간)을 편성·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을 위하여 우리나라 건축자산의 분포현황, 관리실태, 인식, 자산특성 등을 수집하여 건축자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이를 정부나 민간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조직, 부처, 지역 간 정보 공유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중앙 및 지자체)간 의사소통 채널의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의 사업기간은 2018~2020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18억 4,100만원을 소요하여 해당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국토연구원 부설 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건축자산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계획]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나. 분석의견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추진할 2018년도 신규 내역사업인 건축자산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건축자산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동 내역사업은 국토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기본사업비에 포함된 일반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심사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sup>3)</sup>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의 적용대상으로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

3)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43

7. 정보화 사업

1. 적용대상

-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
  -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 하기 위한 사업

\*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컨설팅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경비 등으로 구성

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 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구체적인 정보화사업 내용에 대하여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컨설팅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경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 내역사업은 건축자산 DB를 구축하는 정보시스템 개발비와 향후 해당 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경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정보화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동 사업을 정보화 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분류하여 지침과 법령에 따라 신규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 이전에 준수할 필요가 있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예산안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신규 정보화 사업인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 후 5년간 유지보수비, 추가구축비를 재정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타 정보시스템과의 유사·중복성 검토가 실시되는데 동 사업은 이러한 규정을 미준수한 측면이 있다.

향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동 내역사업을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하고 지침과 법령에 따른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준수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내역사업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임에도 사전 절차인 BPR<sup>4)</sup>이나 ISP<sup>5)</sup>를 수립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동 사업계획에 따르면 2018~2020년 3년 동안 18억 4,100만원(순수 정보시스템 구축비 6억원 포함)의 사업비와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sup>6)</sup>에 따르면

4) 업무 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

5)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

6)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44

□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BPR 및 IS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IS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ISP 수립 예산을 요구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요구에 앞서 ISP 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

※ 기획재정부는 ISP 산출물 검토 등에 대해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BPR 및 IS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소규모 단순행정시스템 구축 등 별도의 BPR·ISP 수립의 실익이 낮거나 재난·재해 관련 사업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한 사업 등에 대해서 BPR 또는 ISP 없이 정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3년간 1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향후 창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공동 활용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예산 편성 이전에 BPR 및 ISP 수립을 통하여 타 정보시스템과 유사·중복을 회피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8년도 자체 기획연구를 통하여 ISP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 이전에 ISP를 수행한 후 ISP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비 규모가 도출된 후 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 
- 단, 다음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BPR·ISP 수립절차를 제외하거나, BPR·ISP 수립 완료 이전 정보시스템구축 예산 요구 가능
  - BPR·ISP 수립 제외 가능 : 소규모 단순행정시스템 구축 등 별도의 BPR·IS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 BPR·ISP 수립 완료 이전 추진 가능 : 재난·재해 관련 사업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한 사업

한국노동연구원 사업<sup>1)</sup>은 우리나라 노동관계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노동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관고유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 출연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 예산 대비 13억 5,200만원이 증액한 14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한국노동연구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노동연구원	12,236	13,158	13,158	14,510	1,352	10.3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9-1. 총동문회 관련 서울사무소 임차료 등 예산 조정 필요

### 가. 현 황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스쿨 운영 사업은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교육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과 사이버교육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은 연구사업비(일반사업비)로 동 내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43-301

[2018년도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스쿨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스쿨 운영	200	200	200	182	△18	△9.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나. 분석의견

동 내역사업을 통하여 편성·집행되고 있는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 총동문회 관련 서울사무소 임차료 등에 관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동 내역사업을 통하여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노사관계최고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노사관계고위지도자를 위한 고용노사관계 특화교육프로그램으로 9개월에 걸쳐 주 1회 야간강좌로 운영되며, 노동시장, 노동법, 노사관계, 인적자원, 노동복지 분야의 정규 강좌와 특강, 논문발표와 집단토론, 사례연구, 국내외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운영 중인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경영계 CEO 및 인사노무 담당 임원, 노동조합의 고위 간부 등의 50명 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노사관계, 인적자원관리, 노동법, 고용노동정책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운영 중인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세부내용]

과정명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과정내용	한국노동연구원과 서울대 교수 등 강사진과 정규강좌(노사관계, 인적자원관리, 노동법, 고용노동정책 등), 특강, 해외연수 등
교육기간	9개월(2017년 3월~11월) / 매주 목요일 19:00~21:30
모집인원	50명 내외
지원자격	① 국회의원, 공무원, 공기업, 공공부문의 고위급 인사 ② 노동조합의 고위 간부 ③ 기업, 경영계 CEO 및 인사노무 담당 임원 ④ 노사관계 관련 변호사, 노무사, 정당, 사회단체 지도급 인사 및 고위 간부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은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을 수료한 자가 가입하는 총동문화 사무실<sup>2)</sup>과 해당 과정을 운영·참여하는 주임교수, 간사, 연수생 등이 회의실로 사용하는 서울사무소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2015년부터 임차하고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임차료, 임차보증금, 비품구입비 등을 연구사업비(일반사업비)인 동 내역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5~2017년 6월까지 한국노동연구원이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총동문화 사무실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살펴보면, 2016년에 서울사무소 임차보증금으로 2,100만원, 임차료로 6,015만원, 인테리어공사비로 1,642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7년에도 서울사무소 임차료 3,077만원, 관리비 530만원 등을 지급하여 2015~2017년 6월까지 약 2억 원 가량의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총동문화 관련 서울사무소 관련 비용 지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합계
서울사무소임차보증금지급 (정우빌딩)	17,255	21,000	750	39,005
서울사무소임차료	36,584	60,153	30,774	127,511
서울사무소관리비	0	6,697	5,300	11,997
서울사무소인테리어공사비	0	16,423	0	16,423
서울사무소 환경미화, 전화요금, 비품구매 등	1,574	2,537	2,562	6,673
합 계	55,413	106,810	39,386	201,609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총동문화는 해당 과정의 수료생 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단체로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져 해당 총동문화의 사무실 비용을 연구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연구사업비 사용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한다.

특히, 2018년 예산안에서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비목으로 총동문화 운영사무실 임차 및 관리비 명목으로 5,192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2018년에도 연구사업비를 활용하여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총동문화 사무실 관련 비용을 집행할 예정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2)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 총동문화(노고지)는 홈페이지(<http://www.nogoji.or.kr/>)에 여의도 사무실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909호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총동문회 관련 서울사무소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내용	금액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조찬간담회 회의실 임차료 500,000×4회=2,000 - 합숙연수 버스 임차료 660,000×2회=1,320 - 합숙연수 회의장 임차료 880,000×2회=1,760 - <b>총동문회 운영사무실 임차 및 관리비 65,554×60평×12월×1.1=51,919</b>	56,999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은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연수생 등록금 수입(자체수입)에서 총동문회 임차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정부 출연금 예산에서는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스쿨 운영 사업에서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총동문회 관련 서울사무소 예산의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9-2. 통일이후 인력 및 노동시장정책 사업의 조사방법 개선 필요

### 가. 현황

한국노동연구원은 동 사업의 연구사업비를 활용하여 노동 관련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신규 연구과제로 ‘통일이후 인력 및 노동시장정책’ 과제를 1억 4,800만원의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8년도 통일이후 인력 및 노동시장정책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통일이후 인력 및 노동시장정책	0	0	0	148	148	순증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해당 신규 연구과제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인건비 1,400만원, 워크숍 및 세미나개최비 600만원, 인쇄비 및 사무용품비등 900만원, 국내출장 및 시내출장비 600만원, 공동연구 및 실태조사비 7,700만원 등의 연구관련 경비를 합한 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통일이후 인력 및 노동시장정책 예산안의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인건비		공공요금	수용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여비	
비정규직 인건비 석사급1인 6개월(14)	협동연구 사업인센 티브(15)	우편요금 및 전화요금 등(1)	인쇄비 및 사무용품 비등(9)	회의장임 차료(2)	국내출장 및 시내출장비(6)	
연구정보활 동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연구자료 구입 및 특근매식비 (3)	발표비 및 토론비 (6)	자문비 및 회의수당 (4)	FGI 회의개최비 (2)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비 (6)	보고서 심의비(3)	공동연구 및 실태조사비 (7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 나. 분석의견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년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인 ‘통일 이후 인력 및 노동시장정책’ 연구과제의 조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년 신규로 추진할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통일 이후 노동시장 상황과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북한의 노동시장 실태, 북한 경제특구의 노동관련 제도, 북한 노동시장의 작동원리 등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통일 이후 인력 및 노동시장 정책의 세부 사업내용]

구분	세부내용
경제 제도 및 시장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의 경제 제도의 변화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li> <li>○ 시장화의 노동시장에 대한 함의 도출</li> </ul>
노동 관련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 법규를 중심으로 노동관련 제도를 남한제도와 비교 분석</li> <li>○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적용되는 노동법규 분석</li> </ul>
노동시장 관련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노동시장의 현황에 대한 탈북자 대상 실태조사</li> <li>○ 공식/비공식 고용</li> </ul>
노동시장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시장의 작동원리</li> <li>○ 노동시장의 현황</li> <li>○ 공식임노동과 비공식임노동, 자영업의 이중근로</li> </ul>
경제특구의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특구의 노동관련 제도 및 실태</li> <li>○ 경제특구간의 노동관련 제도 비교</li> </ul>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당 연구과제는 통일 이후 노동시장 정책 수립을 위하여 현재 북한의 노동시장 실태에 대해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직접 조사나 북한 관련 연구자와 협력하여 실효성있는 분석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한 관계로 인해 북한 노동시장 현황에 대하여 탈북자를 통한 간접 조사를 할 예정으로 직접 조사나 북한 관련 연구자와 협력하는 조사하는 방식에 비하여 현재 북한 노동시장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연구결과가 북한 노동시장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통일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일연구원은 북한 노동 분야와 관련하여 ‘러시아

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 제정 노동보호법 및 노동정량법의 분석과 평가’,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 형성과 변화’ 등의 다수의 연구과제를 추진한 바 있다.

기존에 통일연구원이 추진한 노동 분야 관련 주제와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통일연구원의 북한 노동 분야 관련 주제(예시)]

연도	연구과제	연구기관
2005	○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 형성과 변화	통일연구원
2011	○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 제정 노동보호법 및 노동정량법의 분석과 평가	
2012	○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2016	○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자료: 통일연구원

따라서, 한국노동연구원은 북한 노동시장의 형태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과제의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기존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과제와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 부패예방감시단의 존치 필요성 재검토 및 기능 중복 주의 필요

#### 가. 현황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사업<sup>1)</sup>은 부정부패 근절 및 예방·감시를 위한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舊 부패척결추진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2017년 예산현액 6억 7,400만원 대비 5,700만원 감액된 6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sup>1)</sup>		B-A	(B-A)/A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699	(674)	(674)	617	△57	△8.5

주: 1) 2017년 예산액은 예비비로 배정받은 금액임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한시조직으로, 부정부패·비리의 예방 및 감시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2014년 7월 처음 출범 당시에는 1년간의 시한을 둔 한시조직으로 출범하였으나, 현재 3번의 규정 개정을 거쳐 2019년 12월 31일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되었다.

#### 나. 분석의견

첫째, 부패예방감시단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한시조직으로 설치되었으나, 단기적인 시한 연장의 반복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 파악 및 분석, 원인 분석 및 대책 강구,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sup>2)</sup> 부패예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7036-311

방감시단은 2014년 7월 공직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법무부, 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공무원 4개팀, 39명으로 출범하였으며, 2015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한 동안 활동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훈령의 부칙 개정을 통해 2015년, 2016년, 2017년 1년 단위로 단기적인 시한 연장을 반복해왔다. 2014년, 2017년에는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를 지난 시점에서 기한을 연장하면서 예비비로 운영 관련 비용을 배정받았다.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규정의 개정 내역]

구분	개정 일시	효력 기간	
제정	2014.8.13.	2014.8.13.~2015.7.31.	1년
1차 개정	2015.7.23.	2015.7.23.~2016.12.31.	1년 6개월
2차 개정	2016.12.7.	2016.12.7.~2017.12.31.	1년
3차 개정	2017.8.4.	2017.8.4.~2019.12.31.	2년 5개월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2014	0	0	757	757	719	-	95.0	38
2015	579	198	0	777	725	125.2	93.3	52
2016	749	11	0	760	699	93.3	92.0	61
2017.8.	0	0	674	674	250	-	37.1	-

주: 2014년, 2017년 예산액은 예비비로 배정받은 금액임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해당 조직은 한시적 조직으로 출범했던 것과는 달리 5년 이상 운영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부패예방감시단의 사업 성격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를 두어

2)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기능)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 파악 및 분석
2. 부정부패·비리 소지의 원인 분석 및 대책의 강구
3. 부정부패·비리 관련 기관 간 자료 및 대책의 공유
4. 부정부패·비리 관련 대책의 시행
  - 가. 공직부패·비리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점검 후 관계 기관에의 이첩 조치 또는 수사 의뢰, 관계 기관에의 감사 요청
  - 나. 부정부패·비리 실태가 파악된 사항 중 수사 필요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 다. 부정부패·비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에의 이첩 및 이행 사항의 확인·점검
  - 라.~마. 삭제
5. 삭제
6. 그 밖에 부정부패·비리의 근절 및 예방·감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부패예방감시단은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를 둔 조직들이 주로 관련 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및 특정과제의 전략 수립 및 해결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sup>3)</sup>과 달리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토대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 점검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패예방감시단은 관계부처의 점검 권한을 활용하여 부패·비리 사항에 대해 합동점검하고 있으며,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관계기관에의 이첩 또는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부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수행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해당 조직의 사업 성격, 성과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5)</sup>

**둘째, 기존 정부 부처 및 조직과 사업의 목표 및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기존 정부 부처 및 조직의 부패방지 역할에 있어 일부 중복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먼저, 공직 기강 확립 및 부조리 취약 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부패 원인 분석 및 대책의 강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제도개선 및 부패영향평가 제도 등을 통해서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9월에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이 개정되어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각각의 공직관련 부패척결·부패방지 관련 기관은 고유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활동해오고 있으나 기획·분석 역할이 필요하여 추진단을 구성하였다고

- 
- 3)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를 둔 조직 중 ① 관련 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을 위한 조직은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녹색성장지원단이 있으며, ② 특정과제의 전략 수립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신고리5·6호기 공론화지원단이 있다.
  - 4) 2016년에는 각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건설 관리 취약분야 점검,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 점검, 학교급식 비리 점검,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비리 점검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였다.
  - 5) 국무조정실은 부패예방감시단의 1년 예산이 6억여원에 불과하나, 대형국책사업 검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설계 시정을 통해 2,400억여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연 730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투입비용 대비 산출효과가 좋다는 점에서 조직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설명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8월 운영규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중복 여지가 있던 기존의 부정부패·비리 관련 국민신고센터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제외하고<sup>6)</sup>, 부정부패·비리의 “척결”에서 “예방·감시”로 기능을 수정하였다.

부패예방감시단이 기존의 부패 관련 정부 조직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도 있으나 기획·분석에 있어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7)</sup> 다만 운영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신고 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능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부패의 사각지대에서 부패예방감시단의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부패 관련 조직 간의 연계가 유기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패예방감시단과 유사한 부처별 업무 비교]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반부패정책협의회
-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 파악 및 분석	-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및 제도개선 권고 실태 조사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상황 실태조사·평가	-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에 속한 공무원의 직무 감찰	-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
- 부정부패·비리 소지의 원인 분석 및 대책 강구	-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
- 부정부패·비리 관련 기관 간자료 및 대책의 공유	- 부패방지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 부패관련 실태조사 정보 공유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부정부패·비리 관련 대책의 시행	- 부패행위 신고 안내 상담 -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의 수립 및 추진

자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바탕으로 재작성

- 6) 국무조정실은 권익위의 신고센터는 실명신고, 부패예방감시단의 신고센터는 비실명 신고를 접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권익위의 신고센터와 기능이 중복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실명·비실명 신고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신문고를 확대 개편하여 부정부패·비리 관련 정부합동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실명·비실명 신고를 통합 접수하도록 하였다는 입장이다.
- 7) 국무조정실은 부패예방감시단이 비리 예방을 위한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미진하거나, 여러 부처 소관사항이 겹쳐 있지만 협업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부패의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개인에 대한 처벌, 징계 보다는 제도개선 등 정책을 통한 예방 위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 및 제도개선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패실태·원인 분석, 제도개선까지 신속하게 일괄 처리함으로써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가. 현황

대테러센터 운영 사업<sup>1)</sup>은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테러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할 목적으로 구성된 대테러센터<sup>2)</sup>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2017년 예산액 10억 2,600만원 대비 8,700만원 감액된 9억 3,900만원이다.

[2018년도 대테러센터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테러센터 운영	1,493	1,026	1,026	939	△87	△8.5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나. 분석의견

첫째, 대테러센터 국외업무여비의 구체적인 사전계획 및 지속적 국제교류·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테러센터는 2018년 국외업무여비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대테러 국제공조 및 협력체계 구축, 대테러 국제회의의 참석, 아국인 테러피해 대응팀 파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과 동일하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예산코드: 일반회계 7035-311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대테러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대테러센터 국외업무여비 편성 내역]

(단위: 천원)

2017년 예산		2018 예산안	
내역	금액	내역	금액
1. 대테러 국제공조 및 협력체계 구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고공단 1명, 4급 1명, 5급 1명)	49,522	1. 대테러 국제공조 및 협력체계 구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고공단 1명, 4급 1명, 5급 1명)	49,240
가. 영국 테러분석센터(JTAC)(5일)	17,298	가. 영국 테러분석센터(JTAC)(5일)	17,204
나. 프랑스 대테러조정기구(UCLAT)(5일)	16,728	나. 프랑스 대테러조정기구 (UCLAT)(5일)	16,634
다. 러시아 대테러센터(5일)	15,496	다. 러시아 대테러센터(5일)	15,402
2. 대테러 국제회의의 참석 (베트남, 미국) (고공단 1명, 4급 1명, 5급 1명)	27,452	2. 대테러 국제회의의 참석 (미국) (고공단 1명, 4급 1명, 5급 1명)(5일)	21,112
가. 베트남 APEC 정상회의 대테러 분과위원회(5일)	6,246		
나. 미국 UN 테러대책위원회(5일)	21,206	가. 미국 UN 테러대책위원회	21,112
3. 아국인 테러피해 대응팀 파견 (고공단 1명, 4급 1명, 5급 1명) (이집트 테러 사례 기준)(9일)	16,711	3. 아국인 테러피해 대응팀 파견 (고공단 1명, 4급 1명, 5급 1명) (이라크 테러 사례 기준)(14일)	20,677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대테러센터 측은 2017년 예산과 동일하게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대테러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나 2017년 8월까지 관련 국외여비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2018년도 예산안에서도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3회씩 출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각 지역의 대테러센터와 업무협의 등이 사전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테러센터 측은 테러 관련 경험이 많은 유럽 지역의 테러예방·노하우습득, 교육 인프라 구축, 기술협력 등을 위해 꾸준한 방문이 필요하며, 장기간 교류를 통해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기관 간 교류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러 관련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출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신뢰 구축 및 교류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 해외 출장 이외의 지속적인 업무협력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테러센터는 해외출장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해외 대테러센터와의 지속적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영상 홍보를 동계올림픽 개최 등 행사 기간을 활용하여 적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

대테러센터 홍보비는 2017년 1억원에서 8,5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방송홍보영상 제작비용 5,000만원 및 송출비용 1억 3,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도 대테러센터 홍보 관련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항	금액	산출내역
방송홍보영상송출	135,000	
가. 방송용 홍보영상 송출	90,000	30,000,000원*3개 방송사
나. 승강기용 홍보영상 송출	45,000	45,000,000원*1식
방송용 홍보영상 제작	50,000	50,000,000*1식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대테러센터는 국민들의 테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행동요령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8년에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테러대비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동영상 송출 지역 및 송출 시기가 국제행사 등 중요시기에 안내가 필요한 장소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규제개혁 사업<sup>1)</sup>은 불필요한 규제의 정비 및 불합리한 규제생성의 억제를 위하여 규제 신설·강화시 검토 및 기존규제의 정비·개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2018년 예산안은 2017년 예산액 17억 600만원 대비 6억 300만원 증액된 23억 900만원이다.

[2018년도 규제개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규제개혁	2,326	1,706	1,706	2,309	603	35.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467	845	845	990	145	17.2
규제개혁 정보화	532	521	521	980	459	88.1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나. 분석의견

첫째, 규제개혁위원회 홍보 수행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은 2017년 예산 대비 1억 4,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1억원이 ‘법정부 규제개혁 성과 홍보’를 위한 비용 증액분이다. 국무조정실은 그간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sup>2)</sup> 비용 증액분을 통해 SNS 채널을 운영하여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규제개혁 내용에 대하여 홍보하고 국민체감도를 높일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존의 홍보 수단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홍보 수행방식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7033

2)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14년 KDI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하여 홍보부족(33.3%), 현장소통 및 피드백 미흡(26.3%)이 지적되었으며, 2015년 조사 결과 현장소통 및 피드백 미흡(27.3%),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21.3%)가 지적되어 규제개혁 체감을 위한 소통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정부 규제개혁 성과홍보 비용 편성 내역]

(단위: 천원)

2017년 예산		2018 예산안	
내역	금액	내역	금액
가. 규제개혁 현장기자단 운영 500,000원*4편*10월	20,000	가. 규제개혁 현장기자단 운영 500,000원*4편*10월	20,000
나. 온라인광고 10,000,000원*2종	20,000	나. 규제개혁 광고 10,000,000원*2종	20,000
다. 규제개혁현장사례집 5,000원*10,000부*1회	50,000	다. 규제개혁현장사례집 5,000원*10,000부*1회	50,000
		라. SNS 채널 위탁운영 50,000,000원*2식	100,000
라. 홍보동영상 10,000,000원*1종	10,000	마. 홍보동영상 10,000,000원*1종	10,000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미 규제개혁 현장기자단 운영,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사업<sup>3)</sup>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와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하여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채널운영 및 콘텐츠개발 내역사업에 3억 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해당 사업에서 운영 중인 SNS채널의 관련 이용자는 페이스북(23만여 명), 트위터(4만4천여 명)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채널운영 및 콘텐츠개발 내역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항	금액	산출내역
채널운영 및 콘텐츠개발	382	
홈페이지 유지 보수	129	129백만원*1식
뉴미디어 채널 위탁운영	50	50백만원*1식
정책홍보 영상자료 제작	42	42백만원*1식
국정과제 인포그래픽스 등 제작	23	3백만원*7회
콘텐츠 제작요원 인건비	58	29백만원*2명
촬영장비 수리비 등	11	장비수리비6, 웹하드비용3, 설문조사 비용2
콘텐츠 제작 촬영여비	10	2명*2일*32회
콘텐츠 제작 장비 및 홈페이지 노후 서버 장비 구매	59	1백만원*1식(콘텐츠제작 장비), 40백만원*1식(HW), 18백만원*1식(SW)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 코드: 일반회계 7037-301

이처럼 기존에도 온라인 홍보 수단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낮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SNS 채널을 통한 홍보가 효율적인 방안인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국무조정실의 SNS와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에 특화된 콘텐츠 제작과 홍보방식을 강구하여 차별화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법령과 지방조례 간 규제조문 연계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규제개혁 정보화 사업에서는 규제정보화시스템 고도화 개발 비용 4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이번 규제정보화시스템 고도화는 입안정보 등록과 규제심사 신청 시 중복입력을 최소화하도록 법제처와 정보를 연계하고, 규제법령과 지방조례 간 규제조문을 연계하여 5단 비교(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조례)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현재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서는 규제 현황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4단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조례와는 연계가 되고 있지 않아 조례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각 부처에서 법령상 규제를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개정을 신속히 하지 않아 규제개혁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도 있다.<sup>4)</sup>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규제정보화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면서 규제법령과 지방조례 간 연계가 단순 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실태 점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반영 등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감사원, “규제 정비 이후 조례 미개정으로 규제정비 효과 미흡”, 2016.12.09.

## 가. 현황

한국해양수산개발원<sup>1)</sup> 사업은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산업 등의 분야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해양 분야 각종 행사 및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경비, 일반사업비 등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을 2017년 예산 대비 17억 7,400만원 증액된 18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8,192	17,128	17,128	18,902	1,774	10.4
기본사업비	9,703	9,211	9,211	10,610	1,399	15.2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동 사업 2018년도 예산안 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인건비, 경상경비, 기관고유사업비가 편성된 기본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처우개선, 신규 채용 인건비 증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사유로 2017년 대비 12억 8,700만원이 증액된 75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운영비는 2017년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18억 2,200만원, 기관고유사업비는 2017년 대비 9,400만원이 증액된 12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총 106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51-301

[2018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사업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예산 (A)	2018 예산안 (B)	(B-A)	증감 사유
□ 기본사업비	9,211	10,610	1,399	-
■ 인건비	6,256	7,543	1,287	○ 처우개선 2.6% ○ 신규 6인관련 6개월(1억 5,600만원) ○ 2017년 비정규직 연구원 5인 정규직 전환 반영(2억 6,000만원) 등
■ 경상운영비	1,804	1,822	18	○ 비정규직 전환관련 처우개선분
■ 기관고유사업비	1,151	1,245	94	○ 일반사업 이관 1건 9,000만원 등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 분석의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상운영비 집행에 있어 연례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연도 말에 경상운영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불요불급한 기념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4~2016년도 동안 일부 경상경비를 해외업무연수자 영어교육 비용이나, 연도 말에 다음연도 필요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하는 등 경상경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2014년 12월 24일에 기념품(보온병) 구입에 885만원, 2015년 12월 3일 기념품 구입에 840만원을 집행하는 등 연례적으로 연도 말 다음연도에 사용할 기념품을 출연금을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경상운영비의 집행잔액을 연도말에 다음연도에 사용할 기념품 구입에 지출한 것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사용하고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산집행지침<sup>2)</sup>, 기

2)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11

나. 경상적 경비 절감노력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타공공기관에 준용할 수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sup>3)</sup>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된다.

[부적절한 경상운영비 집행 현황(예시)]

(단위: 천원)

연도	세부내용	집행금액	집행일자
2014	기념품 구입비 지급(보온병)	8,850	2014. 12. 24
2015	기념품 구입비 지급(보온병등)	8,400	2015. 12. 3
	쇼핑백 제작 비용 지급	2,761	2015. 12. 17
	KMI 직원 동절복 구입비용 지급	47,025	2015. 12. 31
2016	2016년 연말 직원격려비용 지급	7,800	2016. 12. 29
	2016년 연말 직원격려비용 지급	13,400	2016. 12. 29
	신규 업무용 차량 임차보증금 지급	42,850	2016. 12. 29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연도말에 경상경비를 활용하여 다음연도에 사용할 업무용 차량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국가재정법」 제3조4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2016년 12월 29일에 집행된 신규 업무용 차량 임차보증금은 해당 차량이 주로 2017년에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2016년 예산이 아닌 2017년 예산을 통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일부 경상운영비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위반하여 직원 대상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준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에 따라

3) 「2017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12

□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2016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4)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피복비를 통한 지급이 가능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내부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동절복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향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sup>1)</sup> 사업은 농림경제 및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통한 정책을 수립·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관고유사업비를 정부 출연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 대비 14억 2,400만원이 증액된 164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2018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683	15,002	15,002	16,426	1,424	9.5
중국사무소 운영	270	295	295	282	△13	△4.4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중국사무소 운영 사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의 연구사업비, 사업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관고유사업비의 연구관련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억 8,200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43-301

[2018년도 중국사무소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국사무소 운영	270	295	295	282	△13	△4.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체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동 사업 비목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비목은 2015년 9,100만원, 2016년 1억 700만원, 2017년 9,100만원이, 공공요금은 2017년 기준 900만원, 전문가활용비는 2015년 8,300만원, 2016년 8,600만원, 2017년 7,700만원,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은 2015년 2,800만원, 2016년 1,500만원, 2017년 2,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은 총 2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중국사무소 운영 사업 예산의 비목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사업인건비	47	25	48
공공요금	5	5	9
수용비	4	1	8
여비	14	15	13
연구정보활동비	14	9	14
<b>연구기자재 및 임차료</b>	<b>91</b>	<b>107</b>	<b>91</b>
<b>전문가활용비</b>	<b>83</b>	<b>86</b>	<b>77</b>
회의비	8	7	7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28	15	28
합 계	294	270	29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 나. 분석의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동 사업을 통하여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부족한 중국사무소 운영 관련 임차료, 주재원 파견수당 및 자녀학자금 등을 편성·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동 사업 예산 중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전문가활용비를 활용하여 중국사무소 관련 임차료, 주재원 파견수당 및 자녀학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우선,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는 중국사무소의 임차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2013~2017년 8월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해당 비목을 중국사무소 임차료로 사용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9,100만원, 2014년 8,800만원, 2016년 1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 예산안에도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임차료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	집행액
2013	중국사무소 운영	91	91
2014	중국사무소 운영	88	88
2015	중국사무소 운영	91	91
2016	중국사무소 운영	109	107
2017(8월)	중국사무소 운영	91	80
2018(예정)	중국사무소 운영	92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임차료는 연구기관의 해외사무소인 중국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기관운영 임차료로 연구사업비로 편성되는 연구장비, 시설 임차료와는 성격의 차이가 있어, 연구사업비를 통하여 중국사무소 임차료를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또한, 2015~2017년 6월까지 전문가활용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사무소에 근무하는 주재원의 수당 및 자녀학자금으로 2015년 7,400만원, 2016년 7,800만원, 2017년 6월 기준 4,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사무소 주재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내부 규정인 「중국사무소 운영규칙」 제4조제1항2)에 따라 현지 활동이 가능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직원으로 내부 직원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복리후생 성격의 자녀학자금, 인건비 성격의 수당을 전문가활용비로 편성·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전문가활용비 비목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6월)
중국사무소 주재원 수당 및 자녀학자금	74	78	42
기타	9	8	4
합 계	83	86	4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사업비인 중국사무소 운영 사업에서 사무소 임차료, 중국사무소 주재원 파견수당 및 자녀학자금 등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2) 「중국사무소 운영규칙」

제4조(주재원, 담당직원 및 권한위임) ① 주재원은 중국 농업·농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적극적인 현지 활동이 가능한 직원으로 선발한다.

## 가. 현황

통일연구원<sup>1)</sup> 사업은 통일에 대한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연구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운영비 및 기관고유사업비를 정부 출연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 대비 13억 5,700만원이 증액된 11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통일연구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통일연구원	9,455	9,811	9,811	11,168	1,357	13.8
기본사업비	7,162	7,084	7,084	7,493	409	5.8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중 통일연구원의 인건비, 경상경비, 기관고유사업비가 편성된 기본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처우개선 및 신규 연구 인력 증원 등을 반영하여 2017년 대비 4억 1,300만원이 증액된 56억 6,400만원, 경상운영비는 추가 인력 운용을 위한 경비가 2017년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16년도 기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고유사업비가 2017년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14억 5,700만원이 책정되어, 총 74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38-301

[2018년도 통일연구원 기본사업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예산 (A)	2018 예산안 (B)	(B-A)	증감 사유
□ 기본사업비	7,084	7,493	409	-
■ 인건비	5,251	5,664	413	○ 처우개선 및 신규 연구 인력 증원 등
■ 경상운영비	361	372	11	○ 추가 인력 운용을 위한 경상운영비 증가
■ 기관고유사업비	1,472	1,457	△15	○ 2016년도 기관평가 결과 반영

자료: 통일연구원

나. 분석의견

통일연구원은 연구사업비에서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통일박람회나 직원 연찬회 등 내부 행사 비용을 편성·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2014~2017년(6월) 동안 통일연구원이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부족한 통일박람회나 직원 연찬회 등의 내부 행사에 사용한 비용을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부족한 ‘통일연구원 23주년 개원 기념식 개최’에 6,300만원, ‘2014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로 1,500만원, ‘북한정책연구협의회 사무소 운영 관련 임대료 및 관리비’로 2,900만원 등을 집행하였다.

[연구사업비를 활용한 기념식, 직원 연찬회 등 집행(예시)]

(단위: 백만원)

연도	항목	내용	금액	
			예산	집행
2014	연구사업비	MS-Office Standard 2013 구매	53	53
		2014년도 통일연구원 연찬회 개최	3	3
		2014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15	15
		북한정책연구협의회 사무소 운영 관련 임대료 및 관리비	29	29
		통일연구원 23주년 개원 기념식 개최	63	63
		하반기 정규직 박사급 연구직 공개채용 외부심사비	2	2

연도	항목	내용	금액	
			예산	집행
2015	연구사업비	통일박람회 2015 통일의 나침반, KINU 행사 개최	39	39
		통일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식 개최	90	90
		전직원/연구지원인력 연찬회 개최	29	29
		2015년 하반기 정규직 박사급 연구직 채용	2	2
		연구발표비 및 면접교통비 지급	4	4
2016	연구사업비	2016년 경영효율화를 위한 전 직원 워크숍 개최	15	15
		KINU 연구진 연찬회 개최	1	1
		통일박람회 2016 통일나침반 KINU 행사 개최	7	7
		통일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식 개최	62	62
2017 (6월 기준)	연구사업비	전직원/KINU 연구위원 연찬회 개최	3	3
		통일연구원 개원 26주년 기념식 개최	76	76

자료: 통일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2016년에는 ‘통일박람회 2016 통일의 나침반, KINU 행사 개최’에 700만원, ‘2016년 경영효율화를 위한 전 직원 워크숍 개최’에 1,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에도 ‘통일연구원 개원 26주년 기념식 개최’에 7,600만원을 사용하여 연례적으로 연구사업비를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부족한 기념식, 직원 연찬회 등의 용도로 편성·집행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기념식 개최 사업은 학술대회가 포함되어 일부 통일 관련 연구와 관련성은 있으나, 해당 행사는 주로 통일연구원의 현재까지 업무 결과 발표, 비전선포, 기념사 및 외부 간담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통일연구원의 연구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통일박람회 사업은 국민들에게 통일노력에 대한 이해와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통일부가 주관하는 행사 사업으로, 2016년도 통일박람회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지자체 등 통일 관련 단체가 전시 부스를 설치하여 남북음식을 특별 전시하거나 참가자들이 통일 주제 라디오를 청취하며 걷는 행사인 통일사랑 걷기대회 등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통일연구원은 연구사업비로 통일박람회 부스 설치와 전시 사업을 편성·추진하여 연구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통일부 행사 사업을 연구사업비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도 통일박람회 사업 현황]

구분	세부내용
행사명	통일박람회 2016
목적	다양한 분야의 단체·기관들의 통일노력 모습들을 부스 전시와 부대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주어 통일노력에 대한 이해와 통일공감대를 확산
일정	2016.5.27(금) ~ 29(일), 매일 10:00~18:00
장소	광화문광장(서울시 종로구 소재) - 잔디광장 측면
프로그램	① (통일단체 부스전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언론·학술기관·민간단체 등 14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통일준비 노력을 소개 ② (남북음식문화특별전시) 남북한 음식의 같음과 다름을 이해 ③ (통일사랑 걷기대회) 통일 주제 라디오를 청취하며 걷는 행사 ④ (통일 상상놀이터) 어린이·청소년 대상 통일체험·참여 활동
주최	통일준비위원회, 통일부

자료: 통일부

마지막으로 직원 연찬회, 채용 관련 비용 등은 기관운영을 위한 일상적 경비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고 있어, 통일연구원과 같은 기타공공기관에 준용될 수 있는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경상경비<sup>2)</sup>의 정의에 따라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등의 경상경비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통일연구원에 편성된 연구사업비는 통일 관련된 연구와 조사·분석 등에 사용될 필요가 있어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관이나 부처 행사비나 경상운영비 성격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통일연구원은 연구사업비를 활용하여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부족한 박람회나 직원 연찬회 등으로 연례적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2)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12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 가. 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sup>1)</sup> 사업은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경제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세계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연구분석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를 정부 출연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 대비 17억 3,000만원이 증액된 298억 2,200만원을 정부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다.

[2018년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8,654	28,092	28,092	29,822	1,730	6.2
기본사업비	16,550	16,395	16,395	16,874	479	2.9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인건비, 경상경비, 기관고유사업비가 편성된 기본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 및 무기계약직 전환인력(7인) 인건비 등의 증액으로 2017년 대비 5억 500만원이 증액된 97억 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운영비는 청사임차료 및 관리비 등의 증액으로 18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관고유사업비는 2017년 대비 무기계약직 전환인력(2인) 인건비 등의 감액으로 52억 6,900만원이 편성되어, 세부사업 기준으로 총 168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34-301

[2018년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예산 (A)	2018 예산안 (B)	(B-A)	증감 사유
□ 기본사업비	16,395	16,874	479	-
■ 인건비	9,201	9,706	505	○ 2018년도 정규직 인건비 및 무기계약직 전환인력(7인) 인건비 증액 등
■ 경상운영비	1,846	1,899	53	○ 2018년도 청사임차료 및 관리비 증액 5,000만원 등
■ 기관고유사업비	5,348	5,269	△79	○ 기관평가 결과 반영 증액 1,100만원 ○ 무기계약직 전환인력(2인) 인건비 감액 △9,000만원 등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동 사업과 외교부 등에서 수탁받은 용역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정책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기본연구 사업과 수탁용역 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북한, 통일 관련 경제 연구사업은 통일연구원의 연구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4~2017년 동안 기본연구 사업과 수탁용역 사업을 통하여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북한, 통일 관련 경제 연구사업을 살펴보면 2014년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2015년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7년에는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 및 시장화의 연관성 분석’ 등의 연구과제가 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동일하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도 기관고유 연구사업비와 수탁 연구사업비를 통하여 북한, 통일 관련된 경제 분야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북한, 통일 관련 경제 연구사업 현황]

연도	연구과제명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공단 국제경쟁력 제고방안</li> <li>○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납부대상 및 납부기준 연구</li> <li>○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li> <li>○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li> </ul>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외화수급 쟁점과 추정: 1991-2014년</li> <li>○ 북한과 GTI 경제협력 강화방안</li> <li>○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li> <li>○ 북·중 분업체제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li> <li>○ (수)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li> <li>○ 통일 후 북한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li> <li>○ 통일시대 기반조성을 위한 통일 경제 분야 한·독 국제공동연구</li> <li>○ 통일이후 통합분야: 경제</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관계, 북한 이슈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한 공동연구</li> <li>○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li> <li>○ 북한 비핵화 진전 및 변화 유도를 위한 경제 레버리지 활용</li> <li>○ 북한 관세 통계 구축과 통일 후 운영 방안</li> <li>○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외화수급의 추정: 2015-2016</li> <li>○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석탄·철광석)을 중심으로</li> <li>○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 및 시장화의 연관성 분석</li> </ul>
2018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li> </ul>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2014~2017년도 통일연구원이 추진한 북한, 통일 관련된 경제 분야 연구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북한경제 비공식경제 성장요인 연구’, 2015년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2016년 ‘북한에서 사적 경제활동이 공적 경제부분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7년은 ‘통일한국의 경제정책’ 등의 연구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통일연구원이 북한, 통일 관련 경제 분야의 연구사업을 중첩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연구원의 북한, 통일 관련 경제 연구사업 현황]

연도	연구과제명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경제 비공식경제 성장요인 연구</li> <li>○ 북중 접경지역을 활용한 북한 경제변화 촉진방안 연구</li> <li>○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li> <li>○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li> <li>○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li> </ul>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li> <li>○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서 사적 경제활동이 공적 경제부분에 미치는 영향 분석</li> <li>○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li> <li>○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한국의 경제정책</li> <li>○ 북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심층조사</li> </ul>
2018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당·군·산복합체와 경제의 군사화 메커니즘</li> </ul>

자료: 통일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통일연구원이 추진하는 세부적인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북한이나 통일 관련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양 기관 간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양 기관 간에 동일한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연구사업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동일·유사한 주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나타내어 정부의 신뢰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기관이 추진할 연구사업 분야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고 통일 관련 사업은 통일연구원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은 북한, 통일과 관련 되는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사업을 주관으로 추진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분명히 하고, 과제 연구분야 간 유사·중복 방지를 위한 협의 과정을 도입하여 2018년도 정부 연구사업비(수탁사업비 포함) 집행에 있어서 연구사업 분야의 기관간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국제 기술혁신 협력<sup>1)</sup> 사업은 대개도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의 파악, 한국 과학기술 발전경험의 모듈화, 그리고 ODA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 ODA 사업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출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3억원이 증액된 15억 7,000만원이 편성하였다.

[2018년도 국제 기술혁신 협력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제 기술혁신 협력	1,468	1,270	1,270	1,570	300	23.6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컨설팅 종류의 사업은 에티오피아 5억 7,000만원, 탄자니아 1억 5,000만원, 튀니지 1억 5,000만원, 캄보디아 1억 5,000만원, 우간다 2억원, 인도네시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연수사업으로 스리랑카 1억원, 기타 기술협력 사업으로 아제르바이잔 1억원을 합한 15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 국제 기술혁신 협력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국가	사업유형	총사업기간	구분	2018년 예산안
에티오피아	개발컨설팅	2014-2018	양자무상	570
탄자니아	개발컨설팅	2018-2019	양자무상	150
튀니지	개발컨설팅	2018-2019	양자무상	150
캄보디아	개발컨설팅	2018-2019	양자무상	150
우간다	개발컨설팅	2018-2019	양자무상	200
인도네시아	개발컨설팅	2018-2019	양자무상	150
스리랑카	연수사업	2018	양자무상	100
아제르바이잔	기타기술협력	2018	양자무상	100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32-303

## 나. 분석의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18년 예산으로 추진할 지원대상 국가에서 ODA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할 예정인 타 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2018년 신규로 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개발컨설팅 형태의 ODA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은 ‘에티오피아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2차 사업’을 2016~2020년 동안 추진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에티오피아 하라리주 관개시설 구축사업’을 2016~2020년 동안 추진할 예정이다.

[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2018년 추진 예정인 ODA 사업(예시)]

국가	부처	사업명	사업기간
에티오피아	농촌진흥청	에티오피아 해외농업기술개발 (KOPIA) 2차 사업	2016~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	2018~2020
	외교부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직업훈련 학교 건립사업	2013~2018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라디오방송을 통한 초등교육역량강화사업	2013~2019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도도타군 관개 및 농촌개발	2013~2018
	농림축산식품부	에티오피아 하라리주 관개시설 구축사업	2016~2020
		에티오피아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전수사업	2017~2019

자료: 외교부,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7. 6. 30, 각 부처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18년 주로 개발컨설팅 형태의 ODA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등은 농업 기술을 직접 수원국에 전수하거나 관개 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형의 ODA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추진하는 개발컨설팅(Development Consulting) 형태의 ODA 사업은 개도국 등의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원조사업의 한 형태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경제·사회·과학기술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제도 자문 및 기술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의미한다.

ODA 수원국에 대한 개발컨설팅이 완료된 후 해당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거나 우리나라 후속 프로젝트형 ODA 사업, 민간투자의 추진으로 연계되는 경우에 개발컨설팅형 ODA 사업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개발컨설팅 ODA 사업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수원국에 프로젝트형 ODA 사업을 추진하는 농촌진흥청(KOPIA), 외교부(KOICA),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연계·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형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개발컨설팅 ODA를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정보, ODA 사업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부처의 의견이 정책자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수원국에 대한 개발컨설팅형 ODA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선정 및 연구·현지조사·집필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의 ODA 담당자의 참여하도록 하거나, ODA 사업을 수행하는 타 부처에서 해당 수원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 국가·지역별 ODA 사업규모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가. 현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sup>1)</sup> 사업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도모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관고유 연구사업비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 대비 19억 800만원이 증액된 20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7,176	18,405	18,405	20,313	1,908	10.4
기본사업비	13,386	14,767	14,767	15,167	400	2.7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017년 대비 인건비 인상을 등을 반영하여 3억 1,400만원이 증액된 104억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운영비는 2017년 대비 청사임차료 및 관리비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26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관고유사업비는 2017년 대비 7,900만원이 증액된 21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총 151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54-301

[2018년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예산 (A)	2018 예산안 (B)	(B-A)	증감 사유
□ 기본사업비	14,767	15,167	400	-
▪ 인건비	10,093	10,407	314	○ 2017년 신규인력 6개월분 반영 및 인건비 인상률
▪ 경상운영비	2,619	2,626	7	○ 청사임차료 및 관리비 물가인상률 반영
▪ 기관고유사업비	2,055	2,134	79	-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나. 분석의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연구사업비를 편성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직원 연찬회, 워크숍 등의 경비로 사용하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연례적으로 해당 사업의 연구사업비를 활용하여 기관 연찬회, 워크숍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 춘계연찬회에 1,100만원, 2016년 춘계연찬회에 1,8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15~2017년(6월)까지 연례적으로 연구사업비를 활용하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찬회, 워크숍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연구사업비를 활용한 기관 연찬회, 워크숍 비용 집행 예시]

(단위: 백만원)

연도	집행내역	지출금액
2015	춘계연찬회 비용	11
	글로벌협력실 워크숍 비용	1
	미래환경연구본부 워크숍 비용	1
	연구기획실 워크숍 비용	3
	환경평가본부 연찬회 비용	8

연도	집행내역	지출금액
2016	준계연찬회 비용	18
	국토환경정보센터 워크숍 비용	2
	기획경영본부 워크숍 비용	3
	기후융합연구실 워크숍 비용	4
	환경평가본부 연찬회 비용	10
2017 (6월)	미래환경연구본부 연찬회 비용	3
	글로벌협력실 워크숍 비용	1.8
	성과관리실 워크숍 비용	1
	정보화지원팀 워크숍 비용	2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구사업비를 통해 연구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관운영에 관련된 연찬회, 워크숍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연구사업비를 연구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용도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한국교통연구원 사업<sup>1)</sup>은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교통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인건비, 경상경비, 기관고유사업비를 정부 출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 예산 대비 3억 5,400만원이 증액된 15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한국교통연구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교통연구원	15,323	15,386	15,386	15,740	354	2.3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한국교통연구원은 동 사업의 연구사업비를 활용하여 매년 직원 대상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예산안은 2017년과 동일한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한국교통연구원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예산(예산안)	20	20	20	20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43-301

## 나. 분석의견

한국교통연구원은 연구사업비로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고 교육훈련비 성격의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직원 대상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비용을 편성·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연구사업비로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한국교통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국내외 단기 연수나 공무출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2014~2016년 동안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펴 보면, 2014년 ‘국외연수 여비(정○○)(100만원)’, ‘교육훈련비(김○)(250만원)’ 등으로, 2016년은 ‘직원 해외연수 교육훈련비(황○○)(600만원)’ 등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업의 집행내역(예시)]

(단위: 백만원)

연도	내부비목	지출내역(예시)	집행액
2014	연구정보 활동비	국외연수 여비(정○○)	1
		교육훈련비(김○)	2.5
		교육훈련비(정○○)	1.1
2015	연구정보 활동비	교육훈련비(정○○)	0.6
		기념품 제작	2.3
2016	연구정보 활동비	교육훈련비(황○○)	6.0
		교육훈련비(김○○ 외)	1.3
		교육훈련비(임○○)	1.2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한국교통연구원은 연구정보활동비를 활용하여 직원 대상 교육훈련비를 집행하고 필요한 교통비는 여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연도별 동 사업의 집행액 중 연구정보활동비와 여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14년은 71.1%, 2015년은 32.4%, 2016년은 78.2%로 동 사업은 자료정리원(비정규직) 인건비인 사업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육훈련비와 그에 필요한 여비로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업의 내부 비목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사업 인건비	수용비	여비 (A)	연구정보 활동비 (B)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합계 (C)	(A+B)/(C)
2014	4,820	1,422	4,710	11,668	400	0	23,019	71.1
2015	7,244	963	0	6,465	300	4,982	19,954	32.4
2016	3,960	100	0	14,599	0	0	18,659	78.2
2017 (6월)	6,514	0	869	0	0	218	7,601	11.4
합계	22,538	2,485	5,579	32,731	700	5,199	69,233	55.3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동 사업은 연구사업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직원 대상 교육훈련 사업으로 연구사업비인 기관고유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경상경비<sup>2)</sup>의 정의에 따르면, 교육훈련비를 경상경비로 규정하고 있어, 직원 대상 국내외 연수비와 이에 필요한 여비는 경상경비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도 동 사업을 제외한 직원 대상 교육훈련비는 경상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교통연구원은 ‘2016년 국내외단기교육훈련프로그램 교육비’, ‘2016년 단기연수 교육’ 등을 경상운영비를 통하여 집행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 경상운영비를 통한 직원 대상 교육훈련비 집행(예시)]

(단위: 백만원)

연도	세부내역	집행액
2016	2016년 국내외단기교육훈련프로그램 교육비(조○○)	5.4
	교육훈련비(정○○)	4.5
	2016년 단기연수 교육	2.3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12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행정직의 교육훈련 예산은 경상운영비로 편성·집행하지만, 연구직의 교육훈련 예산은 개별 연구사업비 또는 해당 사업을 통하여 편성·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개별 연구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연구사업비 편성이 가능한 해외연수의 경우 개별 연구사업비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일반적인 직무훈련에 해당하는 연구직 해외 연수사업은 연구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따라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연구사업비와 관련성이 떨어지고 경상운영비에 해당하는 내부 직원 대상 국내외 교육훈련 지원 사업인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업을 연구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세계은행과의 공동 연구사업<sup>1)</sup>은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발전경험을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과 공유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공동연구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10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세계은행과의 공동 연구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세계은행과의 공동 연구사업	1,158	1,047	1,047	1,046	△1	0.0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동 사업 2018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회의장 및 장비 임차료 3,500만원, 여비 1억 3,600만원, 세계은행과의 공동사업 신탁기금 8억원 등 총 10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세계은행과의 공동 연구사업 예산안의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인건비	공공요금	수용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여비
내용	비정규직 인건비	우편요금 및 전화요금 등	인쇄비 및 사무용품비 등	회의장 및 장비 임차료 등	워크숍 및 포럼 초청 여비 등
금액	10	2	8	35	136
구분	연구정보 활동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내용	특근매식비	자문토론비 등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비	세계은행과의 공동사업 신탁기금	
금액	0.2	25.8	29	800	

자료: KDI국제정책대학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39-303

## 나. 분석의견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세계은행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8억원의 부담금을 세계은행에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예산은 출연금이 아닌 국제부담금(340-02)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sup>2)</sup>에 따르면, 국제부담금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외국정부, 외국기관 등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부담금, 분담금, 회비 및 부대경비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부담금의 구체적인 예로 UN 산하기구 등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부담금, 조약, 협정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사업 및 운영비, 국제기구 파견에 따른 파견경비 등 기타 국제부담금을 명시하고 있다.

동 내역사업은 KDI국제정책대학원이 세계은행과의 공동연구에 필요한 플랫폼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지침에 따른 국제부담금에서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목을 출연금에서 국제부담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sup>3)</sup>에 따라 국제부담금은

2)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p. 216

-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외국정부, 외국기관 등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부담금, 분담금, 회비 및 부대경비
  - UN 산하기구 등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부담금**
  - 조약, 협정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사업 및 운영비
  - 국제기구 파견에 따른 파견경비 등 기타 국제부담금

3)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pp.216 ~ 217

- 국제부담금은 이를 명시한 협정서가 있거나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또는 장·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만 반영
  - 조약·법령·협정 등에 분담율·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동 금액을 원칙적으로 계상하되, 포괄적인 규정에 의한 국제부담금은 이를 최소한으로 조정하여 반영
- 국제기구 의무분담금은 협정상 권한상실 등 규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연체되지 않도록 편성
  - 여타 회원국의 분담금 납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소요를 조정·반영
- 자발적 분담금은 협력사업의 타당성, 분담금 납부를 통한 성과 등을 분석·검토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반영
  - 사업연장에 따라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사업 연장의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여 결정
- 국제기구 활동실적이 부진하거나 우리나라 국익증진에 대한 기여가 미흡한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납부를 중단하거나, 해당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분담율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
  - 분담금 납부 현황을 전면 재검토하여 연례적·답습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담금 편성은 지양
  -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을 편성한 부·처·청은 예산 편성 후 예산편성 내역을 외교부에 통보

이를 명시한 협정서가 있거나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또는 장·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만 반영되며, 자발적 부담금은 협력사업의 타당성, 부담금 납부를 통한 성과 등을 분석·검토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반영되고 타당성 조사를 엄격하게 거치는 등 각종 예산 편성 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동 내역사업은 2018년 예산안까지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예산내역의 외교부 통보, 사업연장,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적절한 수준의 국제부담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 
- 국제기구 고용 휴직 관련 국제부담금 예산은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편성
    - 고용휴직 대상 직위는 업무의 중복성, 국익기여도, 협력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
  -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와 재정수반 협정, MOU 등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재정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추진

### 가. 현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업<sup>1)</sup>은 국내·외 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종합적·체계적·입체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인건비, 경상경비, 기관고유사업비 등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을 2017년 예산 대비 6억 300만원이 증액된 10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984	10,270	10,270	10,873	603	5.9
연구기반 및 성과관리 사업(연구사업비)	82	80	80	80	0	0.0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동 사업의 연구사업비에 편성된 연구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연구기반 및 성과관리사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관 평가, 워크숍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예산과 동일한 8,000만원이 편성되었다.

### 나. 분석의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동 내역사업을 활용하여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부 직원 대상 워크숍, 간담회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53-3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4~2017년 6월까지 동 내역사업의 비목별 집행현황을 살펴 보면, 공공요금, 사업인건비, 수용비 등으로 2014년 6,500만원, 2015년 5,000만원, 2016년 8,200만원, 2017년 6월 기준으로 5,600만원을 집행하였다.

[연구기반 및 성과관리사업의 비목별 집행현황]

(단위: 천원)

비목	2014	2015	2016	2017 (6월)
공공요금	241	169	228	9
사업인건비	0	0	30,407	18,095
수용비	10,357	14,144	13,040	13,162
여비	4,248	4,927	6,356	2,459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8,865	5,338	7,022	2,523
연구정보활동비	1,111	1,093	0	312
전문가활용비	0	0	1,380	2,050
회의비	40,467	24,520	23,372	17,123
합 계	65,289	50,191	81,805	55,731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동 내역사업의 수용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비, 여비를 활용하여 연례적으로 내부 행사인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으며 춘계, 추계 워크숍 등의 비용으로 2014년 1,589만원, 2015년 709만원, 2016년도 1,732만원을 소요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직원 워크숍은 2016년 춘계워크숍은 “함께라서 좋은데 이”라는 주제로 임직원간 공감·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원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워크숍으로 방문한 지역과 문화(백제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하는 취지<sup>2)</sup>로 추진되었다.

또한, 2016년 추계워크숍의 경우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임직원이 함께/ 노사가 함께/ 청렴과 함께/ 역사와 함께 동행하는 워크숍을 통하여 청렴하고 소통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모색과 역사탐방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sup>3)</sup>되어, 주로 임직원간의 화합 도모의 성격이 강한 기관운영과 관련된 연례적 행사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c.re.kr)의 KIC소식, ‘2016년도 춘계워크숍’, 2016. 3. 21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c.re.kr)의 KIC소식, ‘2016년도 추계워크숍 개최’, 2016. 11. 8

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관운영 관련 성격이 강한 직원 워크숍 관련 비용을 연구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연구기반 및 성과관리사업을 활용한 직원 내부 워크숍 관련 비용 집행]

(단위: 천원)

연도	지출내역	집행액
2014	춘계워크숍, 공감소통워크숍 등 관련 비용	15,889
2015	추계워크숍 관련 비용	7,089
2016	춘계 및 추계워크숍 관련 비용	17,322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동 내역사업을 통하여 직원 간담회 비용도 집행하고 있으며, 2014년 직종별, 연구부서별 등 간담회 관련 비용으로 1,000만원, 2015년 200만원, 2016년 13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다.

[연구기반 및 성과관리사업을 활용한 직원간담회 추진 비용]

(단위: 천원)

연도	세부내역	집행액
2014	직종별, 연구부서별 등 간담회 관련 비용	9,817
2015	연구부서별 등 간담회 관련 비용	1,868
2016	연구부서별 등 간담회 관련 비용	1,348
2017 (6월)	연구부서별 등 간담회 관련 비용	1,263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따라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연구기반 및 성과관리사업 예산을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직원 워크숍, 간담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 1

## 현황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8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3.1%) 증가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67	816	816	841	25	3.1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769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500만원(4.5%) 증가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7,173	73,685	73,685	76,990	3,305	4.5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사업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사업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크게 증액되었고,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이 신규반영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1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2,066	2,066	3,536	1,470	71.2
	합 계	2,066	2,066	3,536	1,470	71.2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권익행정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정책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4억 1,500만원 신규 편성 등 2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② 국제교류및민간협력 사업에서 아시아 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컨퍼런스 개최 비용 1억 7,000만원,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 및 컨퍼런스 개최 비용 2억 1,000만원 등 3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③ 부패신고자보호 보상 사업에서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13억 7,100만원 증액,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1억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④ 모의행정심판경연대회 7,300만원 등 행정심판운영 사업에서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사업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 보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신고자가 보호·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의행정심판경연 사업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개최하는 대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실무 수습 기회에 대한 정보제공 및 월급여액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공익신고제도 운영 사업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공익신고 구조금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제도의 활성화가 저조하므로 구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II

## 개별 사업 분석

### 1

### 청탁금지법 관련 보상·보호조치 안내 강화 필요

#### 가. 현황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사업<sup>1)</sup>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억 7,000만원이 증액된 35억 3,600만원이다. 2018년도 예산안부터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여, 보상금 5,500만원, 포상금 5,700만원을 계상하였다.

[2018년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2,352	2,066	2,066	3,536	1,470	71.2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	0	0	0	55	55	순증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0	0	0	57	57	순증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15조<sup>2)</sup>에서는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136-364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개월 간의 신고사건을 분석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의 예산액을 계상하였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포상금 예산 요구 내역]

구분	산출 근거
보상금	법시행 후 6개월간 신고사건 분석결과,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사건은 <u>13건</u> - 13건의 신고로 몰수·추징 예상금액은 약 <u>91백만원</u> 규모이며, - 동 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 예상액은 <u>27.3백만원</u> - 6개월간 신고사건에 대한 분석이므로, 연간 필요예산 규모는 <u>55백만원</u>
포상금	법시행 후 6개월간 신고사건 분석결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사건은 <u>10건</u> - 10건의 신고로 피신고자에게 형벌·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 동 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포상금 예상액은 <u>28.5백만원</u> - 6개월간 신고사건에 대한 분석이므로, 연간 필요예산 규모는 <u>57백만원</u>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나. 분석의견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자가 보호·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3월 제정 이후 연도별 접수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하였음을 고려했을 때<sup>3)</sup>,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건수도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총 23,8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 시행일부터 2017년 7월까지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고접수 총 242건 중 제3자 신고가 201건(83%), 자진신고가 41건(17%)로 나타나 제3자의 신고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가 주로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보호 절차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3)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는 2011년 292건, 2012년 1,153건, 2013년 2,887건으로 시행 초기에 급증하였다.

4)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토론회 자료집”, 2017.9.26.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동사업의 보호보상제도 안내 및 교육 관련 비용은 감액 편성되었다. 향후 신고가 급증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보상금 지급 뿐 아니라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에 있어서도 안내 및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청탁금지법」 업무담당자 및 청탁방지담당관이 보호보상제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호보상제도 관련 안내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 예산		2018 예산안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보호보상제도 안내 및 교육	19	보호보상제도 안내 및 교육	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담당자 교육, 안내 및 조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행정심판 운영 사업<sup>1)</sup>은 행정심판 제도의 총괄·운영 기관으로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9억 2,500만원 대비 7,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2018년도 행정심판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행정심판 운영	935	925	925	1,000	75	8.1
모의행정심판경연	0	0	0	73	73	순증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동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인 모의행정심판경연 사업은 2016년, 2017년에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불용재원을 활용하여 집행되었으나<sup>2)</sup>, 2016회계연도 결산 당시 별도 편성을 통해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사항<sup>3)</sup>에 따라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다. 동 대회는 예비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여 행정심판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개최되고 있다. 2018년 대회 관련 예산안으로는 총 7,300만원이 계상되었다.

###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은 2016년, 2017년 집행 규모보다 크게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어 예산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137-370

2) 2016년 제1회 모의행정심판경연대회에서는 18개 법학전문대학원의 26개팀, 189명이 참가하였으며, 2017년 제2회 대회에는 1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20개팀, 128명이 참가하였다.

3) 정무위원회, 「2016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17.8, p.607.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7,300만원으로, 2016년, 2017년의 대회 관련 예산 집행 내역과 비교하여 일용임금, 임차료 및 포상금 등에서 크게 증액되었다.

[모의행정심판경연 관련 집행액 및 예산안 비교]

(단위: 백만원)

비목	2016 집행액	2017 집행액	2018 예산안
일용임금(110-04)	0	0	45
일반수용비(210-01)	12	7	8
임차료(210-07)	0	0	3
국내여비(220-01)	2	1	2
사업추진비(240-01)	3	2	4
포상금(310-03)	0	0	11
합 계	17	9	7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임차료의 경우, 2018년도 예산안에는 2곳에 대한 임차료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대회 2차 본선을 세종청사의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개최하여 별도의 임차료가 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상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차, 2차 대회는 예산이 미편성되어 부득이하게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였으나, 3차 대회부터는 학생들의 참가편의를 고려하여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임차료를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서울에서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들의 접근이 편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하나, 행정심판 모의경연대회의 목적 상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이 실제 열리는 심판정에서 개최하는 것도 참가자들에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회 개최 장소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상금의 경우는 대회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으로 대상 1팀 500만원, 최우수상 1팀 300만원, 우수상 1팀 200만원, 지도교수상 1팀 100만원으로 총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전에는 대한변협, 법전원협의회, 법률구조공단, 법률신문사 등 유관기관의 후원을 통해 지급하던 내역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격 개최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는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년의 경우,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210만원(3팀 각 70만원)으로 총 310만원 지급하던 상금이 평균 단가 275만원으로 크게 증액된 바, 대회 규모가 크지 않아 경쟁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상금을 3배 이상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실무수습 기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여액 현실화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회 성적 우수자에게 6개월간의 행정심판 안건검토 인력으로의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용임금을 편성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건검토 인력 실무수습 기회에 대하여 별도의 공모를 추진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선발하되, 모의행정심판경연대회 우수자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변호사법」 제21조의24)에 따른 실무연수가 필요한 대상자가 공모에 응하는 경우 우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의 필수적인 단계인 실무수습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행정심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의행정심판경연대회 참가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로 대회 참가 이후 실제 연수 참여까지 평균 1~2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를 확실 히 하여 공모 시에 대회 관련자들이 알지 못하여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책정된 안건검토인력의 월급은 월 150만원 수준이나, 2018년 최저임금액 7,530원을 적용했을 때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은 1,573,770원이다. 국가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안건검토 수습인력에 대하여 세종에서 근무 할 때 부가되는 숙박비, 교통비에 대한 고려 없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학생들을 안건검토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월급여액을 현실화시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소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 가. 현황

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sup>1)</sup>은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으로 2017년 예산 18억 1,300만원 대비 2억 3,800만원 증액된 2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익신고제도운영	1,653	1,813	1,813	2,051	238	13.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비밀보장, 신분보호, 책임감면, 보호조치 등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sup>2)</sup>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136-365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제26조의2(포상금)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구조금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을 입었거나,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이사,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비용으로,<sup>3)</sup> 2018년도 예산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다.

## 나. 분석의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구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7년까지의 신청 건수는 12건에 불과하였으며, 실제 지급된 금액도 102만 5,000원에 불과하였다. 2018년에도 현재까지와 비슷한 추이로 이어진다면 계상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 구조금 처리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신청건수	1	1	4	1	2	0	3	12
지급건수	0	1	0	1	0	2	0	4
기각건수	0	0	1	0	0	0	1	2
취하건수	1	0	3	0	0	0	1	5
예산액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65,000
구조금액	0	79	0	206	0	740	0	1,025

주: 2017년 9월 기준으로 신청건수 3건 중 1건은 진행 중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구조금제도의 활용 저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 4월 18일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해당 조항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sup>4)</sup>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여 향후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익신고자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알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의2(보호·지원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보훈처



## 1

## 현황

##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2개 기금(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총수입은 2,244억원으로 전년 대비 27억원(1.2%)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76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억원, 보훈기금 2,096억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71억원이다.

[2018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344	7,607	7,607	7,690	83	1.1
- 일반회계	2,279	7,497	7,497	7,580	83	1.1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5	110	110	110	0	0.0
기 금	102,575	214,155	214,155	216,722	2,567	1.2
- 보훈기금	91,326	208,023	208,023	209,591	1,568	0.8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1,249	6,132	6,132	7,131	999	16.3
합 계	104,919	221,762	221,762	224,412	2,650	1.2

주: 총수입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2018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총지출은 5조 4,736억원으로 전년 대비 5,403억원(11.0%)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조 2,538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17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9억원, 보훈기금 1,267억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695억원이다.

[2018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4,621,928	4,802,516	4,803,808	5,277,429	473,621	9.9
- 일반회계	4,596,084	4,777,760	4,779,052	5,253,810	474,758	9.9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4,156	22,968	22,968	21,715	△1,253	△5.5
- 지역발전특별회계	1,688	1,788	1,788	1,904	116	6.5
기 금	124,968	129,529	129,529	196,206	66,677	51.5
- 보훈기금	108,151	123,565	123,565	126,678	3,113	2.5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6,817	5,964	5,964	69,528	63,564	1,065.8
합 계	4,746,896	4,932,045	4,933,337	5,473,635	540,298	11.0

주: 총지출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나. 세입·세출

2018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예산안은 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1.1%)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75억원에서 2018년 76억원으로 1.1% 증가하였으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전년과 같다.

[2018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279	7,497	7,497	7,580	83	1.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5	110	110	110	0	0.0
합 계	2,344	7,607	7,607	7,690	83	1.1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2018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5조 3,321억원으로 전년 대비 5,283억원(11.0%)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4조 7,791억원에서 2018년 5조 3,085억원으로 11.1% 증가하였으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230억원에서 217억원으로 5.5% 감소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18억원에서 19억원으로 6.5% 증가하였다.

[2018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600,131	4,777,760	4,779,052	5,308,496	529,444	11.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4,156	22,968	22,968	21,715	△1,253	△5.5
지역발전특별회계	1,688	1,788	1,788	1,904	116	6.5
합 계	4,625,975	4,802,516	4,803,808	5,332,115	528,307	11.0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다.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2개 기금의 수입계획안은 7,235억원으로 전년 대비 736억 원(11.3%) 증가하였다. 주요 기금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보훈기금은 5,842억원에서 5,989억원으로 2.5% 증가하였고,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656억원에서 1,246억원으로 89.9% 증가하였다.

[2018년도 국가보훈처 기금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보훈기금	207,346	584,222	584,222	598,868	14,646	2.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5,740	65,637	65,637	124,630	58,993	89.9
합 계	233,086	649,859	649,859	723,498	73,639	11.3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2018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2개 기금의 지출계획안은 7,235억원으로 전년 대비 736억 원(11.3%) 증가하였다. 주요 기금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보훈기금은 5,842억원에서 5,989억원으로 2.5% 증가하였고,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656억원에서 1,246억원으로 89.9% 증가하였다.

[2018년도 국가보훈처 기금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보훈기금	207,346	584,222	584,222	598,868	14,646	2.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5,740	65,637	65,637	124,630	58,993	89.9
합 계	233,086	649,859	649,859	723,498	73,639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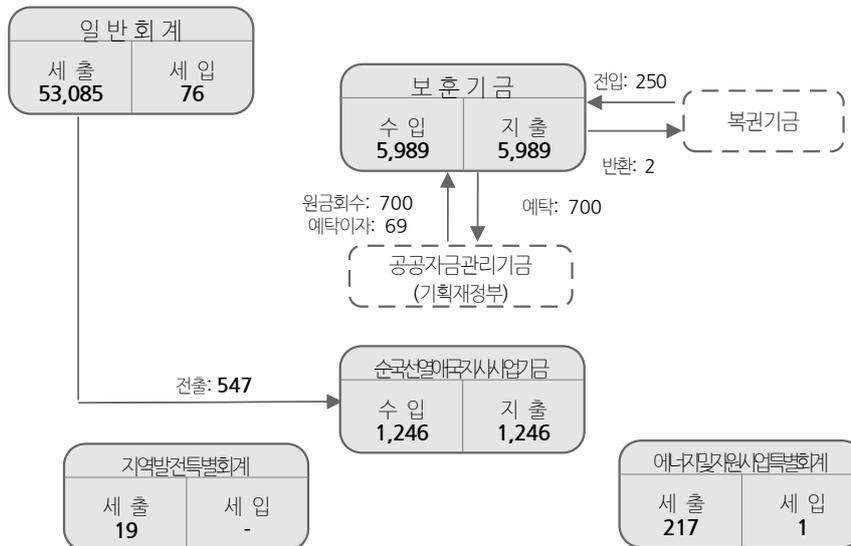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라. 재정구조

2018년도 국가보훈처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547억원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보훈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250억원 전입받고 2억 원을 반환하였으며, 공자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회수 700억원, 예탁이자 수입으로 69억원을 받고, 700억원을 재예탁하였다.

[2018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 661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하는 사업이며,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은 4개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신설 및 증축하는 사업이다. 보훈기금의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사회심리재활상담사를 배치하여 상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가보훈처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 (6개)	보훈단체선양활동등	3,397
	고엽제역학조사	100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1,750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5,000
	청사업차	976
	일반회계에서 순애기금으로 전출	54,686
보훈기금 (1개)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운영	226
합 계		66,135

자료: 국가보훈처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보상금 ② 국가유공자등사망시지원 ③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보상금 및 각종 수당은 단가 인상으로 인해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국가유공자등사망시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근조기와 영구용 태극기 직접 전달,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비지원 비용이 편성되었다. 또한,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사업은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사업규모가 확대되었다.

[국가보훈처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15개)	보상금	2,604,691	2,604,691	2,743,789	139,098	5.3
	생활조정수당	12,491	12,491	16,374	3,883	31.1
	6.25자녀수당	223,748	223,748	235,570	11,822	5.3
	고엽제수당	269,120	269,120	286,015	16,895	6.3
	무공영예수당	60,825	60,825	72,180	11,355	18.7
	참전명예수당	614,712	614,712	769,624	154,912	25.2
	등록관리	2,242	2,242	3,050	808	36.0
	보훈병원진료	344,553	344,553	455,718	111,165	32.3
	위탁병원진료	209,819	209,819	245,180	35,361	16.9
	제대군인의료지원	1,771	1,771	2,365	594	33.5
	취업지원	1,575	1,728	2,481	753	43.6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333	333	580	580	74.2
	국립산청호국원	1,843	1,843	2,538	695	37.7
	국가유공자등사망시지원	297	297	1,947	1,650	555.6
	정보화사업	2,447	2,447	6,477	4,030	164.7
보훈기금 (1개)	보훈요양원 건립	2,074	2,074	10,515	8,411	407.0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 (3개)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4,677	4,677	57,221	52,544	1,123.5
	독립유공자묘소관리	70	70	315	245	350.0
	광복회관 재건축	1,009	1,009	11,798	10,789	1,069.3
합 계		4,347,723	4,347,876	4,835,464	487,921	555.6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국가보훈처

2018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5.0% 인상(2017년 3.5%→2018년 5.0%), ②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생활안정을 위해 참전수당 월 8만원 인상(22만원→30만원)과 진료비 감면을 확대(60%→90%), ③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설, ④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50억원 신규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선순위자 1명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제도를 인지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지원 대상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훈병원 진료 사업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전·공상제대군인 등 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보훈병원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연례적인 진료비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비 소요액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손)자녀생활지원금 사업은 법적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 내 손자녀 가계지원비 사업과 일부 대상이 중복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방침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독립정신을 계승·확산하려는 사업으로, 민간위원에 대한 정액 사례금 지급을 지양하고, 100주년 관련 교육·홍보자료 제작 사업의 다양한 매체 활용 및 전달경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II

## 주요 현안 분석

### 1

###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 지급대상 중복 문제 해결 필요 등

#### 가. 현 황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sup>1)</sup>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공훈에 상응한 예우금 및 제수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계획안은 572억 2,100만원으로, 2017년 예산액 46억 7,700만원 대비 525억 4,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2018년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4,082	4,677	4,677	57,221	52,544	1,123.5
애국지사특별예우금	981	948	948	1,133	185	19.5
(손)자녀생활지원금	0	0	0	52,581	52,581	순증
손자녀가계지원비	910	1,090	1,090	972	△118	△10.8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8년도 예산안에서 애국지사특별예우금 단가를 50% 인상하고, 생계가 어려운 (손)자녀를 위한 생활지원금을 신설하였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3141-401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의 지원단가 변동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5	2009	2016	2017	2018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3등급훈장	1,000	1,000	1,550	1,550	2,325
	4등급훈장	800	800	1,280	1,280	1,920
	5등급훈장	700	700	1,150	1,150	1,725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600	600	1,050	1,050	1,575
가계지원비	1~5등급유족	250	350	350	400	400
	포장, 표창유족	250	350	350	400	400
손자녀 생활지원금	중위소득 50% 이하	-	-	-	-	468
	중위소득 70% 이하	-	-	-	-	335

자료: 국가보훈처

나. 분석의견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손)자녀 생활지원금과 손자녀 가계지원비의 지원 대상이 중복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방침을 마련하고 지원금이 축소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 67,901명 중 손자녀는 55,639명이며 이 중 3.7%인 2,054명만이 법적 보상금을 지원받고 있다.<sup>2)</sup> 따라서 동 사업에서는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손자녀 가계지원비 사업과 손자녀 생활지원금, 두 가지 내역사업을 동시에 편성하였다. 손자녀 가계지원비 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에게 매월 40만원씩의 가계지원비를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반면, 2018년도에 새롭게 편성된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저생계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가계지원비 사업과 생활지원금 사업의 비교]

구분		손자녀 생활지원금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원 대상	법적 보상 대상	X		X
	선순위 유족 여부	X		○
	소득 구분	○		X
지원 금액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46만 8천원	매월 40만원	
	중위소득 70% 이하	매월 33만 5천원		
지원 인원	중위소득 50% 이하	1,428명	225명	
	중위소득 70% 이하	11,085명		
2018 예산안		525억 8,100만원		9억 7,200만원

자료: 국가보훈처

두 사업 모두 지원대상자가 보상금 혜택에서 제외된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가계지원비의 경우 선순위 유족 1인에게만 지급하는 반면,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선순위 유족이 아니더라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자녀 가계지원비로 지원을 받던 대상자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 또는 70% 이하인 경우 생활지원금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 대해 중복 지원을 할지 혹은 둘 중 어떤 지원을 선순위로 처리할지 등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침 마련 과정에서 두 제도 모두 조건이 해당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경우 제도 선택에 따라 지원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두 제도의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지원비와 신규 제도 간의 중복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손)자녀 생활지원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중복 대상자들에 대한 현황을 확보하여 현재 가계지원비를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사업 편성에 따라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규 사업을 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기금 수입재원 발굴 등 기금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일반회계로부터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이하 “순애기금”이라 한다)으로의 전입금<sup>3)</sup>은 546억 8,600만원으로, 신규 내역사업인 손자녀 생활지원금 제도 뿐 아니라 기존 사업인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손자녀 가계지원비 제도에 따른 지출 소요를 반영하여 산출되었다.

손자녀 생활지원금 제도의 예산액이 525억 8,100만원으로, 순애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의 편성이 불가피하다. 순애기금은 대일청구권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기반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토지매각 및 여유자금 운용 등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의 자체수입은 3년 평균 67억원 수준으로 크지 않아, 향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이는 기금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순애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지출 규모	수 입			지 출			여유자금 규모
		자체 수입	정부내부 수입	여유자금 회수	사업비	기금운영비	여유자금 운용	
2014	16,187	5,868	5,100	5,219	5,558	101	10,528	61,707
2015	22,179	5,519	3,685	12,975	5,693	110	16,376	64,067
2016	25,740	8,871	3,685	56,262	16,713	104	8,923	66,412

자료: 국가보훈처

손자녀 생활지원금지원 제도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인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금의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해당 사업을 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고, 기금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애기금의 자체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수입재원 발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해나갈 필요가 있다.

3) 코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91-911

## 가. 현황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 확대 등 서비스 강화 뿐 아니라 의료 및 복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요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보훈병원 건립 사업<sup>1)</sup>은 2015년부터 진행된 인천권역의 취약한 보훈의료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보훈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으로 122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7년 예산 107억 2,800만원 대비 15억 5,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sup>2)</sup>은 전·공상군경 및 전몰·순직군경 유·가족에게 진료와 연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개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17억 5,000만원이며 신규사업이다.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sup>3)</sup>은 가정에서 간호가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위한 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강원권에 보훈요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105억 1,500만원이며 2017년 예산 20억 7,400만원 대비 84억 1,100만원 증액된 규모이다.

[2018년도 보훈의료·복지 기반시설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인천보훈병원 건립	9,606	10,728	10,728	12,286	1,558	14.5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0	0	0	1,750	1,750	순증
보훈요양원 건립	0	2,074	2,074	10,515	8,411	407.0

자료: 국가보훈처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 1) 코드: 일반회계 2156-375
- 2) 코드: 일반회계 2156-382
- 3) 코드: 보훈기금 2161-443

## 나. 분석의견

의료 및 복지 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천보훈병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력 및 시설장비의 준비, 중앙보훈병원 등과의 연계 등의 서비스체계를 사전에 준비하여 준공 이후 해당 지역에 의료서비스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인천보훈병원은 수도권의 보훈의료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4년(2015~2018년) 간의 공사기간동안 총사업비 441억원, 130병상 규모로 건설 중으로,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인천보훈병원 건립 사업 개요]

- 위치 : 인천시 남구 용현동 450-5 외 24필지
- 부지면적 : 28,680㎡
- 건립규모 : 13,849㎡ (의료시설 : 10,979㎡, 주차면적 2,870㎡)
  - 병상규모 : 130병상(지하 1층, 지상 7층 / 내과, 외과 등 15개과)
- 건립주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총사업비 : 44,120백만원(전액 국고지원)
- 사업기간 : 2015년~2018년(4년)

자료: 국가보훈처

그러나 당초 2016년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설계 과정에서 지반의 암반 발생 등 부지 특성으로 인해 예산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실시설계가 계획보다 지연되었고, 2016년 10월 31일에서야 착공했다. 이로 인해 2016년 예산현액 96억 600만원 중 10.4%인 10억 600만원만 집행되었으며, 2017년에도 5,7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2017년 8월말까지 실집행이 전무하다.

또한 2017년 8월 말 공정률은 26.5%에 불과하나 국가보훈처는 골조공사 완료 이후에는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동시에 투입하여 공정률 증가폭을 대폭 상승시켜 2017년 12월말까지 60%의 공정률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목표대로 2018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인천보훈병원 건립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		2017			2018 예산안
	교부액	실집행액	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인천보훈병원 건립	9,606	1,006	10,728	5,700	0	12,286

자료: 국가보훈처

또한, 국가보훈처는 준공 이후 개원까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인력 및 장비 등을 준비하도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천보훈병원은 130병상 규모로 지역거점 병원이 아닌 외래중심, 단기입원 중심 병원 수준으로 설립되어 장기입원 등이 필요한 질병은 중앙보훈병원과의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둘째,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은 사전 연구용역을 통해 재활센터 확충 규모에 대한 재평가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방안 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은 4개 지방보훈병원(광주, 부산, 대구, 대전)의 재활센터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 1억원과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비용 8억 5,200만원,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7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 연구용역을 거쳐 광주, 부산보훈병원을 우선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 개요]

-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 1,750백만원
  - 광주보훈병원 852백만원(공사비 20,036백만원×설계비요율 4.25%)
    - \* 연면적 9,600㎡×2,087,097원(조달청 '15년 공공건축물 단가)
  - 부산보훈병원 798백만원(공사비 18,788백만원×설계비요율 4.25%)
    - \* 연면적 9,002㎡×2,087,097원(조달청 '15년 공공건축물 단가)
- 재활센터 확충 및 운영 방안 등 연구용역비 : 100백만원

자료: 국가보훈처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 개요]

병 원 별	1단계		2단계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사업개요	연면적 9,600㎡ 지상3층 150병상	연면적 9,002㎡ 지하1층, 지상5층 80병상	2개층 증축 연면적 3,500㎡ 40병상	연면적 3,306㎡ 지상2층 부지매입
사업기간	'18~'20년	'18~'20년	'20~'21년	'20~'22년
총사업비	23,787백만원	22,397백만원	9,625백만원	12,319백만원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재활센터 확충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훈병원 재활센터 건립 사업은 개별 건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이나 4개 보훈병원의 총사업비가 681억 2,800만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센터 확충 규모는 사업시행주체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한 장기 수요예측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타당성에 대해 외부 용역 등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2018년도에 지방보훈관서에 심리재활상담사를 배치하여 심리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신규로 시작할 예정인데, 이에 따른 심리재활프로그램 수요 변화도 반영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활센터의 활용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활 형태별, 지역별 수요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

강원권 보훈요양원은 수도권 및 강원권 요양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립이 추진되었으며,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의 공사기간동안 총사업비 366억원으로 200인이 입소 가능한 규모로 건설 중이다.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 개요]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956-1(원주혁신도시 내)
- 부지면적 : 9,784.8㎡
- 건립규모 : 연면적 10,515㎡(장기입소 200인, 주간보호 25인)
- 건립주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총사업비 : 366억원(전액 국고지원)
- 사업기간 : 2017년~2019(3년)

자료: 국가보훈처

그러나 2017년 예산 20억 7,400만원 중 실제 교부된 금액은 5억 4,000만원이며, 실질 행은 토지매입비 10%인 5억 3,8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는 2017년 1월 중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보훈처 선정 부지 외 유관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주시) 추천부지에 대한 재검토로 인해 부지매입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설계 공모가 9월말이 되어서야 진행되어 설계용역은 2018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8개월이 지연되는 일정으로 계획대로 준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향후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보훈요양원 건립 계획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계획	집행 내역	
		'17	'18	'19			
총사업비	36,648	2,074	10,515	24,059			
보 상 비	5,400	540	4,860	-	'17년 : 매입비 10% '18년 : 잔금	'17년 : 매입비 10% 지급	
공 사 비	25,114	-	5,023	20,091	'18. 3 ~ '19. 11(21개월)	'18.11 착공예정	
설계비	공모비	121	121	-	-	'17. 2 ~ 4(3개월)	'17. 9 ~ 11(3개월)
	용역비	1,213	1,213	-	-	'17. 5 ~ 11(7개월)	'17. 12 ~ '18. 7(8개월)
감리비	용역비	2,200	-	440	1,760	공사21개월 + 사후 1개월	
시설 부대비	맞춤수수료	313	-	-	313	공사완료시 정산	
	위탁수수료	585	200	192	193	인건비, 여비, 각종수수료 등	
시설장비설치비	1,702	-	-	-	1,702	침대 등 장비 구입	

자료: 국가보훈처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안내 강화 필요

#### 가. 현황

생활조정수당<sup>1)</sup>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선순위자 1명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38억 8,300만원 증액된 163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생활조정수당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생활조정수당	13,221	12,491	12,491	16,374	3,883	31.1

자료: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은 가족 수에 따라 소득수준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

(단위: 천원)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수당 지급액
1명 이하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0 이하	220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40 이하	190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50 이하	160
2명 ~ 3명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	220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	190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160
4명 이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	270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	240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210

자료: 국가보훈처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133-302

## 나. 분석의견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보건복지부와의 협력 하에 기초수급대상자로 생활조정수당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인원을 확인하고 있다. 2014년에는 기초수급대상자 5,185명 중 64.8%인 3,358명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도 기초수급대상자 5,924명 중 47.3%인 2,805명이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보훈처는 생활조정수당 미지급자에 대해 추가 예산이 확보된 이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확인된 인원에 대하여는 2015년 예산을 확보하여 안내를 하였으나, 2015년 확인된 인원에 대하여는 2016년 예산이 미확보되어 안내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에는 안내 후 증가가 예정되는 인원에 대하여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활조정수당 미지급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8
기초수급대상자	5,185	5,924	5,924	5,940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3,358	2,805	2,805	2,978
안내 후 신청인원	1,421	-	-	-

자료: 국가보훈처

2014년 미지급 인원에 대하여 2015년에 일괄 안내가 이루어진 이후,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한 인원은 42.3%인 1,421명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소득인정액의 증가로 인한 기초수급자 탈락 우려 등으로 신청률이 다소 저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2016년 확인된 미지급 인원에 대하여서도 안내를 강화하여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류 제출 등 절차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청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신청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가. 현황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sup>1)</sup>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그 의미를 전국민에게 확산하려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50억원이며 신규사업이다.

[2018년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0	0	0	5,000	5,000	순증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학술회의, 자료 수집 및 발굴, 교육자료 제작, 대국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2018년 1월부터 기념사업추진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3147-415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사업별 상세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안	사업방식 (사업기간)	사업내용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비	1,345	(’18년~’20년)	▶ 운영비(’18년 12개월분)
3.1운동 관련 지역별 수형기록 발굴수집	258	위탁(수형기록 직접(제작원부) (’18년)	▶ 전국 시·군·구·읍·면 사무소 1,700여개를 전수조사하여 독립유공자 발굴, ’19년 100주년 시 포상 확대
독립운동 e-아카이브 구축	402	위탁 (’18년)	▶ 사이버 전시관 및 콘텐츠 개발 ▶ 2018년 개발완료 후 2019년 국민홍보 등
인류역사에 길이 남을 3.1운동 100주년 국제 학술포럼	400	위탁 (’18~’19년)	▶ 3·1운동의 의의를 재조명 ▶ 2018년 하반기부터 준비, ’19.3 또는 ’19.4 개최
100주년 관련 교육, 홍보 자료 제작 및 보급	195	직접추진 (’18년)	▶ VR콘텐츠 제작, 체험관 운영 ▶ ’18.9월 콘텐츠 제작 후 ’18.10~12월 운영
100주년 기념음악 제작 발표 ‘위대한 유산’	1,000	민간보조 (’18~’19년)	▶ 헌정음악을 제작, 콘서트 개최(TV방영) ▶ ’18.9월~’19.2월까지 섭외, 음원제작, 연습 등 준비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담은 문화콘텐츠 제작	500	민간보조 (’18~’19년)	▶ 독립운동사 다큐멘터리 제작 ▶ ’18.6월~’19.1월까지 자료수집, 생존자 증언 영상제작
천만 릴레이 3.1 만세운동 재연행사 ‘독립의 횃불’	800	위탁 (’18~’19년)	▶ 전국적인 만세운동 재연 ▶ ’18.7~’19.2월까지 지자체협조, 홍보, 거점 행사계획 수립과 참가자 모집 등 준비 ▶ ’19.3~4월까지 행사 추진
애국선열 추모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 ‘과거 100년, 미래 100년’	100	위탁(추모관) 직접(캠페인) (’18년)	▶ ’19년 온라인 추모관 운영,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 전개 ▶ ’18.7~11월 추모관 구축, ’19.1월부터 캠페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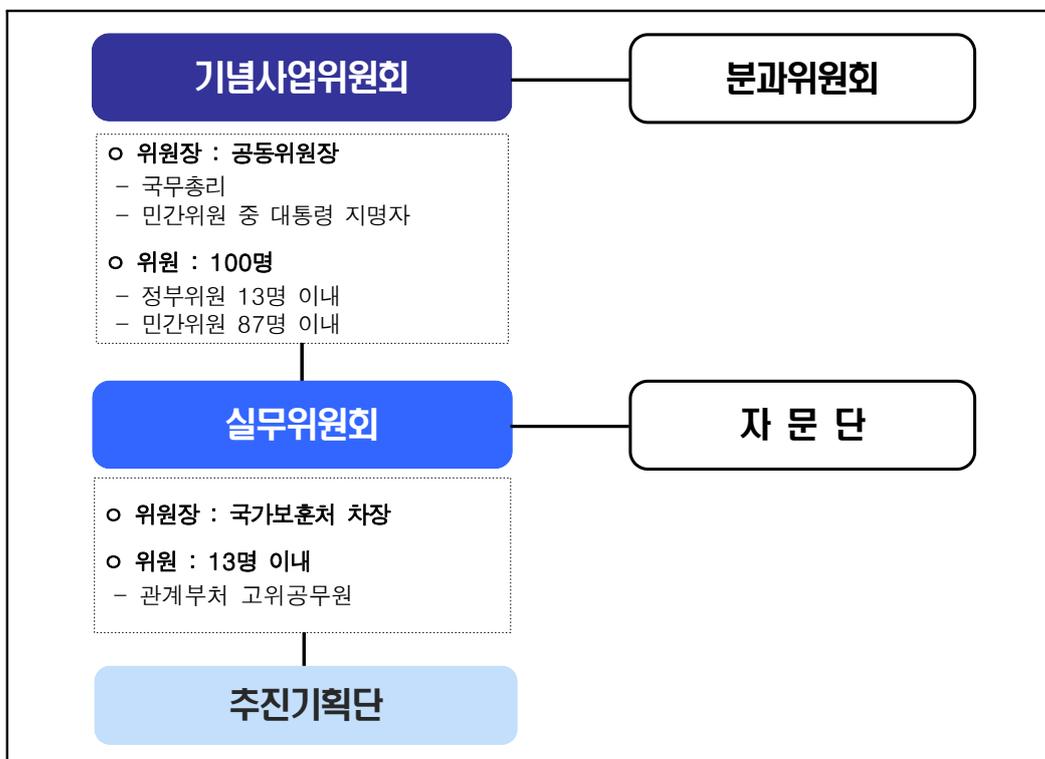
자료: 국가보훈처

#### 나. 분석의견

첫째,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실제 지급인원에 맞춰 조정하고, 민간위원장에 대한 사례금 지급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87명으로 총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계획이다.

[기념사업위원회 구성도(안)]



자료: 국가보훈처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사업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및 위원장 사례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 회의 참석 수당은 4,500만원으로 15만원씩 위원 100명에게 3회 지급하고, 위원장, 분과위원장, 자문위원장에게는 각각 100만원, 50만원, 70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산출하였다.

[회의 수당 및 사례금 산출 내역]

(단위: 천원)

내역	금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회의 참석 수당	45,000	150,000원*100명*3회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44,400	- 위원장 1,000,000원*1명*12월 - 분과위원장 500,000원*4명*12월 - 자문위원장 700,000원*1명*12월

자료: 국가보훈처

회의 수당 및 사례금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100명을 기준으로 산출된 회의 참석 수당은 일부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 국가보훈처는 추진위원회의 민간위원 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연간 전체회의 3회 개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분과회의 개최 등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회의 참석 수당 4,500만원으로 계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2017년 8월 29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수가 확정 단계에 있으므로, 실제 지급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과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분과회의 개최 계획에 따라 해당 예산을 산출하여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② 국가보훈처는 민간위원장, 분과위원장, 자문위원장은 비상근직이긴 하나 주 1회 이상 근무를 계획하고 있어 사례금 정액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위원회 참석비를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sup>

국가보훈처는 해당 사례금은 참석비가 아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으로 이전에 6·25 60주년 추진위원회 및 건국 60주년 추진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단가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법령에 의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 등 국가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해 지급하는 사례금으로 보고, 일반수용비(210-01목)가 아닌 기타보전금(310-04목)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sup>3)</sup> 따라서 해당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의 비상근직인 민간위원장, 분과위원장, 자문위원장에게 정액으로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100주년 관련 교육·홍보자료 제작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전달경로를 확보하여 VR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100주년 관련 교육·홍보자료 제작 사업은 10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적 내용 및 의의를 VR 콘텐츠로 제작하여 VR 체험관을 5개 지방청별 순회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8년 9

2)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7.4, p.176.

3)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7.4, p.178.

월까지 콘텐츠를 제작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5개 권역(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단위로 2주간 순회 체험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효과성을 보아 2019년도에는 전국 기념관 및 호국원 등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VR 체험을 위해 국가보훈처는 VR 기기 2대를 구입하고, 각 체험관에 VR 기기 2대씩을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100주년 관련 교육·홍보 자료 제작 사업의 세부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00주년 관련 교육·홍보 자료 제작	1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R콘텐츠 제작 : 70백만원(35백만원×2종)</li> <li>• VR기기 구입 : 14백만원(Vive기기 2대, 데스크탑 2대 등)</li> <li>• VR체험관 운영 : 107백만원</li> <li>- (체험부스 15백만원+운영요원 3백만원+홍보물 등 3백만원) × 5개 지방청</li> <li>• 여비 3백만원, 업무추진비 1백만원</li> </ul>

자료: 국가보훈처

교육 콘텐츠를 VR로 제작하여 체험 기회를 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책자, 동영상 등의 매체보다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국가보훈처는 시범적으로 5개 지방청에서 순회 체험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나, VR 기기 구입 대수가 2대에 불과하다. VR 기기 한 대당 수용 가능한 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순회체험관을 통해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해 전국에 VR기기 또는 고성능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별 체험관, 박물관, 학교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달경로를 확보하고 VR 영상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VR 콘텐츠 제작 이후 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경로를 확보하고,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가. 현황

보훈병원진료 사업<sup>1)</sup>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전·공상제대군인 등 보훈관련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자<sup>2)</sup>에게 보훈병원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4,557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1억 6,500만원 증액된 규모이다.

[2018년도 보훈병원 진료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보훈병원진료	355,567	344,553	344,553	455,718	111,165	32.3

자료: 국가보훈처

2018년에는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및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확대할 예정이며<sup>3)</sup>, 7급 전·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판정자 등이 상이처 외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용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할 예정이다.

### 나. 분석의견

연례적으로 진료비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비 소요액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보훈병원진료 사업에서는 매년 진료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이·전용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회계연도가 지난 후의 예산액으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2150-365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료비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3) 감면진료대상자는 보훈병원 이용시 감면비율에 따라 본인부담 진료비와 약제비를 감면해주며, 위탁병원 이용시는 75세 이상에 한해 본인부담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있다.

로 정산하고 있다.

2016회계연도의 경우, 보훈병원진료 사업의 예산액 중 과년도 부족분(2014년도 진료비 부족분)을 제외한 예산액은 2,939억 2,800만원이었으나, 192억 6,800만원을 이·전용하여 3,131억 9,600만원을 집행했으며, 2016년의 진료비에 대한 부족분 276억 700만원을 2018년도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였다. 이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매년 해당연도에 실제 필요한 진료비 총액 중 13.5%~22.5% 가량을 이·전용 등 또는 2회계연도 후의 예산으로 충당하여 집행하고 있다.

[보훈병원 진료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해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A)	당해연도 집행액(B)	당해연도 부족분(C)	진료비 총액(B+C)	부족분 비율 (A+C)/(B+C)
2012	209,759	29,495	239,254	31,296	270,550	22.5
2013	250,251	4,778	255,029	43,983	299,012	16.3
2014	270,759	△10	270,749	42,371	313,120	13.5
2015	272,494	12,300	284,794	40,153	324,947	16.1
2016	293,928	19,268	313,196	27,607	340,803	13.8

주: 1 당해연도 예산액은 과년도 부족분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진료비 보전을 위해 편성된 금액임  
 2 당해연도 부족분은 당해연도 부족분 중 2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편성되어 처리된 금액임  
 3 부족분 비율은 전체 진료비 총액 중 이·전용 및 2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으로 보전된 금액의 비율임  
 자료: 국가보훈처

따라서 보훈병원진료 사업의 예산 편성시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예산안 편성 시 진료인원을 국민건강보험 1인당 입내원 및 진료비 평균증가율을 기준으로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연령이 높고, 복합 질환 등을 가진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입내원 및 진료비 증가율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1인당 입내원 및 진료비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의 입내원 평균 증가율은 0.5%인 반면, 보훈병원 국비진료 인원의 최근 3년간 증가율은 2.2%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맞춘 진료비 산정 체계를 마련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진료비 부족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보철구 지급 사업<sup>1)</sup>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sup>2)</sup>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sup>3)</sup>,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6조(보상금)<sup>4)</sup>에 따라 신체장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전공상군경 등에게 국가보상(현물수당)으로 보철구(의족, 의수, 보청기 등)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사업주체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철구가 필요한 전공상군경 등에게 보철구를 제작·지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공단에 기타보전금(310-04) 비목으로 보상금을 교부하는데, 2018년도 예산안으로 전년과 동일한 6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다.

## [2018년도 보철구 지급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보철구 지급	6,003	6,003	6,003	6,003	0	0.0

자료: 국가보훈처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 1) 코드: 일반회계 2150-371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보철구의 지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의 마모(磨耗) 또는 고장으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6조(보상금) 국가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재활교육비 및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대한 검진비를 포함한다)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지급한다.

## 나. 분석의견

공단이 보철구지급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비부담분 보철구 공급에 대한 수익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 보조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보철구지급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보훈처는 보철구의 지급단가와 수량 등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공단 내 보장구센터에서 보철구 제작(구입), 공급(장착)과 수리를 담당한다.

보철구를 국가유공자가 공급받는 경우 그 비용은 전액 국가(일반회계 또는 복권기금)가 부담하며, 공단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철구를 공급(현물 보상)하고 해당 비용은 국가에 청구하여 보상금으로 지급받는다. 반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장애인이 보철구를 공급받은 경우 보철구비용은 공급받는 일반장애인이 부담하며 해당 금액은 공단의 국가 비부담분 수익으로 집계된다.

그런데, 보철구를 제작, 공급하는 보장구센터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철구 공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등 전액을 국가에서 지급받기 때문에 국가 비부담분 수익만큼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보철구 공급사업의 수익·비용 현황을 보면, 각종 재료비와 인건비, 경비를 합한 보철구 비용 합계가 국가 부담분(보철구 공급수익 중 국가유공자 수익)과 대응되고, 별도 비용과 대응되지 않는 국가 비부담분 수익의 영향으로 매년 3.9~6.5억원의 보철구 공급에 따른 추가 이익<sup>5)</sup>이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장구공급사업 수익, 비용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보장구 공급 수익	국가유공자(국가부담분)	8,362	9,211	8,597	8,138
	국가 비부담분	735	540	482	717
	기타 수익차감	△92	△79	△97	△96
	소계(A)	9,005	9,672	8,982	8,759
보장구 공급 비용	재료비	4,976	5,869	5,074	4,700
	인건비	2,843	2,753	2,732	2,715
	경비	852	666	687	690
	기타	△137	△18	103	9
	소계(B)	8,534	9,270	8,596	8,114
보장구공급 이익(A-B)		471	402	386	645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 해당 이익은 국가비부담분 수익 외 인건비, 경비 절감분과 기부금수입 등 잡이익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2013~2016년 동안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철구지출 사업비로 공단에 보장구센터에서 발생한 총비용(345.6억원)에 상응하는 343.1억원을 집행하였다. 정부 지원금이 보장구센터의 총비용보다 약 2.5억원 부족하지만, 국가 비부담분 수익 24.7억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공단은 비용부족분 2.5억원을 차감한 22.3억원을 자체이익으로 처리하였다.

[보장구공급 중 국가유공자, 상이처 외 매출]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합계
국가부담분 수익(국가유공자)(A)	8,362	9,211	8,597	8,138	34,308
보장구사업 비용(B)	8,671	9,288	8,493	8,105	34,557
국가부담분 수지(C=A-B)	△309	△77	104	33	△249
국가비부담분 수익(D)	735	540	482	717	2,474
차액(C+D)	426	463	586	750	2,225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와 같이 공단의 보철구 공급사업에서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공단의 국가비부담분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2013년 이후 매년 유사하게 60억 6,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의 보장구공급 수익(국가보훈처 일반회계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국가보훈처 보철구지급사업	6,068	6,066	6,068	6,066	6,066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결국, 공단 내 보장구센터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일반장애인에게 제공한 보철구 공급비용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일반장애인으로부터 받는 보철구 수입(비부담분 수익)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비부담분 수익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필요 이상의 보장구 지원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철구 지급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는 공단의 보장구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보철구지급사업 예산 규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철구지급 단가와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등사망시지원 사업<sup>1)</sup>의 내역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200만원 상당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예우를 다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11억 6,600만원으로, 신규사업이다.

[2018년도 국가유공자등사망시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유공자등사망시지원	330	297	297	1,947	1,650	555.6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0	0	0	1,166	1,166	순증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2018년 중 장례지원 상조업체를 선정하고, 기초수급자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이나 장례주관자 등이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하도록 하여 해당 장례업체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나. 분석의견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사업의 서비스 지원 방식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정인 유족들에게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액 보조가 아닌 상조업체를 통한 서비스 지원이라는 점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이 장례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전체 장례비용 중 200만원은 국가보훈처가 부담하고 그 외의 부분은 유가족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유가족이 일부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체를 선택할 수 없고 국가보훈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3250-415

처에서 계약을 맺은 상조업체를 통해서만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 이와 같이 ① 선택권이 제약되면서 상조업체의 서비스 질적인 측면의 하락 또는 과도한 가격 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또한 ② 장례지원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지원 대상에 속함에도 장례식 이전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유족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sup>2)</sup>에 따라 장제급여 최대 75만원이 정액 지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액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① 업체 선택이 가능해지며, ②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보훈처는 정액 지원 시 목적외 사용 가능성이 우려되며, 무연고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이 적절하기 때문에 서비스 지원 방식으로 사업수행방식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유족이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용품 구입시 유족이 희망하는 다른 상조업체나 장례업체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가복지요원, 보훈단체, 보훈신문 등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액 지원 시에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목적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봉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sup>3)</sup>,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sup>4)</sup>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액 지원 방식으로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현행 관리체계와 연계하여 무연고자의 장례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장례 지원 방식이 정액보조 방식이 아닌 서비스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원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광복회관 재건축 사업<sup>1)</sup>은 노후된 광복회관을 재건축하여 임대사업 등을 통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2018년도 계획안은 117억 9,800만원으로, 2017년 예산액 10억 900만원 대비 107억 8,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2018년도 광복회관 재건축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광복회관 재건축	12,468	1,009	1,009	11,798	10,789	1,069.3

자료: 국가보훈처

### 나. 분석의견

광복회관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광복회관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광복회관 재건축은 2014년부터 총사업비 450억원 규모로 계획되어 2016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조달청 표준공기에 따른 공사기간 변경, 도심지 밀집공사로 인한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2016년 1월에 착공하여 2018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공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당초 목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2016년 건립공정률은 18.2%였으며, 2017년 8월까지도 40.2%<sup>2)</sup>로 지연되고 있다. 2017년 예산으로는 10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16년 이월액 151억 8,1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61억 9,000만원이며 이 중 8월까지 24.9%인 40억 1,100만원만이 집행되었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 예산안에서 나머지 소요비용을 편성하여 2018년 7월까지 완공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3141-404

2) 당초 계획 대비 88.9%에 해당된다.

할 예정이며, 완공 이후 임차료 수입으로 1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광복회관 재건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시기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업 관리로 계획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광복회관 재건축 사업 개요]

- 부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6외 3필지
- 대지면적/연면적 : 2,379㎡(720평) / 18,431㎡(5,575평)
- 사업기간 : '14 ~ '18.7 (당초 '14 ~ '17)
- 총사업비 : 41,624백만원
- 향후계획 : 지상·지하 골조공사('17.1~'12), 내외부 마감공사('17.10~'18.7), 준공('18.7)

자료: 국가보훈처

**둘째, 미수납된 임차보증금 및 연납이자를 수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2013년까지 여의도 광복회관 건물 일부를 임차하였다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광복회에 지급하였던 임차보증금 7억 4,6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후 광복회와 이행연기특약을 체결하여 회수기한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연기하였고, 이에 대한 연납이자를 납부받기로 하였다. 광복회는 광복회관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 사무실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해당 특약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추가적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광복회는 특약에 따른 연납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납 연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 예산안에서는 해당 금액을 기타재산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편성하였다.

광복회관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광복회 측에도 임대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임대료 수입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광복회와의 사전 협의 하에 미수납된 임차보증금 및 연납이자를 2018년도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및 연납이자 세입 계상 내역]

(단위: 천원)

목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7,07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도 수납액(1,798백만원)에 최근 3년간 평균 미수납액(4,532백만원) 반영</li> <li>•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 746백만원</li> </ul>
기타재산수입 (54-545)	28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도 결산상 수납액의 3% 증액(2년) : 76백만원</li> <li>•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이행연기특약에 따른 연납이자 및 미납연납이자의 연체이자 : 21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년도분('14년~'18년) 연납이자 : 173백만원</li> <li>- 4개년도('14년~'17년) 미납 연납이자의 연체이자 : 38백만원</li> </ul> </li> <li>* 미납 연납이자 누계액의 연 11% 가산금리 적용</li> </ul>

자료: 국가보훈처

셋째, 준공 이전에 광복회와 광복회관의 소유권 지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차질없이 임대료 수입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복회관은 부지는 현재 광복회 소유이나 순애기금 416억원이 투입되어 건설되었다. 이로 인해 소유권 및 지분 관계가 불확정적인 상황으로, 완공 이후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보훈처와 광복회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2018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훈처는 광복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예정이나 감정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협의가 완료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유권 및 지분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2018년 광복회관 임대수입으로 계상한 10억원의 경우도 예상되는 임대수입의 50%를 추정하여 반영하였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완공 이전에 광복회와의 협의를 완료하여 임대수입에 대한 비율을 결정하고, 차질 없이 임대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 현황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sup>1)</sup>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사망 장병 가족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계획안은 2억 2,600만원으로, 신규사업이다.

[2018년도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운영	0	0	0	226	226	순증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현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5개 보훈병원에는 정신과를 두어 정신분열병, 망상장애 뿐만 아니라 기분장애, 알콜 중독,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불안장애를 비롯한 모든 정신질환에 대하여 진료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적 치료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만큼, 사회심리 치료를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2018년 하반기부터 12명의 사회심리재활상담사를 6개 보훈관서에 배치하여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나. 분석의견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사전에 완료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하고, 적극적 안내를 통해 활용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정책개발 사업에서 2018년도 연구과제로 “전몰·순직 유가족 심리 치료 지원 방안 연구”를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 시기는 2018년 6월에서 10월로, 연구용역 결과가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보훈기금 2160-472

[2018년도 정책연구과제 선정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방식	소요액
전몰·순직 유가족 심리치료 지원 방안 연구	'18.6~10월	위탁형	40

해당 과제는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로, 조기에 완료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정책연구용역과 사업계획 수립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심리재활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상이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외의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유가족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취업 지원 등과 같이 지원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심리재활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직접 신청을 하고 방문했을 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국가보훈처는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심리재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활용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사업<sup>1)</sup>은 국내외 산재된 독립유공자 묘소를 단장하고 국립묘지로의 이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계획안은 3억 1,5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국내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내역사업이 2억 5,0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면서 크게 증액되었다.

[2018년도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53	70	70	315	245	350.0

자료: 국가보훈처

### 나. 분석의견

첫째, 연례적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하므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안내 및 국외묘소단장을 위한 지속적 협의 등 적극적인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지방 산재묘소 단장 지원 사업, 국외선열 묘소 현지 단장 사업, 국립묘지 이장 지원 사업, 유해봉환 유족 지원 사업, 국내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사업의 5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족의 신청 또는 협의 하에 국내외 묘소를 단장하고, 신청 시 국립묘지로의 이장을 지원하며, 국외안장선열의 유해를 봉환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실적 및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편이다.

2016년의 경우, 예산 집행률은 67.1%에 불과했으며, 실제 지원 기수도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다. 지방산재묘소의 경우 당초 목표는 20기였으나 16기를 지원하는데 불과하였고, 국립묘지 이장지원은 80기 중 46기, 유해봉환 유족지원은 4기 중 2기만 지원하였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3141-403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14	106	106	106	54	50.9	50.9	0	52
2015	100	100	100	63	63.0	63.0	0	37
2016	79	79	79	53	67.1	67.1	0	26
2017.8	70	70	70	37	52.9	52.9	-	-

자료: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사업 계획 및 실적]

(단위: 기)

세 사업	2012		2013		2014		2015		2016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지방산재묘소 단장지원	38	27	34	14	26	12	26	23	20	16
국외선열묘소 현지단장	2	-	1	-	1	-	1	1	1	1
국립묘지 이장지원	163	111	140	47	120	67	100	42	80	46
유해봉환 유족지원	4	3	4	2	4	2	4	-	4	2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유족에게 국립묘지 이장 및 묘소 단장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국립묘지 이장 및 묘소 단장 사업은 목표 기수를 초과하여 신청받은 상태이며, 2018년도 계획안에서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규모를 축소하였다고 설명하였다.<sup>2)</sup> 2018년도 계획안에서는 국내산재묘소 18기, 국외산재묘소 1기의 단장지원, 국립묘지 이장지원 41기, 유해봉환 유족지원 2기를 계획 중으로, 해당 수요가 필요한 묘소를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여 신청을 받도록 유가족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사업은 유족에게 사전에 안내를 진행하고, 집행 이후의 사후 점검 등을 병행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2017년의 경우 8월말 기준 국립묘지 이장은 목표 72기를 초과하여 82기 완료되었고, 묘소 단장은 목표 20기를 초과하여 45기가 신청하였다.

국내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사업은 독립유공자 산재묘소의 벌초, 떼 입히기, 훼손봉분 보수 등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기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총 1,250기의 묘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2015~2016년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로 국내산재묘소 1,531기를 확인하였으며, 2017년에도 실태조사 대상 1,905기 중 1,000기 이상을 확인하여 충분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묘소의 유족 및 관리자들에게 사전에 안내를 진행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해당 관리비 지원의 경우, 관리 후 벌초사진이나 영수증 등 비용을 증빙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후손이 없는 묘소의 경우는 묘지 관리를 하는 자 또는 묘지 관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우, 묘지 관리자인 것처럼 사칭하여 비용을 지원받고 실제로는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해 유족 등 묘소관리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며, 부정수급이 발각될 경우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집행 과정에 있어서 국가보훈처는 묘지 관리 여부 점검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단위사업<sup>1)</sup>에서 국립대전현충원을 비롯하여 4.19묘지, 3.15묘지, 5.18묘지, 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이천호국원, 산청호국원 8개의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있다. 각 국립묘지에서는 운영을 위한 안장자, 집례자, 해설사 등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건비 및 피복비 등을 반영하고 있다.

[2018년도 국립묘지 사업 내 피복비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립묘지 사업 내 피복비	104,198	114,193	114,193	113,097	△1,096	△1.0
국립대전현충원	34,162	39,413	39,413	39,413	0	0.0
국립4.19묘지	5,939	6,000	6,000	6,000	0	0.0
국립3.15묘지	3,998	4,000	4,000	3,310	△690	△17.3
국립5.18묘지	12,948	15,600	15,600	15,600	0	0.0
국립영천호국원	10,410	10,400	10,400	9,994	△406	△3.9
국립임실호국원	14,040	15,580	15,580	15,580	0	0.0
국립이천호국원	11,501	12,000	12,000	12,000	0	0.0
국립산청호국원	11,200	11,200	11,200	11,200	0	0.0

주: 국립묘지 사업 내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피복비(210-03목)에 해당하는 금액임  
자료: 국가보훈처

### 나. 분석의견

국립묘지별 상이한 피복비 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과도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8개 국립묘지의 피복비는 지급단가가 달라 근무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3250

[2018년도 국립묘지별 피복비 단가 및 편성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명)

국립 묘지명	피복 지급 대상별			2018년 예산안	
	대상	단가	인원		
대전현충원	작업자	341	7	2,388	39,413
	안장자	405	35	14,175	
	집례자	608	30	18,250	
	안내자(미래관)	700	6	4,200	
	안내자(민원실)	200	2	400	
4.19묘지	안장자	300	4	1,200	6,000
	안내자	300	1	300	
	청원경찰	300	9	2,700	
	공익요원	300	6	1,800	
3.15묘지	안장자	250	5	1,250	3,310
	청원경찰	250	6	1,500	
	공익요원	250	2	500	
5.18묘지	안장자	600	4	2,400	15,600
	안내자	800	9	7,200	
	청원경찰	800	6	4,800	
	공익요원	200	6	1,200	
영천호국원	안장자	480	17	8,160	9,994
	경비원	160	5	800	
	운전원	160	1	160	
	공익요원	219	5	874	
임실호국원	안장자	880	13	11,440	15,580
	경비원	770	4	3,080	
	운전원	530	2	1,060	
이천호국원	안장자	620	12	7,440	12,000
	집례자	400	2	800	
	경비원	520	3	1,560	
	운전원	520	2	1,040	
	공익요원	265	3	795	
	해설사	365	1	365	
산청호국원	안장자	740	12	8,880	11,200
	경비원	570	3	1,710	
	운전원	610	1	610	

자료: 국가보훈처

2018년도 편성 내역을 보면, 안장자는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88만원까지 격차가 나며, 청원경찰은 25만원에서 8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공익요원의 경우에도 근무지에 따라 21만 9,000원에서 3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별도의 국립묘지 피복비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

태이다. 이로 인해 1인당 지원금액이 상이하고, 국가보훈처 자체 감사 결과 일부기관은 개인이 일반카드로 지출한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피복비를 지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의전예복 지급대상, 1인당 지급한도액, 지급방법에 대해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과다하게 피복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sup>2)</sup>

---

2) 국가보훈처는 현재 「국립묘지 근무요원 피복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8년 예산 집행시에는 해당 지급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 1 현황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5,125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1억 5,500만원(5.6%) 증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79,840	485,442	485,442	512,597	27,155	5.6

주: 총계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194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8,600만원(6.6%) 증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06,165	112,058	112,058	119,444	7,386	6.6

주: 총계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 32억 1,100만원 규모이다. 행정소송수행 사업은 공정거래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에서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분리된 사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기업집단국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사업 및 기업집단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기본경비를 편성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 (3개)	행정소송수행	3,045
	기업집단국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33
	기업집단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33
합 계		3,21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 ②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사업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은 사익편취 행태개선 사업, 대리점분야 행태개선 사업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었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사업은 소비자종합정보망 사업이 통합 편성되면서 증액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3개)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55	155	236	81	52.3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1,148	1,148	1,493	345	30.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604	604	1,104	500	82.8
합 계		1,907	1,907	2,833	926	48.6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편취행태개선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 ② 대리점분야 서면실태조사 등 대리점 환경개선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③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 등에 대한 대응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과징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환급액 규모가 감소되지 않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과징금 부과 고시에 따라 과징금 산정시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소관 법령의 과징금 고시 개정을 신속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대리점 분야 환경개선 사업은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적발을 위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없고 대리점에 대해서는 온라인 조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로 인해 응답률이 낮게 나타날 위험이 있으며, 본사 조사와 대리점 조사의 시차 발생으로 인해 본사의 보복조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성화 사업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CCM 인증기업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안내를 강화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 II

## 주요 현안 분석

### 1

### 과징금 환급액 및 행정소송 관련 격려금 관리 필요

#### 1-1. 과징금 환급액 축소를 위한 과징금 결정 기준의 명확한 적용 필요

##### 가.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sup>1)</sup>,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sup>2)</sup>을 위반한 사업자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8년도 과징금<sup>3)</sup>의 예산안은 5,085억 3,100만원으로, 2017년 예산 4,813억원 대비 272억 3,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2018년도 과징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과징금	376,826	481,300	481,300	508,531	27,231	5.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② 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행위(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위반행위, 상호출자행위,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행위), ③ 부당한 공동행위 등(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④ 불공정거래행위 등(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⑤ 부당한 지원행위, ⑥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
- 2) 기타 과징금 부과 근거가 있는 법률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3) 코드: 일반회계 56-565

## 나. 분석의견

과징금 환급액 규모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과징금 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환급액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2016년 과징금의 징수결정액은 6,270억원 7,400만원, 수납액은 3,768억 2,600만원이었으며, 소송 패소 및 직권 취소 등으로 환급한 금액은 3,303억 9,500만원이다. 과징금 환급액은 2015년 대비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수납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 2017년 8월까지 환급액이 1,838억 7,500만원이 발생하여 대규모 환급액 발생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환급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환급액 (A)		재부과액 (B)	순환급액 (A-B)	수납액
			가산금				
2013	603,489	558,920	30,264	3,862	8,936	21,361	332,852
2014	695,325	759,758	251,850	29,724	17,962	233,846	441,250
2015	653,240	547,881	357,240	37,345	11,656	345,584	328,485
2016	629,161	627,074	330,395	32,545	29,017	301,378	376,826
2017.8	481,300	1,294,765	183,875	4,910	9,824	174,051	1,060,568

주: 1.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환급액을 제외한 결산상 금액임

2. 2017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켈컴사건 관련 1조 311억 4,500만원의 고액 과징금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환급액 과다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산정하여 불복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된 「공정거래법」 상의 과징금 부과 관련 불복소송의 제기 사유는 ① 관련매출액 산정, ② 기본부과율 적용, ③ 과징금 산정단계에서의 가산 및 감경의 적용 문제로 나타났으며, 각 소송제기 사유별 패소율 현황은 관련 매출액 산정 관련 사건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산 적용 문제(25%), 기본부과율 문제(20%), 산정단계에서의 감경 적용 문제(18%)로 나타났다.<sup>4)</sup>

4) 김일중, “연구용역보고서: 과징금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7.

공정위는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과징금 가중·감경의 자의적인 적용에 대하여 지적이 계속되어오면서 2016년 12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과징금 산정 전단계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2017년 9월 말 과징금 가중 제도 강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다. 2016년 12월 개정에서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사유를 명확히 하여 감액 정도를 구분한 것에 이어, 2017년 9월 개정안에서는 ① 법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하여 최대 100%까지 가산이 가능해지고, ② 행위의 중대성 평가 시 ‘관련매출액’의 범위가 대략적으로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나머지 지표들만으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개정하였다.

이로 인해 소송 패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관련매출액 부분에 있어 공정위가 보다 객관적인 지표들을 활용하여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합적인 가중 한도가 100%까지 상향조정되면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가중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불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징금 가중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과다하게 과징금을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12월 「공정거래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 이후, 그 외 소관 법령에 따른 과징금 고시의 일부<sup>5)</sup>는 2017년 9월까지 ‘현실적 부담능력’에 대한 감경 기준 구체화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바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과징금 고시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따른 과징금 고시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과징금에 대한 공정위의 기준이 통일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별 고시를 함께 개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등이 있다.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의 경우, 2017년 10월 중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를 포함하여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 1-2. 직접소송 수행격려금의 예산 내 지급 필요

### 가. 현황

행정소송수행 사업<sup>1)</sup>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까지 공정거래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별도의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30억 4,500만원으로, 2017년 29억 8,600만원 대비 5,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2018년도 행정소송수행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행정소송수행	2,854	2,986	2,986	3,045	59	1.9

주: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은 공정거래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을 때의 금액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나. 분석의견

직접소송 수행격려금이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액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액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의 쟁점에 관한 통설이나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 비용·효율 측면에서 직접소송을 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유리한 사건 등에 대하여 위원회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가 승소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로 소송수행자에게 건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격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 부처가 1인당 연간 한도를 두고 있는 것<sup>2)</sup>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7031-301

2) 국세청은 소송수행자 1인당 연간 400만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1인당 연간 100만원의 한도를 두고 있다.

2016년에는 직원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 바 있으며, 수령대상자 12명 중 10명이 100만원 이상 지급받았다. 또한, 2012년 이후 2013년 한해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액보다 증액하여 집행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각 부처별 소송의 난이도 등 성격, 직접소송 수행의 필요성, 소송수행인력 상황 등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직접소송 수행 장려를 위하여 현행과 같은 격려금 지급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도별 직접소송 수행격려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세목조정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2	10	10	11	21	21	210.0
2013	7	7	0	7	7	100.0
2014	10	10	2	12	12	120.0
2015	16	16	1	17	17	106.3
2016	14	14	29	43	43	307.1
2017.8	17	17	0	17	13	76.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에는 이례적으로 건설입찰 담합사건 등 특정 사건으로 격려금 지급 사유가 급증하여 세목변경을 통해 집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직접소송 수행격려금 지급이 직접소송을 독려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금을 수당과 같이 지급하여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인당 한도 설정 등으로 과도한 격려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액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은 특정기업의 밀어내기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감시·개선하고자 제정되었다. 2016년 12월 23일에 「대리점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격적으로 대리점 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리점법」에서는 공급업자에 대해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7가지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및 위반시 조치〕

구분	조항
공급업자의 의무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1조(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위반시 조치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19조(조정 신청 등), 제20조(조정 등) 제23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권고), 제25조(과징금), 제30조(벌칙), 제32조(과태료), 제33조(고발), 제34조(손해배상 책임)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사업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다. 아래에서는 해당 대리점 거래 관련 사업들의 2018년 예산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 2-1. 대리점분야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 제고를 위한 사전준비 및 집행관리 필요

### 가. 현황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사업은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sup>1)</sup>의 내역사업으로, 「대리점법」 시행 이후 대리점 분야의 상시적 감시체계 구축 및 불공정행위 적발·시정을 위한 서면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2억 2,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1,105	1,148	1,148	1,493	345	30.1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0	0	0	226	226	순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나. 분석의견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사업 내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리점분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비용 1억 8,000만원, 현장조사 비용 3,600만원, 수용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다.

대리점분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는 「대리점법」<sup>2)</sup> 상의 공급업자(본사) 4,824개사와 대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251-330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리점 약 70만개의 10%에 해당하는 7만개사에 대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1차적으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우편·팩스·온라인 조사를 병합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2차 조사로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자메일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하도급분야 및 가맹·유통분야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와 달리, 하도급 분야 및 가맹·유통분야의 서면실태조사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매년 우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하도급 분야의 경우 원사업자가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야별 서면실태조사 비교]

구 분	대리점 분야		하도급 분야		가맹·유통분야	
	조사 대상	본사 4,824개	원사업자	5,000개	가맹점	8,000개
	대리점 70,000개	수급사업자	95,000개	유통납품업체	6,000개	
조사 방식	본사	우편, 팩스, 온라인	원사업자	우편, 온라인조사	가맹점	우편조사
	대리점	온라인 조사	수급사업자	우편, 온라인조사	유통납품업체	우편조사
법적 근거	없음		「하도급법」 제22조의2		「가맹사업법」 제32조의2,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	
미제출시 벌칙	없음		「하도급법」 제30조의2 (원사업자 500만원 이하)		「가맹사업법」 제43조(5천만원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1억원 이하)	
보복조치 금지	없음		「하도급법」 제19조		-	
2018년 예산안	1억 8,000만원		2억 3,200만원		각 2,500만원씩 5,000만원	

주: 하도급 분야의 경우,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우편으로 조사 실시 공문을 발송하고 조사표 회신은 온라인 및 우편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맹·유통분야의 경우 조사 실시 공문 발송 및 조사표 회신 모두 우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때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가.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 나.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 다.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 라.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기존의 분야별 서면실태조사와 달리, 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① 대리점 서면실태조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답률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미제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및 가맹·유통 서면실태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낮은 편이다. 가맹·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은 각각 3년 평균 34.0%, 31.1%이며, 하도급 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도 수급사업자의 3년 평균 응답률은 47.4%이다. 법적 제출의무가 없는 대리점에 서면실태조사는 이보다 응답률이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행 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장기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분야별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현황]

(단위: %)

구 분	하도급 분야		유통분야	가맹분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2014	98.4	46.6	20.2	33.9
2015	98.4	48.4	35.3	32.5
2016	98.1	47.2	37.7	35.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② 사업수행방식의 차이로 인해 대리점의 응답률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 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의 사업수행방식을 살펴보면 본사에 대해서는 우편·팩스 조사를 병행하는 반면, 대리점에 대해서는 전자메일을 통한 온라인조사만 진행하되 전화, 메일, 문자 등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조사방식의 차이로 인해 대리점의 응답률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

③ 본사 조사와 대리점 조사가 시차를 두고 이루어져 보복조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선행한 후, 대리점 현황 및 메일 주소 등을 본사로부터 수합하여 조사 대상 대리점을 샘플링하여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 및 보복조치 금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2차 조사 기간 동안 대리점으로 하여금 협조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를 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절차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선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대리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2-2.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가. 현황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는 「대리점법」이 2016년 1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sup>1)</sup>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정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sup>2)</sup>에서 분쟁조정제도 운영 및 관련정책 연구를 수행하도록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63억 7,000만원으로, 2017년 57억 3,800만원 대비 6억 3,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이 중 51억 3,500만원은 기관운영출연금, 12억 3,500만원은 사업출연금으로, 사업비는 분쟁조정 관련 5억 8,400만원, 시장연구 관련 2억 8,600만원, 민원상담센터 운영 관련 3억 6,500만원으로 구성되었다.

[2018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5,233	5,738	5,738	6,370	632	11.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나. 분석의견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실적이 저조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18년도 예산안에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전체회의 3회, 분과회의 7회 개최를 계획하여 위원수당으로 1,386만원을 계상하였다. 그러나 2017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실적을 보았을 때, 조정원의 2018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계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코드: 일반회계 1271-350

확은 실제로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8월까지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4건이며, 이 중 실제 처리된 사건은 1건에 불과하다. 조정 신청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분과회의는 7월까지 1회도 개최되지 못하였다.<sup>3)</sup>

분쟁조정을 시작한 첫 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2012년 대규모유통 분쟁조정협의회, 약관 분쟁조정협의회가 신설된 첫 해<sup>4)</sup>에 각각 33건, 23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여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신청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협의회별 접수 및 처리 건수]

(단위: 건)

구 분	2012년			2017년 8월		
	접수	처리	성립	접수	처리	성립
대규모유통	42	33	22	24	15	7
약관	46	23	4	83	63	40
대리점	-	-	-	4	1	0

주: 대규모유통 분쟁조정협의회는 2012년 1월부터,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2012년 8월부터 시행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 부칙<sup>5)</sup>의 적용 과정에서 2016년 12월 23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사건을 접수·처리하여 해당 조정협의회 실적의 실적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7년 9월 28일 해당 부칙에 대한 개정안<sup>6)</sup>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등 대리점 분야에 대한 감시 및 조사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와 더불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대리점주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전체회의는 2017년 1월, 6월 2차례 개최되었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3614호, 2015.12.22.>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6) 해당 부칙을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하였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 사익편취 행태개선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및 집행 관리 필요

#### 가. 현황

사익편취 행태개선 사업<sup>1)</sup>은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의 신규 내역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sup>2)</sup>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감시·조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독과점 감시체계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1,105	1,148	1,148	1,493	345	30.1
사익편취 행태개선	0	0	0	100	100	순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251-330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정과제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수행을 위하여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하였으며, 기업집단국 내의 내부거래감시과를 두어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익편취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때, 특수관계인은 당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그 친족(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 나. 분석의견

**사익편취 행태개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의 신속·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sup>3)</sup> 사익편취 행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하여 조사인력을 확보하여 기업집단국 내 내부거래감시과를 신설하였다.

사익편취 행태개선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은 일반수용비 4,500만원, 국내여비 5,0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이다. 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내여비의 경우,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부당내부거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eGROUP(대기업집단 및 지주회사시스템), OPNI(기업집단정보공개시스템)의 기업집단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 내부거래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다. eGROUP 시스템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기업집단이 내부거래 내역 등 법령에 따른 공시 자료를 입력하면 이를 OPNI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내부거래 비중 50% 이상의 회사를 추출하는 등 정보를 가공하여 부당내부거래 사건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시스템의 노후화로 부당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기능이 부족한 상태이다.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은 2005년 도입 이후 2008년 한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31개(계열사 1,22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57개(계열사 1,980개)가 지정되었다.

차례의 기능 개선 외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정위 자체 업무처리 시스템인 ThinkFair와 한 서버에 운용되고 있어 타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한 장애도 발생하고 있다.

[타 시스템의 영향으로 인한 장애 현황]

(단위: 건)

	2014	2015	2016
장애 건수	11	7	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기업 관련 각종 자료를 공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4조의5에 따른 대기업집단 정보는 기업집단 포털시스템을 통해서 입력·공개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 사항, 제11조의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등은 DART를 통해서 입력·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 시스템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두 자료 간의 오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기업집단 포털시스템과 DART의 공정위 공시 현황]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에 따른 대기업집단 정보 공개 - 대규모기업집단 일반·재무현황 - 소유지분구조 및 내부지분 현황 - 지배구조관련 현황 -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 관련현황 - 경영성과정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에 따른 대 기업집단 관련 공시 -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 대규모내부거래 사항 - 기업집단현황 공시

이와 같이 불공정행위 적발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의 신뢰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익편취 행태개선을 위해 인력 및 예산의 규모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성과가 크게 나타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사익편취 행태개선 사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기초자료의 신속·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등 사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성화 사업<sup>1)</sup>은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제도(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의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으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1억 1,600만원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2018년도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484	596	596	572	△24	△4.0
소비자중심경영 (CCM) 활성화	55	116	116	216	100	86.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sup>2)</sup>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소비자중심경영체계를 구축하여 평가를 신청하고, 인증 이후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인증은 2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재평가를 통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마크를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수준을 경감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중 개별소비자 피해사건에 대해 인증기업에 우선 통보하여 자율처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431-600

2) 2017년 9월 28일 「소비자기본법」이 일부개정되면서 CCM 인증제도의 인증근거 및 절차 방법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나. 분석의견

CCM 인증기업이 증가하고 있지 못하므로, 기업에 대한 교육 기회의 제공 및 인증 도입 이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CCM 인증과 관련된 실무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CCM 평가수수료 수입을 바탕으로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평가 수수료는 신규신청 시 대기업 600만원, 중소기업 15만원이며, 재평가 시 대기업 400만원, 중소기업 15만원이다.<sup>3)</sup>

2016년 CCM 인증 평가 신규 신청기업은 26개사, 전체 인증 기업은 167개사로 2015년 대비 6개사가 증가하였다. 이는 신규 신청 인증기업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기존의 인증기업 중 재평가 탈락, 재인증 포기, 인증 취소 등으로 인증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CCM 인증 평가 기업 현황]

(단위: 개)

연도	전체 인증기업			평가신청기업			
	신규 <sup>1)</sup>	기존 <sup>2)</sup>	계	대기업/공공기관		중소기업	
				신규평가	재평가	신규평가	재평가
2012	23	88	111	14	26	13	21
2013	26	104	130	14	28	13	7
2014	28	114	142	14	34	14	22
2015	34	127	161	18	33	18	13
2016	26	141	167	19	43	10	22
2017.8 <sup>3)</sup>	3	163	166	2	9	1	1

주: 1) 신규평가신청기업 중 인증을 획득한 기업 수

2) 재평가 탈락, 재인증 포기, 인증 취소 등이 반영된 수치임

3) 2017년은 상반기 신청 기업 수입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CCM 인증기업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은 2017년 운영 10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지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의 2017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CCM 인증마크를 본적이 있다는 소비자는 17.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CCM 인증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홍보예산은 2,600만원에서

3) 2015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소기업 평가수수료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수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6년부터 중소기업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였으며, 평가비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6,200만원, 1억 6,300만원으로 해마다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1개월 간의 영화관 광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CCM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평가 기업 신청 수가 증가될 여지가 있으나,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인증제도 운영 내실화 등 다음과 같은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① 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마크 도입을 통해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증 신청 기업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2회 CCM 제도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4회 개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CCM 체계 구축 가이드’를 제작·배포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인증 신청 대상자인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② CCM 정기교육 및 중간 점검 등의 절차를 통해 인증 도입 이후에도 소비자중심경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재인증을 포기한 기업 수는 총 80개사로, 포기 사유에는 단순 경영난, 기업합병 등 경제적 이유와 법위반, 소비자 관련 외부 이슈 등이 있다. 특히, 2016년에는 가슴기 살균제와 관련된 기업의 CCM 인증을 논란이 있는 이후에 취소하면서 CCM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오히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CCM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인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CCM 재인증 포기 현황]

(단위: 개)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기업 수	28	7	13	13	1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인증 절차 안내 및 인증 도입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으로 소비자 중심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의 내실화를 선행하여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기본경비<sup>1)</sup>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실·국 및 지방사무소의 보수, 특근매식비·복리후생비·기타운영비 등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수용비·공공요금및제세·임차료 등의 운영비와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비인건비성 기본경비이다. 2018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71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본경비	6,559	6,879	6,879	7,169	290	4.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나. 분석의견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예산을 통한 개인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의 적용대상을 공공요금(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등<sup>2)</sup>)과 제세(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 및 국내부담금 등<sup>3)</sup>)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을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에 따라 법인용 핸드폰을 사용하는 국장급 외의 개인용 휴대폰을 사용하는 과장급, 비서, 운전원 등에 대하여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4~2016년에는 매년 약 1,000만원 가량씩 총 3,135만원을 개인에게 지급하였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7011

2) 철도화물 운송요금, 차량 운송요금,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3) 자동차세, 장애인고용부담금, 협회비,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채당금,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014~2016년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 현황(개인지급분)]

(단위: 천원)

	2014	2015	2016	합 계
지원금액	10,743	10,330	10,284	31,35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 기준]

- (기본원칙) 지원대상 직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직책을 수행하는 동안 지원하며, 업무비중, 사용용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기준) 전액지원은 통신서비스요금만 지원하며 부가사용액 및 단말기 할부금 미지원, 지원한도 제한은 한도 내 요금 고지서 금액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은 개인 부담

[휴대폰 사용료 지원한도]

구 분	대상자
전액지원	정책홍보담당관, 위원장실 비서관, 기사,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실 국회담당자(1명), 예산담당자(1명),
월4만5천원 한도 지원	실국별 총괄과장 8인 및 지방사무소장 및 총괄과장 5인
월3만원 한도 지원	부위원장실 비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처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sup>4)</sup>에서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2011년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2011. 8.)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sup>5)</sup>을 근거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금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 예산에서 급여성 경비인 휴대폰 기본요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주의요구)한 바 있었다.

4)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5)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용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직원들에게까지 개인용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최근의 휴대폰 요금체계는 대부분 통화량과 무관하게 데이터 사용량 등의 조건에 따라 사용요금이 미리 정해져 있는 정액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로 개인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낮다.

2018년도 예산안에도 개인에게 지급되는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 목적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통해 업무상 지급되는 법인용 휴대폰이 아닌 개인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6개 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일반회계 286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445억원 등 총 731억원으로 전년 대비 870억원(54.3%) 감소하였다.

[2018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459	77,829	77,829	28,585	△49,244	△63.3
공적자금상환기금	4,013	82,215	82,215	44,485	△37,730	△45.9
합 계	13,472	160,044	160,044	73,070	△86,974	△54.3

주: 총수입 기준(금융성 기금은 총수입에서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2018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일반회계 1,868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622억원 등 총 2,489억원으로 전년 대비 792억원(24.1%) 감소하였다.

[2018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27,896	153,414	233,414	186,762	△46,652	△20.0
공적자금상환기금	191	94,762	94,762	62,170	△32,592	△34.4
합 계	528,087	248,176	328,176	248,932	△79,244	△24.1

주: 총지출 기준(금융성 기금은 총지출에서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 나. 세입·세출

2018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92억원 (63.3%) 감소하였다.

[2018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09,459	77,829	77,829	28,585	△49,244	△63.3

주: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018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며, 2조 2,86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33억원(12.5%) 증가하였다.

[2018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327,896	1,953,414	2,033,414	2,286,762	253,348	12.5

주: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다.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수입계획안은 22조 8,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 95억원(34.4%) 감소하였다. 주요 기금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16조 1,235억원에서 2조 2,346억원으로 86.1% 감소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5조 4,888억원에서 7조 7,085으로 40.4% 증가하였으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3조 1,908억원에서 4조 4,556억원으로 39.6% 증가하였다.

[2018년도 금융위원회 기금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공적자금상환기금	11,579,653	16,123,501	16,123,501	2,234,613	△13,888,888	△86.1
농어목돈만들기특별기금	100,644	86,563	86,563	84,681	△1,882	△2.2
신용보증기금	6,397,818	5,334,747	5,488,847	7,708,499	2,219,652	40.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165,038	1,007,434	1,007,434	984,581	△22,853	△2.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390,536	3,190,784	3,190,784	4,455,612	1,264,828	39.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7,084,913	8,991,280	8,991,280	7,410,902	△1,580,378	△17.6
합 계	29,718,602	34,734,309	34,888,409	22,878,888	△12,009,521	△34.4

주: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018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지출계획안은 22조 8,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 95억원(34.4%) 감소하였다.

[2018년도 금융위원회 기금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공적자금상환기금	11,579,653	16,123,501	16,123,501	2,234,613	△13,888,888	△86.1
농어목돈만들기특별기금	100,644	86,563	86,563	84,681	△1,882	△2.2
신용보증기금	6,397,818	5,334,747	5,488,847	7,708,499	2,219,652	40.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165,038	1,007,434	1,007,434	984,581	△22,853	△2.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390,536	3,190,784	3,190,784	4,455,612	1,264,828	39.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7,084,913	8,991,280	8,991,280	7,410,902	△1,580,378	△17.6
합 계	29,718,602	34,734,309	34,888,409	22,878,888	△12,009,521	△34.4

주: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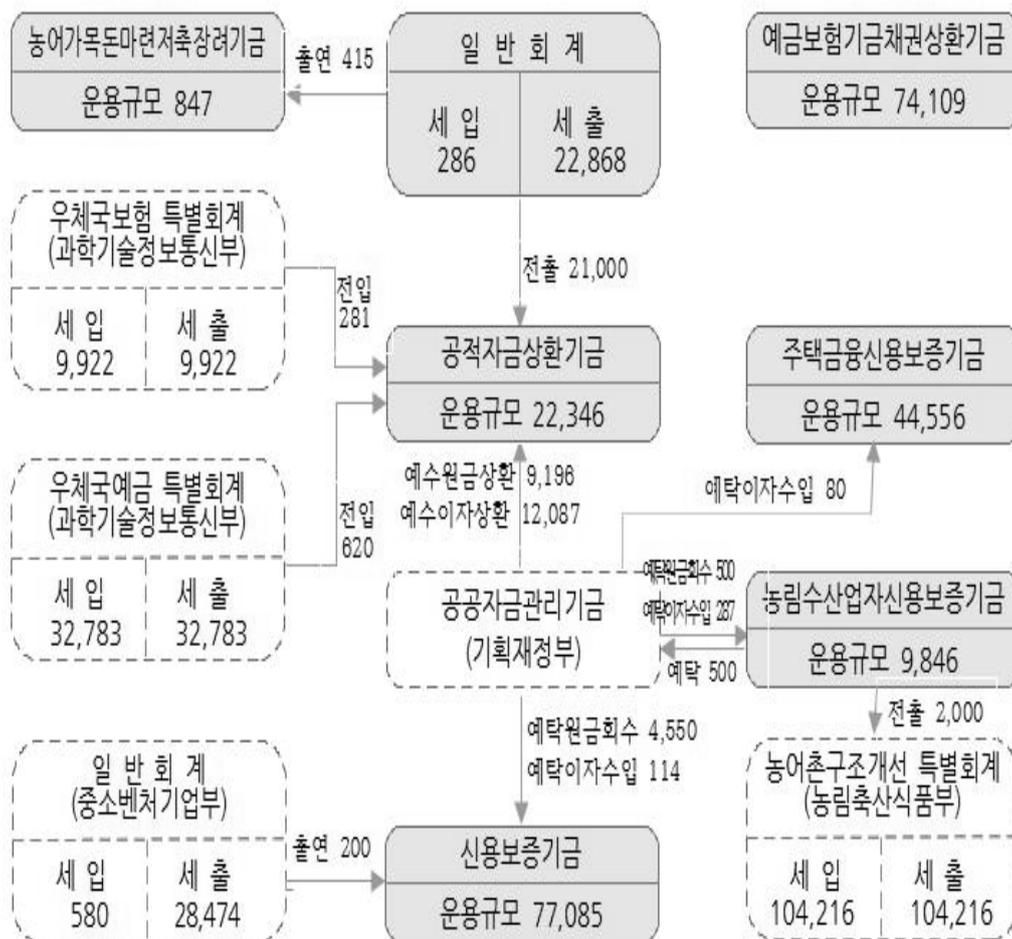
## 라. 재정구조

2018년도 금융위원회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2조 1,000억원이 전출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415억원이 출연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2,000억원 반환한다.

[2018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1,000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중산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하여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 (1개)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100,000

자료: 금융위원회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② 신용보증기금 시장안정특별보증대위변제 ③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금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회사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사업이 내역사업으로 이관되었고, 신용보증기금 시장안정특별보증대위변제 사업은 P-CBO에 편입된 차환 대기업의 비중 차이에 따라 증액되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금 사업은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피보증인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획액이 증액되었다.

[금융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1개)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4,849	4,849	6,688	1,839	37.9
신용보증 기금 (1개)	시장안정특별보증대위변제	520,400	520,400	949,800	429,400	82.5
농림수산 업자신용 보증기금 (1개)	대위변제금	174,300	174,300	189,700	15,400	8.8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금융위원회

2018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금융지원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금 1,0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②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대 44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③ 중소형 조선사가 선수금 환급보증(RG)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의 보증’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 200억원이 전입된다.

2018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은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적정 지급보증배수 유지를 위한 것으로,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 등을 감안할 때 정책모기지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18년 예산안 관련 지급보증배수 추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는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매각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입으로, 해당 주식이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어 매각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은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에 대한 ‘지급보증의 보증’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을 통하여 기금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중은행에서 동 재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소 조선사에 대해 선수금 환급보증(RG)을 공급하는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특별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으로 특별출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 예산안 적정 규모 검토 필요

가. 현 황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sup>1)</sup>은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적정 지급보증배수 유지를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2018년 예산안에 신규로 1,000억원을 반영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며, 상기 예산안은 2018년 정책모기지 수요 증가에 따른 MBS<sup>2)</sup> 지급보증 잔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이다.

[2018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0	0	0	100,000	10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상 지급보증배수(지급보증액 ÷ 자기자본)는 50배를 한도<sup>3)</sup>로 하고 있는데, 아래 표 [2018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소요 상세 근거]에서와 같이 2016년 말 지급보증배수는 40.9배 수준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788-3731)

1) 코드: 일반회계 2632-301

2)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는 자산유동화증권의 일종으로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30조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과 2018년에 각각 40조원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예상할 경우 2017년 말과 2018년 말의 지급보증배수는 각각 46.9배와 49.5배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기 1,000억원의 신규 출자 예산안은 2018년 예상 지급보증잔액(137조 2,175억원)과 2018년 예상 자기자본(2조 7,720억원)에 추가로 1,000억원의 자본을 반영하여 47.7배 수준의 지급보증배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본 규모로 산정된 것이다.

[2018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소요 상세 근거]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6	2017	2018
기초자산 공급	374,293	400,000	400,000
보금자리론	198,150	190,000	190,000
적격대출	176,143	210,000	210,000
유동화증권 발행	353,262	400,000	400,000
지급보증배수(A/B) (당해 연도 출자소요액 반영 전)	<b>40.9</b>	<b>46.9</b>	<b>49.5</b>
지급보증잔액(A)	1,004,532	1,213,823	<b>1,372,175</b>
자기자본(B)	24,531	25,864	<b>27,720</b>
출자소요액 (C)	0	0	<b>1,000</b>
지급보증배수 (A/(B+C)) (당해 연도 출자 소요액 추가 반영 후)	-	-	<b>47.7</b>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나. 분석의견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 등을 감안할 때 정책모기지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18년 예산안 관련 지급보증배수 추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예상 지급보증잔액 및 예상 자기자본은 공사 업무계획상 2018년 유동화증권 발행 목표인 40조원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액은 아래 표 [주택금융공사의 연도별 유동화증권 발행액]에서와 같이 2012년 20조 2,813억원을 발행한 이래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6년에는 35조 3,262억원이 발행되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40조원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연도별 유동화증권 발행액]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목표	실적(~7월)	목표
발행액	202,813	226,929	145,046	557,958	353,262	400,000	201,572	400,000

주: 2015년도는 안심전환대출 31.7조원의 실행으로 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타년도에 비해 컸음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2017년 8월 2일, 국토교통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sup>4)</sup>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를 위한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방안으로 LTV<sup>5)</sup>와 DTI<sup>6)</sup>가 강화되었다. 그런데, LTV, DTI의 강화된 기준은 아래 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 전후 LTV·DTI 비교<sup>7)</sup>에서와 같이 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하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정책모기지<sup>7)</sup> 중 대부분 적격대출에만 적용되었다.

- 4) 국토교통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보도자료, 2017.8.2
- 5)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은행이 주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 실행 시,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뜻한다.
- 6)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하는 대출금 원리금이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 7)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정책모기지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차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생애최초 연 7,000만원)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제한없음
대출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제한없음
주택가격	5억원(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9억원
대출한도	2억원	3억원	5억원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 전후 LTV·DTI 기준 비교]

구분		8.2대책 전	8.2대책 후	
디딤돌대출	LTV	70%	변동없음	
	DTI	60%	변동없음	
보금자리론	LTV	70%	변동없음 (6.19대책에 따른 청약조정지역 : 60%)	
	DTI	60%	변동없음 (6.19대책에 따른 청약조정지역 : 50%)	
적격대출	LTV	70%	투기/투기과열지구	40%(실수요자 50%)
			청약조정지역	60%(실수요자 70%)
			청약조정지역 외	70%
	DTI	60%	투기/투기과열지구	40%(실수요자 50%)
			청약조정지역	50%(실수요자 60%)
			청약조정지역 외	60%

주: 상기 실수요자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본 건 주택 외 무주택,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8천만원) 이하인 수요자를 말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런데 2017년 월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월별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8월 들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공급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상 강화된 LTV와 DTI 기준의 적용을 받는 적격대출의 경우 7월 대비 3,200억원 (30.7%) 감소하였다.

[2017년 정책모기지 월별 공급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월별공급실적								7~8월 증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A)	8월(B)	증감액 (C=B-A)	증감율 C/A
디딤돌대출	7,230	8,373	7,060	6,552	6,440	6,719	3,196	3,395	199	6.2
보금자리론	11,850	15,990	12,288	6,944	6,067	7,543	7,520	7,709	189	2.5
적격대출	4,683	12,023	18,292	18,103	13,537	10,752	10,429	7,229	△3,200	△30.7
합계	23,763	36,386	37,640	31,599	26,044	25,014	21,145	18,333	△2,812	△13.3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의 표 [2018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소요 상세 근거]에서 당해연도 출자 소요액 추가 반영 전 예상 지급보증배수 49.5배는, 2018년 정책모기지 수요 40조원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에서와 같이 최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감안할 때, 정책모기지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8)</sup>.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8년 예산안 관련 지급보증배수 추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9)</sup>

**둘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5년 수행한 용역 결과에 따라 내부적으로 적정 지급보증배수를 40배로 설정하고 있으나, 최근 추세 반영 및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리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지급보증배수를 재산출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수행한다. 이 때, 지급보증 규모가 증가할수록 우발채무로 인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리스크도 증가하므로, 지속적인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1조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보증배수가 5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기 법정 지급보증배수 한도와는 별도로, 2015년 7월에 실시한 자체 수행 연구 결과<sup>10)</sup>에 따라 적정 지급보증배수를 40배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가 출자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시중금리 및 연체율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하여 2015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계산하면 적정 지급보증배수가 높아질 여지가 있는 등, 최근 추세 및 추가 금리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 지급보증배수를 재산출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15년 실시한 상기 연구에서는 채무불이행 위험인 신용리스크를 고려하여 위기

8) 실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작성하여 2017년 9월 22일자로 이사회 의결을 득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18~2022년 중장기 경영목표'에는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지역별·차주별 대출한도 하락 등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하여, 2018~2022년간의 정책모기지 예상 공급액을 연간 30조원으로 설정하였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보증배수는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이미 43.4배에 도달하였고, 연말까지 정책모기지 수요에 따라 최대 46.9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미 법상 지급보증한도 50배에 근접한 상황으로, 향후 글로벌 양적완화 축소를 위한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 증가를 감안할 때,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적정수준의 지급보증배수 버퍼 유지가 필요한 점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법상 지급보증한도 50배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10)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사 적정지급보증배수에 관한 연구」, 2015. 7.

시 미예상손실을 자본금으로 감내할 수 있는 최대 지급 보증금액을 감안하여 적정지급보 증배수를 산출하였는데, 적정지급보증배수 산출 시 주요 변수는 부도확률(PD)<sup>11)</sup>과 부도시 손실률(LGD)<sup>12)</sup>이다. 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아래 표 [2015, 2017년 PD, LGD 변수 값 변동]에서와 같이 부도확률에 대하여 2004~2013년간의 과거 실적 및 신용등급별 가중 평균치를 감안한 장기 평균치인 0.9%를 적용하였다. 또한 부도시손실률에 대하여는 주택 가격 하락 시나리오를 감안하여 경기침체기 부도시손실률인 20.0%를 반영하여 산정하였 으며, 이를 반영한 적정 지급보증배수는 40배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기준으로 최근의 실적을 추가로 반영하여 상기 주요 변수값을 재산정 한 결과, 2004~2015년의 실적을 적용한 부도확률은 0.8%, 부도시손실률은 18.5%로 낮아 지게 된다. 따라서 이를 2015년 적정 지급보증배수 산출 방식에 동일하게 단순 대입하면, 이에 따른 적정 지급보증배수는 높아지게 될 여지도 있다.

[2015, 2017년 PD, LGD 변수값 변동]

(단위: %)

	부도확률(PD)	부도시손실률(LGD)
2015	0.9	20.0
2017	0.8	18.5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상기와 같이 최근 부도확률과 부도시손실률이 낮아지게 된 것은 그간의 글로벌 양적 완화 조치 등에 따른 경기회복과 정책모기지 공급이 최근 2년간 집중된 효과라고 한국주 택금융공사는 설명하고 있다. 부도확률과 부도시손실률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수이며,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적정 지급보증배수 산출 시 유동화 증권 발행 이 후 대출채권에 대한 신용리스크만을 고려하고 있어,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리리 스크, 시장리스크 등은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3)</sup> 따라 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와 같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에 산정한 적정 지급보증배수가 타당한지 재산출해 볼 필요가 있다.

11) 경기순환주기를 포함한 기간 동안의 관측치를 대표한 장기 평균 부도확률(PD: Probability of Default)를 적용하였다.

12)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으므로 경기 침체기를 반영하여 부도시손실률(LGD: Loss at Given Default)을 적용하였다.

1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히 2015년 이후에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등 연간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급증하 면서 금융기관 대출 실행부터 유동화증권 발행까지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된 미유동화자산 위험이 증가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가. 현황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sup>1)</sup>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2013. 2. 22.)에 따라 현물로 반환 받은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매각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입으로, 2018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77억 3,100만원 감소한 441억 1,700만원이 계획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총 보유주식 약 233만주<sup>2)</sup>에 대하여 2017년 123만 주를 매각하고, 2018년에는 잔여분 11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다.

[2018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재고자산매각대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재고자산매각대	0	81,848	81,848	44,117	△37,731	△46.1

자료: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 재고자산매각대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금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7 계획 (수정)	81,848	○ 산출내역(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 : 81,848백만원) - 대우조선해양 주식 12,314,006주를 매각 - 12,314,006주 <sup>1)</sup> × 6,643원 <sup>2)</sup> = 81,848백만원 ※ 매각물량 및 매각가격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018 계획안	44,117	○ 산출내역(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 : 44,117백만원) - 대우조선해양 주식 1,094,177주를 매각 - 1,094,177주 <sup>3)</sup> × 40,320원 <sup>4)</sup> = 44,117백만원 ※ 매각물량 및 매각가격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주: 1) 2016년 말 예상 보유 주식 수

2) 과거 1년간(2015.7.1~2016.6.30)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

3) 2017년 말 예상 보유 주식 수

4) 16.12.29. 증자 시 산정된 출자전환 단가 적용 [거래정지 직전 종가 44,800원(10:1 감자 완료 후)×90%]

자료: 금융위원회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51)

1) 코드: 공적자금상환기금 73-731

2) 2016년 12월 감자·주식병합·유상증자, 2017년 6월 및 8월 유상증자로 금융위원회의 지분율이 변동하였다 (23,255,778주, 12.15% → 2,325,577주, 2.21%).

## 나. 분석의견

첫째, 2018년도 계획안에는 경영정상화 진전, 시장상황 변화 등으로 인한 매각여건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대가 반영되었으나,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매각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연례적으로 재고자산매각대를 반영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매각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양호한 실적과 업황 회복 예상 등에 따라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또한, 2015년에는 조선업 침체 및 주가의 지속 하락에 따라 매각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고, 2016년 7월 이후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면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2018년도에는 경영정상화 진전, 시장상황 변화 등으로 매각여건 개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고자산매각대를 반영하였다는 입장이다.

[최근 4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 재고자산매각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14	289,038	0	0.0	0.0	0.0	0	0
2015	390,539	0	0.0	0.0	0.0	0	0
2016	272,363	0	0.0	0.0	0.0	0	0
2017.6.	81,848	0	0.0	0.0	0.0	0	0
2018	44,117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2016년 부채비율 5,543.7% → 2017년 6월 부채비율 244.4%). 또한, 주식거래재개 요건인 영업 지속성·재무건전성·경영투명성 충족을 위해 다각적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다만, 2017년 9월 말 현재 신규 수주실적 달성률이 56.2%(자체 수주목표 US\$45.7억 대비 실적 US\$25.7억) 수준에 그치고 있고, 소난골 드릴쉽 인도 문제<sup>3)</sup>를 둘러싼 협상 교착상태도 지속되고 있다.

3) 대우조선해양은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로부터 수주한 드릴쉽 2척을 2016년에 완성하였으나, 2017년 9월 말 현재까지 인도하지 못하여 약 1조원의 인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주식거래재개의 가능성 및 공적자금상환위원회의 주식 매각 가능성은 10월말~11월 초 주식 거래 여부에 대한 발표 전까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둘째, 2014년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 유보 결정은 기금의 재고자산가치를 하락시킨 측면이 있고, 주식거래 재개 시 주가의 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적정가격 매각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sup>4)</sup>에서는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액은 6,657억원이었으며, 이 중 1조 529억원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158.2% 수준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2014년도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 유보 결정이 시장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약 5,200억원 규모<sup>5)</sup>의 기금 재고자산가치를 하락시킨 측면이 있다.

[대우조선해양 주식 시세 현황(2014.1.~2017.9.)]

(단위: 원/주, 주)



자료: 한국거래소

- 4)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자산의 매각)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2014회계연도와 2018년도의 보유주식 수(23,255,778주→2,325,577주)와 계획안 편성 당시 단가(26,416원→40,320원)를 적용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거래정지 직전 종가를 기준으로 주당 40,32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채고자산매각대를 계상하였다. 그런데, 거래정지 기간 중 감자·유상증자·출자전환 등 주가조정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식거래가 재개된다면 대우조선해양 주가의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원회의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 유보 결정은 기금 채고자산가치를 하락시킨 측면이 있으며, 향후 주가의 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식을 적정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 금융위원회 세입 추계의 적정성 및 징수실적 제고 필요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492억 4,400만원(63.3%)이 감액된 285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과태료 67억 6,200만원, 과징금 212억 6,100만원, 가산금 1억 1,0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4억 5,2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과태료	5,388	6,405	6,405	6,762	357	5.6
과징금	3,653	20,845	20,845	21,261	416	2.0
가산금	153	127	127	110	△17	△13.4
기타경상이전수입	265	50,452	50,452	452	△50,000	△99.1
기금전입금	200,000	0	0	0	0	0.0
합 계	209,459	77,829	77,829	28,585	△49,244	△63.3

자료: 금융위원회

세입예산안 감액의 주요사유는 2017년도에 편성되었던 주택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의로 전입금 500억원의 2018년도 예산안 미반영에 기인한다. 2017년도 전입금 규모 500억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7억 5,600만원 증가하였다.

## 1-1. 과징금 예산안의 합리적 산정방식 강구 및 징수실적 제고 필요

### 가. 현황

과징금<sup>2)</sup>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sup>3)</sup> 금융관련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금전적 제재로, 2018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4억 1,600만원이 증액된 212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4년도에는 예산액 137억 5,600만원 중 207억 4,700만원을 달성하였고, 2015년도에는 예산액 181억 2,100만원 중 119억 1,4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이 65.7%였으며, 2016년도에는 예산액 202억 2,500만원 중 36억 5,3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이 18.1%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과징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14	13,756	54,544	20,747	150.8	38.0	32,708	1,089
2015	18,121	38,930	11,914	65.7	30.6	26,389	627
2016	20,225	32,090	3,653	18.1	11.4	19,425	9,012
2017.6.	20,845	45,018	19,182	92.0	42.6	17,102	8,734
2018	21,261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나. 분석의견

첫째, 과징금 예산안 산출내역 상의 과다계상 요인과 과소계상 요인이 혼재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4~2016년 과징금의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18.1~150.8% 수준으로 변동폭이 매우 컸다. 이는 과징금 예산안 추계의 적정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sup>

2) 코드: 일반회계 56-565

3)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는 2018년도 과징금 예산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법 위반 과징금의 최근 3년 평균 수납액인 121억 400만원, 국가미수채권 회수 강화 노력분 77억 6,700만원, 금융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징수결정액의 예상 증가분 13억 9,000만원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2018년도 과징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내역
금융관련법 위반 과징금의 최근 3년간 수납액 평균	○ 2014~2016년 과징금 수납액 평균 (20,747+11,914+3,653)/3 = 12,104
국가미수채권 회수 강화 노력분	○ <b>2016년 미수채권액의 40%</b> = 7,767
금융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징수결정액 증가 예상분	○ 2016년 징수결정액의 20% = 1,390

자료: 금융위원회

그런데, 위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은 과소계상 요인과 과다계상 요인이 혼재한다.

먼저 **과소계상 요인**을 살펴보면, 2016년도 수납액의 경우 감사원(2013) 및 국회지적(2016)에 따라 그동안 누적되었던 과오납 과징금 28억 9,400만원을 환수처분하였다. 즉, 2016년 수납액은 65억 4,70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의 특수한 사정으로 수납액에서 환수액이 차감된 36억 5,300만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수납액 평균을 산출한 것은 예산의 과소계상 요인에 해당한다. 2017년 8월 말 현재 과오납 과징금 환급이 발생한 바 없고, 2018년 역시 과오납 과징금 환급 발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다계상 요인**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17년 예산안 편성 당시 국가미수채권 회수 강화 노력분을 2015년 미수채권액의 10%로 계상하였으나, 2018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2016년 미수채권액의 40%로 계상하였다.<sup>5)</sup>

4) 과징금 예산액 규모가 가장 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2014년 63.5%, 2015년 50.3%, 2016년 59.9% 수준이다. 예산의 연례적인 과다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수납률의 변동폭은 금융위원회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에는 미수채권액 회수율을 여전히 전년도와 동일한 10%로 계상하고 있어 기준의 통일성이 결여되었으며, 2017년 대규모 불납결손처분(87억 3,400만원)에 따라 2018년도로 이월될 미수채권액이 급감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미수채권 회수 강화 노력분은 과다계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과징금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의 예측 및 위반행위 건당 부과액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과징금 추계의 어려움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전 부처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의 과징금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과징금 산정방식을 적극 개선하는 등 추계의 적정성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처분이 금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과징금 수납실적 개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연례적으로 부진하다(2014년 38.0%, 2015년 30.6%, 2016년 11.4%). 이와 같이 과징금 수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과징금 부과처분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금융질서 위반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회 및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수납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수차례 시정요구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하여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시위반 사건 처리절차 간소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개최 확대(월 1회→월 2회), 징수전담인력 확충 등의 후속조치를 완료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처분이 금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수납실적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5) 금융위원회는 징수가 어려운 과징금 불납결손처분(2016년 90억 1,200만원, 2017년 6월 현재 87억 3,400만원)에 따른 징수 가능성 제고 및 부처의 징수 의지 등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 1-2.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연례적 과다계상

### 가. 현황

기타경상이전수입<sup>6)</sup>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등의 정산에 따른 수입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500억원이 감액된 4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다.

기타경상이전수입 감액의 주요사유는 2017년도에 편성되었던 주택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500억원의 2018년도 예산안 미반영에 기인한다. 동 예산을 제외하면,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2018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265	50,452	50,452	452	△50,000	△99.1

자료: 금융위원회

### 나. 분석의견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연례적으로 과다계상되고 있으므로, 세입예산안 추계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도 과징금 예산안을 2014~2016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평균액인 2억 2,700만원, 소송비용 회수 예상액 및 과오지급 회수금 등 2억 2,500만원의 합계로 산출하였다.

[2018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액
2014~2016년 기타경상이전수입 평균	$(327+91+265)/3 = 227$
소송비용 회수 예상액 및 과오지급 회수금 등	225

자료: 금융위원회

6) 코드: 일반회계 59-596

그런데, 2018년도 소송비용 환수 예상금액을 살펴보면, 총 14건에 대한 사건에서 약 8,300만원의 환수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소송비용 회수 예상액 및 과오지급 회수금 등을 2억 2,5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과다하다.

[2018년도 소송비용 환수 예상금액]

(단위: 천원)

	원고(청구인)	사건번호	사건명	지출한 소송비용	회수가능 예상액
1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 외 4명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189	주식취득승인처분 무효 확인 등	2,500	2,500
2	경남제일저축은행	서울행정법원 2013아1949	집행 정지	5,000	5,000
3	스마일저축은행	서울행정법원 2013아10133	집행 정지	1,500	750
4	엠에이치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서울행정법원 2013아10106	집행 정지	1,500	750
5	엠에이치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4564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 청구	3,000	1,500
6	스마일저축은행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130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청구의 소	3,000	1,500
7	성○○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753	해임요구 처분 취소	4,000	1,500
8	경남제일저축은행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59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5,000	25,000
9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법원 2015두3925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30,000	19,839
10	인터레드캐피탈	서울고등법원 2015누3226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8,200	8,200
11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08	업무정지명령취소	10,000	3,100
12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외 3명	대법원 2016두36413	자회사등 편입승인취소	20,000	6,200
13	아이엔지생명보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993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6,000	3,753
14	조○○ 외 1명	서울고등법원 2016누43239	조사, 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5,000	3,399
합계	14건			124,700	82,991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액을 4억 5,2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소송비용 환수 예상금액의 반영 때문이 아니라 관행에 따른 예산 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성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의 전입금(2016년 2,000억원, 2017년 500억원)을 제외하면, 2014년부터 매년 동일한 금액(4억 5,200만원)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 예산안에 대한 추계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4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14	452	327	327	72.3	100.0	0	0
2015	452	126	91	20.1	72.2	35	0
2016	220,452	286	265	0.1	92.7	21	0
2017.6.	50,452	2,667	2,655	5.2	99.5	11	0
2018	452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가. 현 황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 사업<sup>1)</sup>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sup>2)</sup>에 근거하여 부산 지역의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하여 수준 높은 금융교육 역량을 갖춘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0억원이다.

## [2018년도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	0	1,000	1,000	1,000	0	0.0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동 사업의 상세한 교육과정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으나, 교육생은 해양금융전공필수, 파생금융전공필수, 공통필수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며, 3학기(계절학기 별도) 전일제 과정으로 총 45학점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4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7월 운영기관 선정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심사단 심사를 거쳐 9월에 운영기관을 부산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로 확정하였다.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1431-304

2)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17년 10월 중 금융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간의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2018년 9월 교육과정 개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겸임교수 4명, 초빙교수 3명,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4억 9,600만원과 경상운영비 1억 6,400만원, 학생교육경비 3억 4,000만원 등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2018년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 인건비 1식 661백만원 × 75% = 496백만원
- 경상운영비(인건비 대비 33%) 1식 218백만원 × 75% = 164백만원
- 학생교육경비 40명 × 1명당 17백만원 × 50% = 340백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 나. 분석의견

첫째, 2017년 9월 말 현재까지 교육과정, 교수 및 직원 채용, 학생 모집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계획을 고려한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 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 받을 기관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추진할 사업의 내용, 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sup>3)</sup>

그런데, 9월 말 현재까지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정, 교수 및 직원 채용 계획, 학생 모집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

3)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 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추진할 사업의 내용
2. 지원받는 경비(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 시행의 기대 효과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는 상세한 교육과정과 학생 모집인원 및 모집 요건의 경우 양성기관이 협약에 따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파악이 가능하며, 교수진 구성 및 강의 운영 계획 등은 향후 부산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의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협약 체결에 따른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될 경우, 그 내용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금융위원회는 내년 9월에 교육과정이 차질 없이 개설될 수 있도록 교수진 구성,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안내, 교육이수자 활용방안 마련 등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① 2018년도 예산안에는 교수 및 직원에 대한 9개월분의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이 적절한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내년 3월 말까지는 교수진 구성이 완료되어야 한다. 내년도에 교육이 신규 개설되므로 아직까지 동 교육과정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수진 구성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교육과정 개설 첫 해에 40명의 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유사한 전문금융인 양성과정이 개설된 사례가 없는 만큼 우수인재가 유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교육과정 개설 첫 해인 2018년도에 학생 모집이 원활하게 모집될 수 있도록 양성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교육이수자 배출이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에 해양금융, 파생금융 전문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국내 금융인력의 해외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교육이수자에 대한 구체적 활용 방안은 미비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부산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 등 양성기관이 교육이수자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금융정책알리기 사업<sup>1)</sup>은 금융정책 등을 일반 국민, 국내외 금융시장 참여자, 언론 등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금융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00만원이 감액된 3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금융정책알리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금융정책알리기	655	345	345	336	△9	△2.6

자료: 금융위원회

### 나. 분석의견

동 사업 성과지표인 “금융정책 인지도”의 측정방식을 “전국 500명 이상 설문조사”에서 “공식 페이스북 팬수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으로 변경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업 성과지표를 “금융정책인지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2018년도 성과계획서에 성과지표 측정방식을 “전국 500명 이상 설문조사”에서 “공식 페이스북 팬수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으로 변경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 정보가 담긴 페이스북의 팬수 증가가 인지도 증가로 연결되므로 객관적이고 현실에 부합한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순히 페이스북 팬수의 증가가 금융정책에 대한 인지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홍보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특성상 결과지표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7135-303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 성과지표는 “금융정책 인지도”로 설정된 것이며, 이는 반대로 정성지표를 단순 산출량을 통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sup>2)</sup>

이와 같이 “금융정책에 대한 인지도”라는 정성적 성과지표를 단순히 “페이스북 팬수의 증가”로 측정하게 될 경우, 본래 성과지표가 의도한 성과의 본질적 부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내실 있는 성과관리를 위하여 2018년도에 새롭게 변경한 성과지표 측정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p.13.

사업특성상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단순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quality)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

※ 예) 홍보사업: 단순히 산출의 양을 측정하는 ‘홍보건수’가 아니라 산출의 질을 측정하는 ‘홍보물에 대한 인지도’를 성과지표로 제시

## 가. 현 황

국제중재수행 사업<sup>1)</sup>은 2015년 9월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한-이란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중재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억 6,700만원이 감액된 6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제중재수행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제중재수행	2,314	3,948	3,948	681	△3,267	△82.8

자료: 금융위원회

2015년 9월 이란의 다야니 가문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엔텍합(Entekhab) 그룹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한-이란 양자간 투자협정 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투자자-국가 중재 신청을 제기하였다.<sup>2)</sup> 이에 정부는 2015년 9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sup>3)</sup>, 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협의체를 구축하고, 같은 해 10월 관계부처협의체 의결을 통해 정부대리로품을 법무법인 율촌 및 프레스필즈로 선정하였으며,

운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51)

- 1) 코드: 일반회계 7135-307
- 2) 2010년 엔텍합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을 위해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과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대금의 10%인 578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으나, 채권단은 엔텍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하였다. 엔텍합은 국내 법원에 ‘매수자 지위 인정 및 매각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내 법원은 채권단이 계약금을 돌려주고 엔텍합은 외상물품대금 3,000만 달러를 상환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채권단은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결국 국내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다야니 가문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 투자자-국가 중재신청을 제기하였다.
- 3)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7월 관계부처협의체에 편입되었다.

2015년 12월 양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치고 중재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하반기까지 마지막 정리서면을 제출 예정이며, 2018년도 하반기에 중재판정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이란 ISD 진행 경과]

구 분	주요 내용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 9. 다야니측 중재신청서 제출</li> <li>○ 2015. 11.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 3.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 확정</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하반기까지 마지막 정리서면 제출 예정</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하반기 중재판정 예상</li> </ul>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2018년도 동 사업 예산안은 로펌비용·중재인 보수 및 관리비용 6억 6,90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국외업무여비 850만원, 사업추진비 3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 나. 분석의견

첫째, 금융위원회는 긍정적인 중재판정 결과 도출을 위하여 남은 중재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번 국제중재에서 폐소하게 될 경우 「UNCITRAL 중재규칙」 제42조<sup>4)</sup>에 따라 약 70억원 규모의 국고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이를 사례로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유사 중재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중재판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중재절차에 충실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UNCITRAL Arbitration rules」 Article 42(Allocation of costs)

1.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shall in principle be borne by the unsuccessful party or parties. However, the arbitral tribunal may apportion each of such costs between the parties if it determines that apportionment is reasonable,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둘째, 중재절차 종료 이후 국제중재 수행 경험을 공유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중재 소송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상대방과 체결한 비밀유지약정 및 소송 전략 노출 등이 중재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여 중재 대응방안에 대하여 비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ISD 경험은 3건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진 중재는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제중재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국제적으로 늘어가는 국제중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ISD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재절차 종료 이후 소송 수행 경험 및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중재 소송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자본시장조사단 운영 사업<sup>1)</sup>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조사단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1,500만원이 감액된 3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자본시장조사단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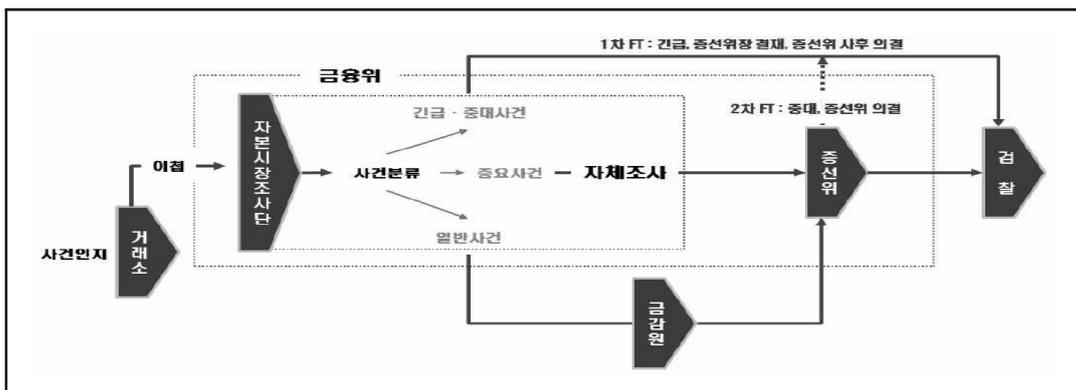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자본시장조사단 운영	26	687	687	372	△315	△45.9

자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로 거래소 등으로부터 통보된 사건을 긴급성 및 중요성에 따라 검찰(긴급·중대사건), 자본시장조사단(중요사건) 및 금융감독원(일반사건)으로 분류하여, 중요사건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 집행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7135-306

2017년도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인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중 시세조종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5억 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 동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2018년도 동 사업 예산안에는 모바일포렌식 시스템 유지보수 및 사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용역비 2,000만원,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보안기능 강화 등을 위한 일반연구비 8,700만원, 조사실 보수 및 포렌식 참관실, 분석실 신설 공사비 1,400만원, 컴퓨터(디스크) 포렌식 시스템 도입과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보안기능 강화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5,1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관리용역비	○ 관리용역비 : 20 - 모바일포렌식 시스템, 사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20
일반연구비	○ 일반연구비 : 87 -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보안기능 강화 등 : 87
공사비	○ 공사비 : 14 - 조사실 보수 및 포렌식 참관실, 분석실 신설 공사비용 : 14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 : 251 - 컴퓨터(디스크)포렌식 시스템 도입 : 156 -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보안기능 강화 등(상용SW, HW 구입) : 93.5 - 조사실 및 포렌식 참관실, 분석실 기자재구입 : 1.5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첫째,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의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에 대비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은 기획·복합형 사건 등 계획적·지능적으로 변형되고 있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구를 제공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말 현재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7년 12월말 개발이 완료되면 2018년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조사 중 수집·생성 자료는 사건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 개인정보 등의 민간정보이며,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축 중인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에는 방화벽, DB 암호화 등 기초적인 보안사항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8년도 예산안에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보안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1.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안기능 강화 작업이 12월에야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1년 동안은 보안 상태가 취약한 상황에서 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18년도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보안기능 강화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2018. 1. ~ 3.	○ 관련 기관 협의, 기술 협상, 제안요청서 작성
2018. 4. ~ 6.	○ 조달청 입찰공고, 업체 선정
2018. 7. ~ 12.	○ 시스템 개발, 운영테스트·검사·검수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보안 기능 강화가 완료될 예정인 12월까지의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의 민감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보안대책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보안기능 강화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운영 사업의 성과목표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건수(증권거래선물위원회 의결 건수)로 설정한 2015년 이후 매년 성과목표를 월 7건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18년도 성과목표 역시 월 7건으로 계획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월 7건이 과거 연 사건처리건수 통계를 통한 평균값과 조사처리 인프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량으로 산정한 것으로, 과도한 성과목표 상향설정은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4~2018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건수	목표	신규	월7건	월7건	월7건	월7건	불공정거래 사건 증선위 의결 여부	증선위 회의 결과 등
	실적	119건	123건	119건	45건	-		
	달성도	100%	146%	142%	-	-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서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거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를 부적절한 성과목표 설정으로 예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불공정거래시스템 등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목표를 매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최근 동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가 100~146% 수준으로 월 10건에 이르고 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전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2017년부터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개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목표 상향의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연례적으로 성과목표를 월 7건으로 설정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본부 기본경비<sup>1)</sup>와 소속기관 기본경비<sup>2)</sup>는 본부(기획조정관실·대변인실·금융정책국·금융서비스국·자본시장국·자본시장조사단) 및 소속기관(금융정보분석원)의 보수, 특근매식비·복리후생비·기타운영비 등 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수용비·공공요금및체세·임차료 등의 운영비와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비인건비성 기본경비로, 총액인건비 대상과 비대상으로 구성된다. 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의 2018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억 5,100만원이 감액된 38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속기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의 2018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7,300만원이 감액된 4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5,356	4,160	4,160	3,809	△351	△8.4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3,761	2,558	2,558	2,280	△278	△10.9
대변인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288	281	281	263	△18	△6.4
금융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554	563	563	573	10	1.8
금융서비스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308	309	309	279	△30	△9.7
자본시장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300	304	304	280	△24	△7.9
자본시장조사단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145	145	145	134	△11	△7.6

자료: 금융위원회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51)

- 1) 코드: 일반회계 7111
- 2) 코드: 일반회계 7118

[2018년도 소속기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소속기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522	498	498	425	△73	△14.7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522	498	498	425	△73	△14.7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첫째,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예산을 통하여 개인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련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의 적용대상을 공공요금(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등<sup>3)</sup>)과 제세(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 및 국내부담금 등<sup>4)</sup>)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국장급 이상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안전한 업무용 스마트폰 도입 방안(2014)’에 따라 보안스마트폰을 지급하여 그 비용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집행하는 한편, 과장급 등에게는 내부적으로 「휴대폰 사용료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개인의 휴대폰 사용요금 중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개인에게 역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지급해 주고 있다. 2014~2016년에는 매년 1,500~2,000만원 등 3년 동안 총 5,200만원의 휴대폰 사용요금을 개인에게 지급하였다.

3) 철도화물 운송요금, 차량 운송요금,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4) 자동차세, 장애인고용부담금, 협회비,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채당금,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 기준]

□ (기본원칙) 휴대폰 사용요금(휴대폰 월정액) 중에서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13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화요금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방식) 휴대폰 사용요금(휴대폰 월정액)은 직급 및 업무 특성에 따라 예산에서 차등 지원

[휴대폰 사용료 지원한도]

구 분	대상자
전액지원*	국장급 이상(보안폰 지급), 행정인사과장, 정책홍보팀장
월5만원 한도 지원	보직과장(비서관, 인사팀장, 의사운영팀장 포함)
월3만원 한도 지원	국제협력팀장 등 팀장급, 운전기사

\* 단말기할부금, 소액결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 후 예산지원 한도 내에서 전액지원

※ 공용휴대폰 사용자(위원장 수행비서, 당직자, 국회담당자) 별도 지원

※ 해외출장시 로밍한 국제전화요금은 전액 지원

자료: 금융위원회

[2014~2016년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 현황(개인지급분)]

(단위: 천원)

회계연도	대상	지원액	비고
2014	과장급	12,977	1인당 최대 5만원 지원
	운전원	2,368	1인당 최대 3만원 지원
	소계	15,345	-
2015	과장급	15,365	1인당 최대 5만원 지원
	운전원	2,066	1인당 최대 3만원 지원
	소계	17,431	-
2016	과장급	17,213	1인당 최대 5만원 지원
	운전원	2,186	1인당 최대 3만원 지원
	소계	19,399	-
합 계		52,174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① 금융위원회는 업무 성격상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업무협의 등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일이 많으므로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이 필요하고, ② 과장급에 공용 휴대폰을 지급하여 이용하는 것보다 개인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으며, ③ 일부 다른 부처의 경우에도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① 공적 목적의 휴대폰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휴대폰 사용요금도 증가하는 과거 정률제 방식의 요금체계에서는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일부 타당할 수 있겠으나, 최근의 휴대폰 요금체계는 대부분 통화량과 무관하게 데이터 사용량 등의 조건에 따

라 사용요금이 미리 정해져 있는 정액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개인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급하는 관행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② 또한, 공용 휴대폰 지급 여부는 업무 특성 및 필요성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종전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던 과장급에게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드시 공용 휴대폰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아울러, 「국가공무원법」<sup>5)</sup>에서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2011년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2011. 8.)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sup>6)</sup>을 근거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금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 예산에서 급여성 경비인 휴대폰 기본요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주의요구)한 바 있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에도 개인에게 지급되는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 목적의 예산 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동 예산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7)</sup>

[2018년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 관련 예산(개인지급분)]

(단위: 천원)

세부사업	비목	예산안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	공공요금및제세	10,200
대변인실기본경비		1,680
금융정책국기본경비		5,560
금융서비스국기본경비		4,800
자본시장국기본경비		2,000
자본시장조사단		600
금융정보분석원기본경비		4,800
합 계		29,640

자료: 금융위원회

- 5)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 6)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 7) 금융위원회는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과장급에 대해서는 공용 휴대폰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인바,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금융위원회는 업무추진비 일부를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201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도에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 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를 위반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한 바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240목)의 경우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이고, 이 중 해외출장지원경비(정액경비)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관서운영경비 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2016회계연도에 설·추석 명절 상품권 구매 및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명목으로 2,853만원의 기본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서운영경비 건당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상품권의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상품권 2,223만원을 현금으로 구매하였다.

[2016회계연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관서운영경비 집행 사례]

(단위: 천원)

세부사업	과목	지급건명	지급액	위반사항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업무 추진비	16년도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구매	9,000	○ 500만원 이상 경비의 관서운영경비 처리 ○ 현금 지급 미대상 건에 대한 현금 집행
	업무 추진비	16년도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추가구매	3,730	○ 현금 지급 미대상 건에 대한 현금 집행
	업무 추진비	16년도 추석명절 온누리상품권 구매	8,000	○ 500만원 이상 경비의 관서운영경비 처리 ○ 현금 지급 미대상 건에 대한 현금 집행
	업무 추진비	16년도 추석명절 온누리상품권 구매	1,500	○ 현금 지급 미대상 건에 대한 현금 집행
대변인실 기본경비	업무 추진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5,300	○ 500만원 이상 경비의 관서운영경비 처리

자료: 금융위원회

관서운영경비는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에서 그 범위와 지급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현금지급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회계 사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201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농신보기금에서 농특회계로 반환금<sup>1)</sup>은 「국가재정법」 제13조<sup>2)</sup>에 따라 기금의 여유재원을 농특회계로 반환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간 거래로, 2018년도 계획액은 전년 대비 1,000억원이 감소한 2,0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농신보기금에서 농특회계로 반환금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농신보기금에서 농특회계로 반환금	300,000	300,000	300,000	200,000	△100,000	△33.3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다.<sup>3)</sup> 법정부담금(금융기관의 출연금)과 면허료및수수료(신용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며, 일반보증사업(대출보증, 상거래채무보증), 특례보증사업(재해대책자금, 부채대책, 농어업경영회생자금, 사료구매자금), 우대보증사업(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보증, 청·장년 귀농(어) 창업 보증,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보증, 농어업 다문화가족 보증), 구상권 관리사업 등을 수행한다.

운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51)

1) 코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8999-840

2)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분석의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매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의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신보는 2014~2017년 기금의 여유재원 1조 2,000억원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로 반환하였다.

[최근 4년간 농신보에서 농특회계로 반환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A)	집행액(B)	집행률(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4	500,000	500,000	100.0	0	0
2015	100,000	100,000	100.0	0	0
2016	300,000	300,000	100.0	0	0
2017.6.	300,000	300,000	100.0	0	0
2018	200,000	-	-	-	-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와 같이 매년 농신보에서 농특회계로 반환하는 이유는 농신보의 여유자금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통하여 농신보의 중기가능자산이 과다하므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농특회계의 경우 매년 세입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신보에서 농특회계로의 반환은 국가 전체적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2016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농신보의 과다한 중기가능자산 문제가 다시 지적되었다. 또한, 총 1.4조원의 농특회계 반환금(2018년도 예산안 포함)이 연례적으로 편성·집행된다는 것은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신보의 2017년 6월말 기준 운용배수는 6.18배 수준으로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농특회계로 각각 3,000억원씩 반환한 2016~2017년의 운용배수의 증가는 기본재산의 감소 영향을 일부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법정운용배수 20.0배와 적정 운용배수 12.5배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기금 운용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농신보 주요경영지표]

(단위: 억원, 배)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보증잔액	101,471	11,0122	121,804	129,424
기본재산	24,513	25,252	22,974	20,931
운용배수	4.14	4.36	5.30	6.18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따라서, 농신보는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는 등 농림수산업자의 부담을 줄이며, 농어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신용보증기금의 고정자산매각익, 건물매각대, 토지매각대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업무용 토지 및 건물 등의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고정자산매각익<sup>1)</sup>의 2018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94억 5,000만원이 감액된 335억원이고, 건물매각대<sup>2)</sup>의 2018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28억 3,000만원이 감액된 127억원이며, 토지매각대<sup>3)</sup>의 2018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6억 7,300만원이 증액된 346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 고정자산매각익, 건물매각대, 토지매각대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고정자산매각익	3,597	42,950	42,950	33,500	△9,450	△22.0
건물매각대	1,011	15,530	15,530	12,700	△2,830	△18.2
토지매각대	5,132	33,927	33,927	34,600	673	2.0

자료: 신용보증기금

고정자산매각익, 건물매각대, 토지매각대 계획액 대부분은 2014년 12월 신용보증기금이 대구광역시로 이전을 완료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마포사옥의 매각에 의한 수입을 반영하여 계상된 것이다.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51)

- 1) 코드: 신용보증기금 69-695
- 2) 코드: 신용보증기금 71-711
- 3) 코드: 신용보증기금 72-721

[신용보증기금 고정자산매각익, 건물매각대, 토지매각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추진계획
고정자산매각익	○ 보증연계투자 투자주식(1,800), 마포사옥매각(31,700)
건물매각대	○ 마포사옥매각(12,700)
토지매각대	○ 마포사옥매각(34,600)

자료: 신용보증기금

## 나. 분석의견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의 매각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마포사옥 매각에 따른 수입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5차례에 걸쳐 마포사옥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번 유찰이 반복되어 매각에 실패하였다.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 매각 추진 경과]

- 2010. 1.	지방이전계획 승인
- 2012. 8.	사옥 매각 계획 이사회 승인
- 2012. 9.	감정평가 실시(감정가액 1,036억원/3개층 제외)
- 2012. 10. ~ 2013. 9.	1~5차 공개경쟁입찰 실시 : 유찰
- 2013. 12.	재감정평가 실시(감정가액 1,020억원/3개층 제외)
- 2014. 3. ~ 2014. 11.	6~9차 공개경쟁입찰 실시 : 유찰
- 2015. 4.	재감정평가 실시(감정가액 : 1,006억원/3개층 제외)
- 2015. 6. ~ 2015. 10.	10~12차 공개경쟁입찰 실시 : 유찰
- 2016. 5.	재감정평가 실시(감정가액 1,010억원/3개층 제외)
- 2016. 7. ~ 2016. 8.	13~14차 공개경쟁입찰 실시 : 유찰
- 2016. 11.	자산운용사와 MOU 체결
- 2017. 3.	자산운용사와의 MOU 기한 만료 : 계약 결렬
- 2017. 4.	제15차 공개경쟁입찰 실시
- 2017. 5.	15차 공개경쟁입찰 실시 : 유찰
- 2017. 9.	재감정평가 실시(감정가액 1,285억원/전체매각)

자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마포사옥 매각 장애요인은 마포사옥 3개층 존치매각조건<sup>4)</sup>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마포사옥을 조속히 매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수차례 주문한 바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은 마포사옥의 조속한 매각을 위하여 마포사옥의 전체 매각 등을 포함한 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마포사옥의 조속한 매각을 위한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은 마포사옥의 매각을 전제로 매년 수입액을 계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마포사옥 매각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매각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동 수입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4) 신용보증기금 본사 지방이전 이후에도 영업사무소가 건물 3~5층을 사용 중이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매수 의향자 대부분이 존치매각에 따른 구분 소유에 따른 건물활용의 제약, 재매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구분 매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 밖에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대형매물 수요가 많지 않고, 30년 전 준공된 건물의 노후화로 매입 후 상당한 수선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절대정화구역(학교 50m 이내)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고, 현재 용적률(700%)이 법적용적률(400%)을 초과하고 있어 증축에 제한이 있다는 점 등도 매각의 장애요인으로 보인다.

### 가. 현황

신용보증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sup>1)</sup>은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sup>2)</sup>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을 받아 기금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641억원이 감액된 2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일반회계전입금	210,000	30,000	184,100	20,000	△164,100	△89.1

자료: 신용보증기금

2018년도 계획안은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 : Refund Guarantee)<sup>3)</sup>에 대한 ‘지급보증의 보증’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2017년 하반기<sup>4)</sup>부터 2020년까지 최대 75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재원 2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이다.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51)

- 1) 코드: 신용보증기금 91-911
- 2)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연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3) 조선업체가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조선업체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변제하는 제도이다.
- 4) 2017년 하반기는 민간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보증지원이다.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 산출내역]

구 분	추진계획
보증금액	○ 2017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최대 1,000억원의 RG에 대하여 보증비율 75%의 지급보증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으로 총 보증공급은 750억원
소요재원	○ 보증금액 750억원, 운용배수 3배를 감안할 경우 총 250억원의 재원 필요
정부출연	○ 250억원 가운데 200억원은 정부가 출연하고, 50억원은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수협이 특별출연

자료: 신용보증기금

나. 분석의견

시중은행에서 동 재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소 조선사에 대해 선수금 환급보증(RG)을 공급하는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특별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으로 특별출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이후 신조선박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RG)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중소형 조선사에 대해서 2015년 280억원, 2016년 823억원, 2017년 상반기 199억원이 공급되고 있고, 중소기업은행 등 특별출연 금융기관 외에 시중은행에서도 2017년 상반기에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RG) 85억원을 공급하고 있다.

[조선사 규모별 신조선박 선수금 환급보증(RG) 공급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상반기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대 형	127,173	81.6	28,216	81.6	21,029	82.7
중 견	28,393	18.2	5,550	16.0	4,209	16.5
중 소	280	0.2	823	2.4	199	0.8
합 계	155,846	100.0	34,589	100.0	25,437	100.0

자료: 금융위원회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RG) 공급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상반기
특별출연 금융기관(기은, 산은, 수협)	274	178	114
시중은행	6	645	85
합 계	280	823	199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발급한 선수금 환급보증(RG)에서 사고<sup>5)</sup>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선주에게 기(既) 지급된 선수금을 변제하게 되는데, 이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보증을 받았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금융기관으로 75%의 비율로 손실을 보전하게 된다.

따라서, 시중은행에서 동 재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선수금 환급보증(RG)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시중은행은 중소기업은행 등 특별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신용보증기금이 공급하는 재보증의 수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특별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으로 특별출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5) 조선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거나 파산한 경우를 의미한다.

## 가. 현 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sup>1)</sup>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2)에 따라 정부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7,500만원 감액된 414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49,521	41,542	41,542	41,467	△75	△0.2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저축장려금 사업<sup>3)</sup>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6조4)에 따라 국가와 한국은행이 50%씩 출연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리<sup>5)</sup> 외에 법정장려금<sup>6)</sup>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계획액은 전년 대비 34억 7,900만원 감액된 813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운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51)

- 1) 코드: 일반회계 1631-881
-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 3) 코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631-301
-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6조(저축장려금) 정부는 농어민이 제4조에 따른 저축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저축을 하였을 때에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등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 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장려금의 지급률 또는 지급 방법을 저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 5) 2017년 1월 1일 2.05%
- 6) 일반: 만기 3년 0.9%, 만기 5년 1.5% / 저소득: 만기 3년 3.0%, 만기 5년 4.8%

[2018년도 저축장려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저축장려금	100,642	84,858	84,858	81,379	△3,479	△4.1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한도를 확대하면서 장려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가입자 유치실적이 저조하므로, 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신규가입자 유치 실적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농어민의 실질적인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14~2016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규가입자 유치 실적]

(단위: 천좌, %)

성과지표	구분	2014	2015	2016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A)	85	73	73
	실적(B)	73	66	67
	달성도(B/A)	85.9	90.4	91.8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2017년 2월 말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농어민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입한도를 확대하면서, 저금리 추세를 반영하여 장려금리를 인하하였다. 그러나, 2017년 4월부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규가입자 유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신규가입자 유치 실적이 여전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개선책이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가입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규가입자 유치 실적]

(단위: 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신규가입자 유치실적	5,388	8,943	7,800	4,878	4,180	3,998	5,076	4,596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10월까지 저소득층 농어가 등 특정 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안, 소관 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방안,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금이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저축 의욕 제고를 통한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8년도부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가. 현황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기금이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를 정리하고,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 예금보험기금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운용을 개시하였다<sup>1)</sup>.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18년 계획안 상 재고자산매각대 수입<sup>2)</sup>으로 2017년 대비 1,938억 1,200만원 증가한 1조 30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다.

#### [2018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재고자산매각대 수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계획		2018 계획안 (B)	증감	
		당초	수정 (A)		(B-A)	(B-A)/A
재고자산매각대	2,227,762	836,786	836,786	1,030,598	193,812	23.2

자료: 금융위원회

재고자산매각대 수입과 관련하여 2018년 계획안에는 우리은행 지분을 7%매각에 대한 4,952억 9,800만원, 한화생명 지분(6.19%) 매각 3,744억 1,000만원, 서울보증보험 지분(5%) 매각 1,203억 8,300만원, 수협중앙회 우선출자증권 매입소각액 405억 700만원 등 총 1조 305억 9,800만원이 계획되었다.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788-3731)

1) 이와 동시에 예금보험공사에는 2003년 1월 1일 통상적인 예금보험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예금보험기금이 신설되었다.

2) 코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73-731

[2018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재고자산매각대 수입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용	금액
우리은행	47,320,000주(지분율 7%) × 10,467원 (최근 2년간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	495,298
한화생명	53,740,500주(지분율 6.19%) × 6,967원 (최근 2년간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	374,410
서울보증	1,745,540주(지분율 5%) × 68,966원 (2013년 예보채상환기금 재계산 시 주당 회수 추정금액)	120,383
수협중앙회	우선출자 증권 수입 예상액 (당기순이익(106,189백만원)-내부유보액(80,721백만원)+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이자비용절감액(15,039백만원))	40,507
합 계		1,030,598

주: 상기 수협중앙회의 우선출자 증권은 해당 기업에 수익 발생 시 이를 상환 받고 주식(증권)을 매입 소각하는 증권을 말함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서울보증보험(주)의 지분매각 수입은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 수입 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2018년 계획안에는 서울보증보험(주)의 지분 5% 매각이익 1,203억 8,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8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재고자산매각대 수입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용	금액
서울보증	1,745,540주(지분율 5%) × 68,966원 (2013년 예보채상환기금 재계산 시 주당 회수 추정금액)	120,383

자료: 금융위원회

그런데 상기 서울보증보험(주)의 지분 매각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세부 매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sup>3)</sup>

3) 금융위원회, “서울경제, ‘2017.2.6.일자 「서울보증보험 판다」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자료, 2017.2.5.  
: “공적자금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의 구체적 매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주)의 경우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보험업<sup>4)</sup>을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보험사 중 유일한 종합보증보험사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지분 매각 또한 해당 독점적 지위의 보장 여부 등에 따라 매각 여부 및 매각 가액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계획안에 반영된 주당 매각가액 68,966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sup>5)</sup>에 따라 2013년<sup>6)</sup>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계산 평가 시 주주잉여현금흐름추정방식<sup>7)</sup>에 의해 평가된 가액으로, 2013년 평가 시 보험료 추정 등에 있어 대부분 2011년과 2012년의 평균매출 성장률에 향후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을 반영하는 등, 현재의 독점적인 사업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측면이 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주)의 민간 매각 시에는 현재와 같은 독점적인 지위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독점적인 영업이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매각이 어렵거나, 매각가액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sup>8)</sup>으로,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주)의 지분매각 수입 1,203억 8,300만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상법」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재계산제도)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 설치 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實査)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사할 수 있다.

6) 일반적으로 5년에 한 번 씩 재계산하고 있으며, 2018년에 재계산을 수행할 예정이다.

7) 주주잉여현금흐름추정방식은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을 활용한 것으로, 이는 해당 기업 주주의 미래 잉여현금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구한 현재가치로 기업의 주주 지분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8)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의 지분매각 수입은 매각과 관련한 공적자금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된 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 집 필

**총괄** | 조용복 예산분석실장

**심의** | 고기석 사업평가심의관  
상지원 예산분석총괄과장  
서세욱 산업예산분석과장  
임종수 사회예산분석과장  
박해진 행정예산분석과장  
정연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수옥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윤동한 예산분석관  
어예원 예산분석관  
윤희호 예산분석관  
이동엽 예산분석관  
안옥진 예산분석관

**지원** | 인정은 행정실무원

###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발간일 2017년 10월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ISBN 978-89-6073-567-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